

碩士學位論文

비선호시설 입지선정에 있어서
NIMBY현상의 해결방안

-제주지역 성산분기 송전선로 사업추진 사례를 중심으로 -



濟州大學校 行政大學院

行政學科 地方自治專攻

韓 興 植

碩士學位論文

비선호시설의 입지선정에 있어서
NIMBY현상의 해결방안

-제주지역 성산분기 송전선로 사업추진 사례를 중심으로-

指導教授 夫 萬 根



濟州大學校 行政大學院

行政學科 地方自治專攻

韓 興 植

1999年 12月 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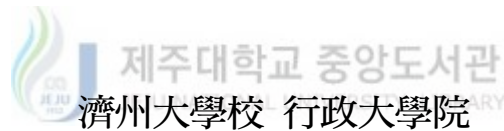
비선호시설 입지선정에 있어서
NIMBY현상의 해결방안

— 제주지역 성산분기 송전선로 사업추진 사례를 중심으로 —

指導教授 李 暉 遠

이 論文을 行政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9年 12月 日



行政學科 地方自治專攻

韓 興 植

韓興植의 行政學 碩士學位 論文을 確認함.

1999年 12月 日

審査委員長 _____ (印)

委 員 _____ (印)

委 員 _____ (印)

목 차

제 I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방법 및 범위	2
제 II 장	비선호시설과 님비현상에 대한 이론적 고찰	4
제 1 절	비선호시설의 개념과 유형	4
제 2 절	님비현상의 개념과 대두배경	17
제 3 절	님비현상의 유형과 발생원인	31
제 4 절	님비현상을 보는 시각	
제 5 절	님비현상의 문제해결에 관한 분석틀	
제 III 장	제주지역 성산분기 송전선로 입지반대 사례연구	21
제 IV 장	제주지역 성산분기 송전선로 입지반대에 관한 설문조사	31
제 1 절	조사설계	57
제 2 절	설문지 구성	68
제 3 절	자료의 수집	33
제 4 절	설문지 분석	34

第 V 章	제주지역 성산분기 송전선로 입지확보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59
제 1 절	문제점	59
제 2 절	개선방안	75
제 VI 장	요약 및 결론	86
	*참고문헌	89
	*영문요약	91
부 록	95
1.	설문지	96
2.	조사분석표	106



<표 4-23> 성산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반대이유	46
<부록편 표 4-24> 성산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반대이유 분석	116
<표 4-25> 현재의 손실보상제도에 대한 견해	47
<부록편 표 4-26> 현재의 손실보상제도에 대한 견해 분석	117
<표 4-27> 지역주민이 바라는 합리적인 보상수준	48
<표 4-28> 손실보상금액의 실체가 근접정도	48
<표 4-29> 성산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부의 외부효과 여부	48
<부록편 표 4-30> 성산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부의 외부효과 여부 분석	118
<표 4-31> 사업시행자측과 지역주민간 대화의 원활정도	49
<부록편 표 4-32> 사업시행자측과 지역주민간 대화의 원활정도 분석	119
<표 4-33> 대화 및 협상을 가로막는 장애요인	50
<부록편 표 4-34> 대화 및 협상을 가로막는 장애요인 분석	120
<표 4-35> 사업시행자측과 지역주민간의 원활한 의사소통방안	50
<부록편 표 4-36> 사업시행자측과 지역주민간의 원활한 의사소통방안 분석	121
<표 4-37> 한전의 성산분기 송전선로 사업정보 공개정도	51
<표 4-38> 공공사업 정보공개가 필요한 이유	51
<부록편 표 4-39> 공공사업 정보공개가 필요한 이유 분석	122
<표 4-40> 송전선로 사업정보 공개의 적절한 시기	52
<부록편 표 4-41> 송전선로 사업정보 공개의 적절한 시기 분석	123
<표 4-42> 사업정보 공개가 입지반대 여론감소에 대한 기여도	53
<부록편 표 4-43> 사업정보 공개가 입지반대 여론감소에 대한 기여도 분석	124
<표 4-44> 송전선로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주민참여 수준의 만족도	53
<부록편 표 4-45> 송전선로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주민참여 수준의 만족도 분석	125
<표 4-46> 주민참여 수준의 불만족 원인	54
<부록편 표 4-47> 주민참여 수준의 불만족 원인 분석	126

<표 4-48> 바람직한 주민참여방안	55
<부록편 표 4-49> 바람직한 주민참여 방안 분석	127
<표 4-50> 환경(경관)영향평가제도의 사전적 예방기능 수행정도 ..	55
<부록편 4-51> 환경(경관)영향평가제도의 사전적 예방기능 수행정도 분석	128
<표 4-52> 환경(경관)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56
<표 4-53> 환경(경관)영향평가가 ‘환경파괴의 합리적 수단’ 이라는 비판에 대한 견해	56
<부록편 표 4-54> 환경(경관)영향평가가 ‘환경파괴의 합리적수단’ 이라는 데에 대한 견해 분석	129
<표 4-55>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의 이행정도	57
<부록편 표 4-56>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의 이행정도 분석	130
<표 4-57> 전자파 유해성에 대한 견해	57
<표 4-58> 전자파의 유해성을 접한 매체	58



그 립 목 차

<그림 2-1> 비용과 편익곡선	5
<그림 2-2> 연구분석의 모델	49
<그림 3-1> 송전선로건설 업무흐름도	22
<그림 5-1> 현재의 손실보상제도에 대한 지역주민 반응	59
<그림 5-2> 합리적인 보상수준에 대한 지역주민 반응	60
<그림 5-3> 송전선로의 부의 외부효과에 대한 지역주민 반응	61
<그림 5-4> 보상가의 실체가 근접정도에 대한 지역주민 반응	62
<그림 5-5> 지역주민과 한전측의 대화의 원활정도에 대한 지역주민 반응	62
<그림 5-6> 대화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에 대한 지역주민 반응	63
<그림 5-7> 송전선로에 대한 한전의 사업정보 공개정도에 대한 지역주민 반응	64
<그림 5-8> 송전선로 사업정보 공개의 적절한 시기에 대한 지역주민 반응	65
<그림 5-9> 사업정보의 공개가 입지반대 여론감소에 기여 여부에 대한 지역주민 반응	65
<그림 5-10> 송전선로 사업추진과정에서 주민참여수준 만족에 대한 지역주민 반응	67
<그림 5-11> 주민참여 수준의 불만족 원인에 대한 지역주민 반응	67
<그림 5-12> 바람직한 주민참여 방안에 대한 지역주민 반응	68
<그림 5-13> 환경(경관)영향평가의 사전적 예방기능에 대한 지역주민 반응	70
<그림 5-14> 환경(경관)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지역주민 반응	70
<그림 5-15> 환경(경관)영향평가가 환경파괴의 합리적 수단 이라는데 대한 지역주민 반응	71

<그림 5-16>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의 이행정도에 대한 지역주민 반응	72
<그림 5-17> 송전선로 전자파 유해성에 대한 지역주민 반응	73



제 I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제주지역의 전력수요는 지난 91년의 622,498MW에서 96년에는 1,194,306MW로 두 배이상 증가를 하였으며 연평균 13.96%의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전국적으로 연평균 11.82%늘어난 것에 비해 2.14%포인트가 높은 것이다.

이처럼 전력소비량이 급증한 것은 최근 들어 관공서 및 기업체 등에 에어컨 보급이 늘어나고 신시가지 개발, 농가의 하우스 영농추세, 관광산업의 양적·질적 팽창으로 인한 것으로 이러한 전력수요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시설이 확충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그 동안 전력시설 확충과정에서 사업주체인 한국전력공사와 지역주민간에는 적잖은 갈등이 생기고 이것이 집단민원화하여 공사가 지체되거나 중단되는 등 몇 차례의 난항을 겪어 왔다.

이러한 갈등은 지역주민들이 전력시설 확충이 지역사회발전에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지역주민들의 생활권과 환경권을 해칠 소지가 있는 위험시설이라는 인식때문인데 앞으로도 이러한 갈등이 적지 않게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1960년대부터 80년대 초까지의 성장위주의 경제정책 시행과정에서는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정치·행정문화 때문에 비록 정책이 지역실정이나 지역주민의 의사에 반한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반발은 극히 제한적이며 한시적인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기지역에 산업체 및 각종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환영하는 이른바 핼비(PIMBY)가 일반적 현상이었다. 그러나 정치·행정이 민주화되고 있는 오늘날은 더 이상 이러한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수단은 용납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고 주민들의 저항 또한 그 만큼 무마하기가 어려워 졌다. 따라서 정치·행정의 민주화가 가속화될 수록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 또한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데 이는 공공의 편의와 만족 및 사회적 기반구축을 위한 여러 가지 공공사업의 추진에 장애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최근 급속한 산업화에 따른 환경파괴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의 환경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 이러한 환경의식들은 과거의 개발지상주의 아래에서는 문제시되지 않았던 필수불가결한 공공사업에 대한 추진을 가로막는 요인의 하나로 전이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및 공기업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추진(특히 비선호시설 입지)이 지역주민들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시행의 시기적 적정시점을 놓쳐 사업의 실효성마저 상실하는 위기를 맞고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제주지역의 한국전력공사의 경우도 이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 전기라는 공공재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사업시행 차질로 인한 문제점은 매우 크다 할 것이다.

이러한 시설입지 선정을 둘러싼 사업주체와 지역주민들간의 마찰은 그 원인이 그 동안 지역주민의 욕구나 지역실정을 무시한 행정편의주의와 중앙집권적 개발정책의 추진에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으나, 한편 편협한 지역의식과 집단행동을 통해 이익을 관철시키려는 지역이기주의 역시 그 원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향후 공공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혐오시설의 입지 확보와 관련하여 야기되는 첨예한 이해갈등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점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¹⁾ 특히 이러한 지역이기주의의 결과는 필연적으로 혐오시설(LULU ; locally unwanted land uses)의 입지거부로 이어지는 경우 내지는 설령 시설입지가 가능하더라도 무리한 손실보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인식을 토대로 하여 제주 지역에서 현재 추진중인 154kV 성산분기 송전선로²⁾ 입지거부 사례에 대한 분석을 통해 현재 추진중이거나 향후 계획중인 비선호시설의 입지선정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납비현상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본 연구는 이론적 논의와 실증적 분석이라는 이원적 방법을 취하였다. 이론적 논의를 위해서는 혐오시설 입지과정에 있어서 납비현상과 관련되는 국내외의 전문서적 및 정기간행물, 한국전력의 사내 간행물, 보고서, 일간지 등을 참고하였다. 또 실증적 분석을 위해서는 연구대상인 성산분기 송전선로가 통과하는 3개 마을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지 조사방법을 통하여 그들의 송전선로에 대한 인식과 반응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분석하였다.

한편 본 연구의 범위는 심층연구를 위하여 비선호시설의 입지선정과 관련된 납비현상 중에서도 제주지역 성산분기 송전선로의 사업추진 사례에 국한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상의 범위와 관련된 진행순서는 다음과 같다.

제 1 장에서는 연구의 목적을 기술하고 연구의 방법과 범위를 밝혔으며

제 2 장에서는 비선호시설과 납비현상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납비현상의 유형과 발생원인 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연구를 위한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제 3 장에서는 성산분기 송전선로의 입지선정 과정과 주민들의 입지반대 과정을 현상적으로 기술하였으며

제 4 장에서는 지역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제 5 장에서는 위의 이론적 토대와 설문조사의 결과를 통해 송전선로 입지확보상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제 6 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도출하였다.

1) 정세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지방재정, 1991년 가을호, 대한지방행정 공제회, 44면.

2) 송전선로란 발전소 상호간, 변전소 상호간 또는 발전소와 변전소간에 전선 및 이를 보장하는 공작물을 의미한다.

제 II 장 비선호시설과 님비현상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 1 절 비선호시설의 개념과 유형

1. 비선호시설의 개념과 특성

비선호시설³⁾이란 일반적으로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그것이 입지하는 경우에 그 지역에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반면에, 돌아오는 혜택은 다른 지역의 그것과 비교하여 특별히 크지 않은 공공시설을 말한다. 예컨대, 발전소는 안정적인 전력공급으로 산업발전을 이루며 쾌적한 문화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유치해야 할 공공시설이지만 그것이 자기지역 내에 설치되면 소음, 교통체증, 주변경관의 훼손 등 생활환경의 악화는 물론 지가하락과 같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만 그 혜택은 타 지역주민들의 것과 비교하여 그다지 크지 않은 것이 보통이다.

비선호시설은 이러한 부정적인 외부성(negative externalities)으로 말미암아 지역주민들에게는 수용이 거부됨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편의제공과 공익실현에 이바지하기 때문에 사회전체적 또는 국가적 차원에서는 필요성이, 개인적 또는 입지지역적 차원에서는 해악성이 강하게 부각되는 양면성을 동시에 지고 있다. 한편 Frank J. Popper는 이러한 비선호 시설을 루루(LULU : locally unwanted land uses)라고 지칭하였고 John J. Pitney, Jr.는 이러한 루루(LULUs) 즉, 공익(common good)이라는 미명하에 지역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시설들(교도소, 신경가스 저장소, 위험폐기물처리장 등)의 입지정책은 지역주민들에게 분노와 고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분노야기(bile barrel)’ 정책이라고 지칭하였다.⁴⁾

이러한 비선호시설은 입지자체에 따르는 불이익 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함으로써 입지지역 주민이나 해당 자치단체 주민들의 반발을 사는 것이 보통이다.⁵⁾

이러한 비선호시설 중 공공시설은 공공재 또는 준공공재로서의 특성과 더불어 그 시설만이 가지는 몇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⁶⁾.

첫째, 대부분 시장기구를 통해 자동적인 자원배분을 기대할 수 없는 공공재(public goods)적 성격을 지닌다.⁷⁾ 대부분의 비선호시설은 공공성을 근간으로 하

3) 1983년 Popper는 이들 비선호시설을 루루(LULUs : Locally Unwanted Land Uses)로 지칭하면서 이들 시설은 지역주민에게 공포와 고통 따위를 주어 집값이 하락하는 등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유발한다고 주장하였다. F.J.Popper, "LULUS", Resources(1983), pp.2~4.

4) John J. Pitney, Jr., "Bile Barrel Politics : Siting Unwanted Facilities",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 1984, vol. 3, no. 3, pp.446~448.

5) 김홍식, 「지역이기주의 극복을 위한 정책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3, p.3.

6) 유해운·오창택, "비선호시설입지 입지접근방식의 분석", 지방자치연구, 제8권 제 2호, 한국지방자치학회, 1996, pp.201~205.

7) Barry G. Rabe & John Martin Gillroy, "Intrinsic Value and Public Choice : The Alber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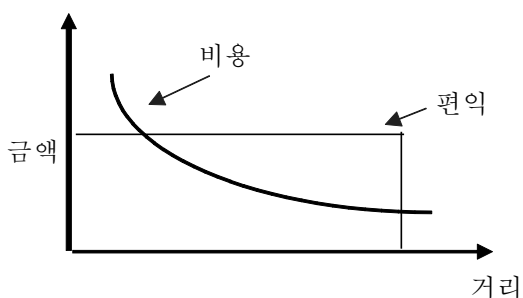
는 공익시설들로서 시장원리에 따라 적절한 공급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따라서 주로 정부의 직·간접적인 개입에 의해 공급된다. 만약 비선호시설이 민간부문에 의해 공급될 경우, 독점상태가 야기될 가능성이 높아 효율적인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특성을 지니고 있다.

둘째, 대부분 고도의 기술적인 문제(technical problems)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각기 특정 입지조건에 충족을 필요로 한다. 비선호시설의 입지지역으로서 가장 적절한 장소는 흔히 지리학, 지질학, 경제학, 인구통계학(예컨대, 인구밀도) 등의 관점에서 매우 심도있게 다각적으로 고려되며, 제각기 특별한 입지요건의 충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모든 지역에 균등하게 건립할 수 없는 입지 제약이 따른다.⁸⁾

셋째, 시설 그 자체가 부정적인 外部性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시설설치에 따른 편익은 전체사회로 널리 분산되는 반면 사회적인 비용은 단기적으로 해당 입지지역에 집중되어 편익-비용의 불균형을 야기시킨다. 즉 비선호시설은 그 특성상 입지지역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부정적인 외부효과(external effect)를 유발하는 반면, 그것의 설치로 인해 입지지역에 돌아오는 편익은 타 지역들의 그것과 비교하여 동일하거나 그다지 크지 않다.

즉, <그림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용과 편익의 관리측면에서 혐오시설의 입지특성을 살펴보면 비선호시설과 거리가 가까워질 수록 비용부담은 늘어나는 반면에 편익은 공간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그림 2-1> 비용과 편익곡선



자료 : Smith, D.M.(1977), Human Geograph : A Welfare Approach, New York : St, Martine Press, pp.116~118.

이러한 특성 때문에 비선호시설은 입지 자체에 따르는 불이익 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함으로써 입지지역 주민이나 해당 자치단체의

Case", in John Martin Gillroy(ed.), Environmental Risk, Environmental Value, and Political Choice : Beyond Efficiency Trade-offs in Public Policy Analysis,(Boulder : Westview Press, 1933), p.150을 참조.

8) 예컨대,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은 높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입지지역의 지반이 단단해야 하고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이어야 하는 등 매우 까다로운 입지요건을 지니고 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문헌을 참고하기 바람. IAEA, Underground Disposal of Radioactive Waste, (Vienna :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1980.)

반발을 사는 것이 보편적이다.

넷째, 입지는 힘의 역학관계가 반영되어 공정성(fairness)의 문제를 야기시킨다.⁹⁾ 비선호시설은 더 이상의 재산적 가치의 하락이 발생하기 어려운 경제적으로 열악한 빈곤지역, 반발가능성이 낮은 지역, 인구밀도가 적은 지역, 그리고 정치적으로 평가 절하된 지역에 주로 입지됨으로써 사회적 형평성문제를 유발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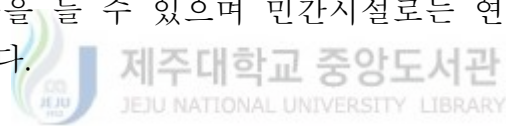
다섯째, 시설의 입지와 운영을 둘러싸고 환경오염 등 부정적 결과를 차단함으로써 지역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해당 입지지역 주민들과 시설입지를 통해 전체사회의 공익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주체간에 대립·갈등이 야기될 가능성이 많다.

2. 비선호시설의 유형

이러한 비선호시설은 설치 및 관리주체, 수용기피 요인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설치주체

공공시설과 민간시설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공공시설은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이 설치하고 운영·관리에 있어서도 책임을 지는 시설이며 민간시설은 사기업이나 민간인이 설치 및 운영에 주체가 되는 시설이다. 공공시설로는 하수종말처리장, 교도소 등을 들 수 있으며 민간시설로는 연탄공장, 염색공장, 정신병원 등을 지적할 수 있다.



2) 수용기피 요인

① 위험시설

시설 그 자체에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잘못 시공되거나 관리되었을 때 해당 시설 입지지역은 물론 지역사회 전체에 엄청난 인명피해와 막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시설이다. 이러한 시설의 예로는 원자력발전소,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정유공장, 변전소, 송전선, 변전소, 화력발전소, 가스충전소, 저유소 등을 들 수 있다.

② 공해 배출시설

소음·악취·먼지·매연 등과 같은 공해물질을 발생시켜 누구에게나 불쾌감, 더러움 등의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주변지역에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등 환경을 오염시키는 시설이다. 이러한 시설로는 쓰레기처리 및 매립시설, 분뇨처리시설, 골프장, 하수종말처리장, 염색공장, 연탄공장, 시멘트공장, 고속도로 등이 있다.

③ 지역이미지 실추시설

9) Frank J. Popper, "The Environmentalist and the LULU", in Robert W. Lake (ed.), Resolving Locational Conflict, (New Jersey : Center For Urban Policy Research, 1987), pp.1~3.

불쾌한 감정유발, 부정적인 이미지의 연상, 주변 교육환경에 대한 유해한 영향 등으로 지역적 오명을 유발시키는 시설로 위험시설이나 공해배출시설과는 달리 시설 그 자체가 주는 혐오성이나 위험성은 없거나, 있다하더라도 비교적 약하고 사회복지 측면이나 기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목적상 설치되는 시설이다. 이러한 시설로는 양로원, 아동복지시설, 정신병원, 맹아원, 갱생원, 양로원, 고아원, 공동묘지, 납골당, 교도소, 화장터 등을 들 수 있다.

이상의 비선호시설들의 유형을 도표화 하면 <표 2-1>과 같다.

<표 2-1> 비선호시설의 유형

비선호시설	공공시설	민간시설
위험시설	원자력발전소,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변전소, 화력발전소, 일반군사시설, 송전선, 댐 등	가스충전소, 생의학 폐기물처리시설, 저유소, 정유공장, 주유소, LNG저장시설, 노천광산 등
공해배출시설 (혐오시설)	쓰레기처리 및 매립시설, 분뇨처리시설, 하수 종말처리시설, 쓰레기 소각시설, 고속도로 등	골프장, 염색공장, 연탄공장, 시멘트공장, 화학공업단지 등
지역이미지 실추시설 (공익시설)	교도소, 소년원, 부녀자 보호시설, 갱생원, 미군기지, 미혼모 수용시설, 의료소년원, 알콜 및 마약중독자 수용소 등	빈민주택, 매춘굴, 공동묘지, 정신병원, 정신 및 지체장애자 수용소, 고아원, 양로원, 화장장, 농아원

자료 : 유해운·오창택. 비선호시설 입지 접근방식의 분석, 지방자치연구, 제8권 제2호, 한국 지방자치학회, 1996. p.205.

제 2 절 님비현상의 개념과 대두배경

1. NIMBY 현상의 개념

NIMBY란 “Not In My Back Yard”의 약자로 “나의 뒤뜰에는 안 된다”는 뜻으로 이 용어는 1977년 미국의 Michael O’Hare(1977)¹⁰⁾에 의해 처음 소개되기 시작하였는데, 일반적으로 어떤 사회에서 개개의 집단들이 公益(public interest)보다는 그들의 집단이나 지역의 특수이익을 최대의 가치로 보고 특정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는 다른 지역의 이익은 희생시켜도 좋다는 思考와 行態를 말한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님비현상을 지역이기주의와 일면 상통하는 개념으로 인식하고¹¹⁾ 혼용하여 쓰고 있으나 엄밀히 말하자면 님비현상은 두 가지의 지역이기주의 중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즉 지역이기주의는 소위 핼비(PIMBY : Please In My Front Yard)로 불리는 誘致的 지역이기주의¹²⁾와 님비(NIMBY)로 불리는 忌

10) Michale O’hare의 ‘Not on my block you don’t : facility siting and strategic importance of competence of compensation’이라는 논문에서 처음 님비라는 용어가 소개되었다.

11) 이달곤, “지역이기주의의 원인과 합리적인 해소방안”, 지방행정, 1991년 6월호, p.10.

避的 지역이기주의¹³⁾ 두 가지로 분류될 수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의 지금까지의 추세로 보았을 때, NIMBY현상이 지역이기주의의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NIMBY현상에는 위의 기피적 지역이기주의 의미만 내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지역이나 집단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려는 지역주의¹⁴⁾ 개념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NIMBY현상을 중립적인 개념으로 보아서 부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忌避的 지역이기주의를 해소하여 바람직한 지역주의로 유도하는 것이 님비의 개념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러한 님비현상은 우리 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쓰레기 매립장, 분뇨처리장, 화장장과 같은 혐오시설, 그리고 원자력발전소,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 변전소, 송전선과 같은 위험시설, 심지어 사회복지시설인 고아원, 양로원 등의 입지 자체를 반대하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즉 이러한 시설들은 지역주민들이 원치 않는다고 해서 불필요한 시설이 아니며 어느 곳에라도 입지시켜야만 하는 생활필수 시설이기 때문이다.

2. 님비현상의 대두배경

최근 들어 “우리 마을에 해로운 것은 안 된다” 는 님비현상이 급속히 팽창되어 가고 있는 데, 이러한 현상은 집단의 힘을 통해 요구를 관철하려 한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지역문제 해결을 매우 어렵게 만드는 장애가 되고 있다. 님비현상이 본격적으로 대두하게 된 배경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급속한 산업화·도시화를 들 수 있다. 1960대부터 추진되기 시작한 우리나라의 도시화·산업화정책은 경제성장과 국토공간 재편에 크게 기여한 면이 없지 않으나 반면 그 추진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생활조건을 적지 않게 파괴시켰다. 주민들의 집단행동은 이러한 생활조건 악화속에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지키고 지역의 생활상태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기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도시화가 급진전하는 산업사회는 경쟁사회이며, 오늘날 한국사회는 전투사회로 지칭되기까지 한다. 이러한 산업사회는 하나의 갈등사회로써 반대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구조와 행위간에 격심한 간격을 만들어 점차 더 큰 갈등양상으로 발전하며 이것이 공공부문에서는 집단민원과 집단행동으로 야기되고 있다.

그리고 산업화의 진전으로 산업간의 연관성이 높아지고 개별산업의 과급영향이

12)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주민들이 자기 이익이 되는 조치나 시설의 설치를 적극 유치하면서 전개하는 지역이기주의를 말한다.

13)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주민이 자기 지역내에 일정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업계획을 추진하는 것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지역이기주의를 말한다.

14) 지역주의란 지역성에 근거를 둔 집단인식, 즉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한 공동체간에 표출되어 나타나는 의식으로서 이는 특정지역의 고유문화 양상을 나타내 보이는 이데올로기적 요소이므로 지역이기주의와 구별하여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주민의식으로 고양되어야 한다.

: 최외출,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이기주의적 증후의 극복방안」, 새마을 지역개발논총, 제13집, 영남대 지역개발연구소, 1992, p.155-156.

커짐에 따라 특정 산업은 다른 산업에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피해를 주는 경우도 많은 데 이러한 피해 문제가 민간차원에서 제대로 해결되지 못할 때 역시 집단민원으로 발전하는 수가 많다. 예를 들면 공장건설로 인한 산업폐수가 인근어장에 큰 피해를 준다는가 골프장의 농약살포가 인근 농경지를 오염시킴으로써 농업생산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그러한 예가 될 것이다.

둘째, 주민들의 권리의식의 향상이다.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중앙집권적 권력구조와 권위주의적 정치·행정 때문에 각종 개발사업과 공공시설 입지에 별다른 제약이 없었으나 80년대 후반부터 진행되기 시작한 민주화의 흐름은 주민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권익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지키려는 정치적·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90년대 들어와서는 지방자치 실시로 인해 그러한 분위기가 더욱 고조되었다. 이러한 주민 권리의식의 고양은 주민들로 하여금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깨끗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구하는 환경권에까지 관심을 갖도록 만들어 주민들은 자기이해에 토대를 둔 요구를 능동적으로 표시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지역사회의 주체는 바로 주민이라는 신념을 토대로 생활과 직결되는 지역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게 됨으로써 지역개발과정과 그것이 가져다주는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었다.

셋째, 행정에 대한 불신이다. 우리 나라 국민들은 전통적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보다는 불신감을 강하게 갖고 있는데 이러한 불신현상이 특정 지역에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이를 반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수가 적지 않다. 이렇듯 국민들이 정부를 불신하는 이유는 정책결정이나 집행과정에서 관련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하거나 형평성을 확보하기 보다는 오직 목표달성만을 중시하여 비선호시설 입지결정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치 않은 사례와, 정책의 결정자나 집행자가 공익보다는 특수이익을 보호하는 경우가 많아 비선호시설의 입지의 순수성과 정당성을 저해한 사례, 그리고 비선호시설의 입지가 그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은 없이 지역환경 파괴의 심화, 건강악화 등 비용만을 부담시키는 사례가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민들이 행정을 불신하게 되면 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이 아무리 당위성이 크고 혐오시설의 입지가 적정하다해도 주민들로부터 무조건적으로 거부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제 3 절 님비현상의 유형과 발생원인

1. 님비현상의 유형

님비현상은 크게 발생원인, 관련 당사자에 따라 유형화할 수 있다.

1) 발생원인에 따른 구분

넘비의 발생원인별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로는 혐오시설의 입지선정, 수질 보전지역 지정 등 각종 사업시행이나 규제에 의한 지역개발의 저해와 재산권 침해에 대한 지가보상 및 재산권에 대한 생활보상을 요구하는 보상적 넘비인데, 개발사업자와 시설주체의 소극적 자세와 지역주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둘째로는 쓰레기매립장, 하수종말처리장,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등 각종 혐오시설의 자기 지역내 입지를 반대하는 저항적 넘비인데, 주민들이 특정시설이 자기 지역내에 입지하는 것에 대해 자기들이 정치적으로 소외집단이거나 열세집단이기 때문이라는 피해의식으로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많다.¹⁵⁾

셋째로는 주민의 복지와 이익이 되는 조치 또는 시설이 그 지역내에 입지하도록 요구하는 적극적 넘비인데, 시설입지의 합리성과 형평성이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는 수가 많다. 그 이유는 입지의 효율적 측면에서는 합리성이 강조되지만 낙후지역의 경우에는 주민들이 개발의 형평성을 들어 상반되게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2) 당사자에 따른 구분

<표 2-2>와 같이 넘비현상은 관련된 당사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지방정부간(광역자치단체간, 광역과 기초자치단체간, 기초자치단체간), 중앙정부와 지역주민간, 지방정부(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와 지역주민간, 지역주민 상호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표 2-2> 당사자에 따른 넘비유형

기본 유형	세 부 유형
주민과 정부간	① 주민과 중앙정부 ② 주민과 광역정부 ③ 주민과 기초정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①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 ②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
지방정부간	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② 광역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③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출처 : 김홍식, 「지역이기주의 극복을 위한 정책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3, p.50에서 재구성

2. 넘비현상의 발생원인

최근 들어 넘비현상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¹⁶⁾ 이러한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넘비의 발생원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5) 부만근, 「제주지역 주민운동론」, 제주대출판부, 1997, p.69.

16) 심상균, “넘비(NIMBY)현상의 효율적 극복방안”,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pp.3~4 참조.

첫째, 피해보상의 비현실적 측면 때문이다. 비선호시설은 해당지역에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반면에, 편익은 인근지역과 큰 차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측정이 곤란하기 때문에 이를 우려한 반대가 주요 원인이다. 비선호시설의 해당지역은 공공재의 특성인 무임 승차(free-riding)를 원하지 직접적인 비용부담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즉, 주민들은 비용-편익분석을 통하여 특정 정책에 순응할 지, 아니면 불응할 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데 특정지역에 일정한 시설이 입지하거나 개발사업이 시행될 때 주민들은 그 편익이 비용을 초과할 것으로 판단되면 이를 지지하고 반대로 비용이 편익을 초과할 것으로 인식하면 이에 반대하게 된다.

또한, 각종 개발사업은 그 추진과정에서 주민들의 토지나 건물이 수용됨으로써 재산권을 침해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환경의 오염·파괴로 생활권까지 침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물론 재산권에 대해서는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일정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생활권 및 환경권과 같은 무형적, 사회적 자산에 대한 보상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해보상의 미흡은 피해주민들로 하여금 생존권 또는 생활권적 입장에서 입지반대운동을 유발시키는 동기를 제공한다.

둘째, 정책결정과정에서 주민의 소외측면 때문이다. 이는 정부의 행정대응과 관련된 것으로, 지금까지의 비선호시설에 대한 입지정책이 '선 추진· 후 보상'이라는 비민주적이고 하향적인 중앙집권적 차원에서 결정됨으로 인해, 해당 지역주민들의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참여나 합리적인 설득 및 이해의 채널이 막혀 있었다. 즉, 과거 우리나라의 정책결정, 특히 개발사업이나 비선호시설의 입지결정은 전통적으로 <결정-공표-방어모형>¹⁷⁾에 입각하여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그 결정과정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여 왔다.

이와 같은 주민의 참여배제는 절차적 공정성을 무시하는 것으로서 이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소기의 목적만 달성하면 그만이라는 효과 지상주의, 사회문제의 해결을 정치과정으로서의 민의에 의존하기 보다는 전문가들과 기술관료에 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기술 지상주의, 절차가 지닌 독자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결과만을 중시하는 도구주의적 절차관 그리고 관존민비적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것이다.¹⁸⁾ 이러한 참여의 배제는 정책의 내용이 아무리 정당한 것이라 해도 주민들로 하여금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하고 더 나아가 정책결정의 취소나 사업집행의 철회를 요구하는 님비현상을 유발시킨다.

셋째, 비선호시설의 불안전성에 대한 공포측면 때문이다. 「마우어(C. Mauer)」는 혐오시설 입지에 대한 불응은 그 시설이 갖는 기술적 불확실성과 과학적 자료의 미비에 기인한다고 하고 있으며¹⁹⁾ 「모렐(D. Morell)」 등은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공포가 주민들로 하여금 비선호시설의 입지를 반대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

17) D. W. Ducsik는 혐오시설의 입지선정이 개발주체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되어 결국 주민의 저항을 초래하는 과정을 모형화하여 <결정-공표-방어모형>으로 명명하였다.

18) 안성호, 「행정과 절차적 정의」, 한국행정학보, 25권 제1호, 한국행정학회, 1991, pp.141~145.

19) 김길수, 「혐오시설의 입지갈등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1집,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 1995, p.197에서 재인용

고 주장하고 있다.²⁰⁾ 즉, 이러한 비선호시설의 입지결정과정에서 그 시설의 기술적 안전성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지역주민들에게 제공하지 않거나 제공하더라도 지역주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용어로 표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주민들이 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어 불응하게 되는 수가 많다.

그러나 위의 안전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쉬운 용어로 제공된다 해도 지역주민들이 비선호시설의 불안전성에 대해 평소에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은 시설의 입지를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기술적 안전성에 대한 주민들의 공포감은 시설의 위험성을 실제이상으로 과장 또는 왜곡되게 인식하게 하는데 이러한 경향은 통상 전례가 없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는 경우에 더 크게 나타난다.

제 4 절 NIMBY현상을 보는 시각

넘비현상을 보는 시각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부정적 견해이고, 또 하나는 긍정적 견해이다. 즉 정부를 공익결정의 주체로 보고, 국가의 발전과 공익실현을 위해 행정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넘비현상을 반공익적·비효율적인 것으로 인식할 수도 있고, 반면에 넘비현상을 사회갈등의 한 양태로서 정치·행정체계에 있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이해하는 입장이 있을 수 있다.²¹⁾

여기서는 위의 두 견해에 대한 논거를 서술하고 그에 대한 평가를 하고자 한다.

1. 부정적인 견해

전통적인 견해로써 주로 넘비현상에 의해 야기되는 결과와 영향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입장이다. 즉 전체 국민 또는 다수를 위하여 반드시 있어야 할 공공시설이 지역이나 집단의 이기적인 반발로 실현되지 못하기 때문에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공리주의 입장에서는 마땅히 NIMBY현상은 지탄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NIMBY 현상은 이기적이고, 비합리적이며, 사회에 대해 높은 비용을 초래하는 것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주민참여는 최소한으로 줄여야 하며, 정부의 역할은 집중적이고 교육적인 홍보를 통하여 주민의 인식을 바꾸는 데 주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²²⁾ 실제로 강한 이기적 성향을 띤 넘비현상으로 인해 많은 공공시설 설치에 차질이 있으며 더욱이 지방자치체가 실시된 이후, 지역주민의 권리의식의 신

20) D. Morell & C. Mogorian, "Risk, Fear, and Local Opposition : Not in My Backyar", *Sitting Hazardous Waste Facilities* (Cambridge, Mass : Ballinger, 1982), pp.21-43.

21) 한상철, "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주민행태에 관한 연구-집단 민원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pp.16~22.

22) 김홍식, 앞의 책, pp.14~15.

장과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고조로 공해 유발시설이나 환경 위해시설 같은 비선호 공공시설의 설치는 더욱 어렵게 되어, 현재 큰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원인이 그 동안 지역주민의 욕구나 지역실정을 무시한 행정편의주의와 중앙집권적 개발정책에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는 없으나, 편협한 忌避的 지역이기주의와 단체행동을 통해 집단적 지역이익을 관철시키는 경향이 계속 늘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공공사업 추진에 따른 비선호시설의 입지와 관련하여 야기되는 첨예한 이해갈등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결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가 심각히 제기된다. 특히, 이러한 忌避的 지역이기주의 결과는 필연적으로 비선호시설의 입지거부로 이어지는 경우 내지는, 설령 입지가 가능하더라도 무리한 손실보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최근의 쓰레기 처리장, 하수종말처리장 등의 설치에 따른 해당 주민들의 반대과정에서도 이같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님비현상은 대부분 부정적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부정적인 관점에서 본 님비현상의 폐단은 다음과 같다.²³⁾

첫째,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을 지연시켜 행정시책을 시의적절하게 추진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행정능률을 저하시킨다.

예컨대, 증가하는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분뇨처리장 증설이 긴급한 과제라 하더라도 부지선정을 둘러싼 주민들의 반대로 설치가 지연되거나, 교통체증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도로개설이 보상문제로 주민들과 대립되어 공사가 수년간 중단되는 일은 그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둘째,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한다. 주민들의 님비현상으로 인해 이미 정부가 계획하여 공포한 당초의 정책이 취소되거나 연기된다면 정부의 공신력과 권위가 저하됨은 물론 이는 결국 국민에게 행정에 대한 불신감을 심어주게 된다.

셋째,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증폭시킨다. 주민들의 님비현상이 대화와 타협으로 원만하게 해결되었을 때에는 문제가 적으나 해결기간이 장기화되고 폭력적인 집단행동으로 확대되는 경우에는 주민간의 갈등 또는 주민과 행정기관간의 갈등이 깊어지게 되어 사회문제를 일으키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심화되면 사회적 통합의 저해와 함께 정치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

넷째, 다수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풍조를 초래하여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파괴한다. 즉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될 경우에는 그 해결을 위해 실정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시위, 농성, 점거 등의 방법으로 밀어부치는 과격행동이 적지 않게 나타나게 되며 이로 인해 사회질서가 파괴되고 장기적으로는 국민생활 전반에 불안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 기본이 흔들릴 수도 있다.

다섯째, 공공시설의 입지선정의 질을 저하시킨다. 쓰레기매립장, 하수종말처리장, 핵발전소와 같은 비선호시설의 입지는 기술적 타당성,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한 정확한 과학적 분석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정치적 타협 내지 힘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입지선정의 질을 떨어뜨리게 된다.

23) 부만근, 앞의 책, pp.29~30.

2. 긍정적인 견해

다수의 공익을 위해 소수의 이익을 희생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은 아니며, 소수의 정당한 권리도 당연히 보호받아야 한다는 정의론(正義論)적 입장에서의 시각이다. 즉, 정의는 다수의 이익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수이든 소수이든 정당한 편의 권리나 이익을 보호하거나 증진하기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소수의 정당한 권리가 다수의 이익과 상반된다²⁴⁾ 하더라도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즉, 소수의 정당한 권리는 다수의 이익에 비하여 사회적 효용가치가 적다고 해서 무시당하거나 침해될 수 없는 것인 바, 설사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에 필요한 시설이더라도 그것의 설치로 말미암아 소수의 정당한 권리가 침해된다면 그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시각이다. 이런 관점에서 님비현상은 비선호시설의 자기 지역내 설치로 인하여 위협받는 생활권, 경제권 등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지역주민 또는 자치단체의 정당하고 당연한 권리행사의 일종으로서 건설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긍정론의 견해이다.²⁵⁾

어느 누구든 그 지역 주민만큼 그 지역에 관하여 잘 알지 못하고, 애정도 갖지 못하며 특히 주민의 지식과 애정은 역사와 전통, 그리고 여러 문화유산을 갖고 있는 지역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고자 하는 지역주민들의 집단적 의식에서 응고되어 나오는 것이므로 지역에 負의 영향을 미칠 개발계획 또는 비선호시설의 입지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²⁶⁾

이러한 긍정적인 견해에 대한 정당성 주장의 구체적 근거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의 입장에서 볼 때 비선호시설에 대한 이제까지의 입지선정 방법은 그 자체가 공정하지 못하였다. 특히 선정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지역주민의 참여를 철저히 배제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한데, 님비현상은 이같은 비밀행정에 대한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반작용으로서 정당화될 수 있다.²⁷⁾ 는 것이다.

둘째,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지가하락, 오염과 악취 및 건강상의 위험 등 비선호시설의 입지와 관련하여 파생되는 불이익은 지역사회에 집중되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²⁸⁾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지역주민 또는 자치단체의 반발은 합당한 보상없이 과도한 부담과 희생을 일방적으로 강요받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서 정당한 자기방어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정부가 시행하는 환경영향평가가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충실하게 실시된 적이 있는가, 또한 정부가 택한 입지선정 방법에 속임수가 없었는가 하는 정부에

24) Jefferson, Michael "Are You NIMBYs really so bad : View Point2", pp.229~230.

25) Jefferson, Michael, "Are NIMBY's really so bad : viewpoint 2", Town & Country Planning, pp.229~230.

26) 金英洙, 「지역이기주의의 극복과 지방의회의 당면과제」, 중앙대학교 중앙행정연구회, 중앙행정논총 제7권, 1993, p.141.

27) 양홍석, 「NIMBY 현상의 원인과 극복방안」, 고시행정, 1991년 11월호 p.215.

28) 김홍식, 앞의 책, p.19.

대한 주민들의 불신과 피해의식은 그 간의 정부행태로 보아 상당한 현실성을 지니고 있다.²⁹⁾는 것이다.

넷째, 지금까지 정부는 지역사정을 잘못 판단하여 그릇된 정책결정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는 바, 특히 혐오시설의 설치로 예상되는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상의 위험 또는 지역주민의 비물질적인 손실 등을 과소 평가하여 무리한 사업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님비현상은 기술관료나 행정관료들이 간과하기 쉬웠던 지역문제를 명확히 부각하고 확인시켜 주어 정책결정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경솔함을 예방하고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님비현상은 정책오류를 예방하고 교정해주는 환류기능(feedback function)의 일종으로서 긍정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것이다.³⁰⁾

이러한 정의론의 대표적 학자인 M.Dear는 님비를 그들의 지역을 보호하려는 거주자들의 동기라고 정의하고 공식적으로 보호주의적 성향(Protection attitude)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 견해는 결과중심의 부정적 견해와는 달리 님비현상의 원인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3. 두 견해에 대한 평가

위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NIMBY를 결과로만 보는 부정적 견해에서는 NIMBY현상을 근절되어야 할 사회 기현상으로 보지만 그 발생원인 측면에서 보는 긍정적 견해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하는 입장에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부정론은 님비현상으로 초래되는 폐단의 성격 및 심각성, 그리고 그것의 극복 필요성을 명확히 볼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하고, 긍정론은 님비현상의 발생원인을 정확히 판단하고 이해하는 데 매우 유용한 시각을 제시하는 것이다. <표 2-3>는 님비현상에 대한 두 견해의 근거를 간추린 것이다.

<표 2-3> 님비현상에 대한 두 견해

구 분	부 정 론	공 정 론
철학적 기반	공 리 주 의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정 의 론 (소수의 정당한 권리보장 원칙)
경험적 근거	님비현상의 부정적 결과 ▷ 공공시설의 입지확보 곤란 ▷ 각종 갈등의 증폭 ▷ 물리적 집단행동의 만연 ▷ 정부의 권위 및 공신력 저하 ▷ 환경문제의 악화	님비현상의 발생원인 ▷ 부당한 입지선정 방법/ 주민의견수렴 미흡 ▷ 과도한 희생 및 부담강요/ 보상미흡 ▷ 정부의 불성실한 태도/ 행정에 대한 불신

자료 : 김홍식, 전게서. p.22.

29) 김홍식, 앞의 책, p.20.

30) Fiorino, Daniel "Environmental Risk and Democratic Process : A Critical Review", Columbia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14, pp.501~547.

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부정론과 긍정론은 평가기준이 서로 달라 결국 상반되는 입장을 나타낸다. 이러한 상이한 견해는 다수를 위한 시설물의 설치와 관련된 사업시행자와 입지지역 주민의 입장간에 심한 인식차이를 초래하여, 두 집단이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공공의 문제인식에 있어서 상호 대립되는 양극화를 나타내게 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 두 견해를 각각 분리해서는 근본적으로 님비현상을 이해할 수 없다. 여기서 우리는 문제해결 차원에서 님비현상을 어느 한 가지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이러한 두 견해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이해하여 님비현상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문제해결의 관점에서 님비현상을 잘못된 것이며 이기적인 것이라고만 말할 것이 아니라 그 지역주민이 자신의 이익추구를 위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점도 인식하여야 한다. 결국 가장 바람직한 것은 님비현상을 우리 사회가 지방화 및 민주화 사회로 진행해 가는 과도적인 상황에서 두드러진 사회현상으로 인식하고 그러한 님비현상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지역주의로 유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인 님비현상의 문제해결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그림 2-2>와 같은 님비현상과 문제해결에 대한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이 분석틀은 님비현상을 정책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분석하여 모델화한 것이다.

먼저 님비현상의 발생배경과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負의 외부효과, 지역주민의 권리의식의 향상, 보상제도의 비현실성, 행정에 대한 불신, 주민의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소외로 한정하였다.

공공시설의 설치는 공공정책의 속성상 집행과정에서 관련자 즉 정책집행자인 사업주체, 대상집단인 지역주민 사이에 여러 형태의 지지와 갈등을 유발시킨다. 그러므로 님비현상을 정책집행 과정상 나타나는 갈등이라는 상호작용의 한 형태로 이해할 수 있다. 즉, 님비현상은 전체의 순환적인 정책과정 중의 일부분인 정책집행 과정상 나타나는 하나의 갈등현상으로서 사업주체의 정책의도 내용에 불일치된 정책대상집단의 정책불응으로 파악할 수 있다.

님비현상의 발생배경과 원인단계는 정책의제 형성단계로 어떤 사람들로 하여금 전환이나 개선을 요구할 정도의 긴장 또는 불만을 야기하게 하고 이는 곧 구체적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어떤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드는 단계이다.

둘째 단계는 정책결정단계에 속하는 님비현상 인식단계로 이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님비현상 해결이라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장래의 활동지침을 결정하는 단계이다. 즉, 정책집행자(사업시행자)가 님비현상을 긍정적인 견해로 보는가? 또는 부정적인 견해로 보는가?에 따라 님비현상에 대한 정책집행이 전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 님비현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어서 정책집행자는 <그림 2-2>와 같은 정책집행을 하게 된다.

셋째 단계는 정책집행 단계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님비현상에 대한 인식(정책결정)을 토대로 정책을 실행에 옮기는 단계로서 잘못된 정책결정은 잘못된 정책의 집행으로 이어지고 이로 인하여 정책순응이 아닌 정책불응을 낳게 되는 것이다.

넷째 단계는 님비현상에 대한 정책대응 갈등단계로 이어지는 데 이는 님비현상에 대한 정책집행의 반응으로써 정책순응³¹⁾과 정책불응으로 나뉘어 질 수 있는 바, 대부분의 비선호시설의 설치에 <그림 2-2>와 같은 정책불응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불응은 님비현상에 대한 정책이나 정책집행이 집행대상집단(지역주민)의 현존하는 가치나 관습 그리고 신념과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 또는 금전적 욕구 등으로 인해 발생하게 된다.

마지막 단계는 님비현상에 대한 정책평가인데 이는 님비에 대한 정책집행의 결과에 대한 사후적 효과를 측정하는 의미도 있지만 보다 넓은 관점에서 보면 님비현상에 대한 해결방법까지도 제시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이 단계에서는 정책집행자와 정책대상 집단간의 진정한 해결방안인 당사자들이 만족하는 타협안

31) 정책결정자의 의도나 정책내용에 대해 정책집행자나 대상집단이 일치된 행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을 모색하는 단계이다.

이러한 분석들은 순환적 성격을 띤다. 즉, 님비현상에 대한 정책결정은 정책집행을 통해 구체화되고 달성된 결과를 평가한 정보에 따라 환류되면서 다음의 님비현상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게 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님비현상 해결방이 자연스럽게 도출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분석들의 일관성과 합리성이 확보될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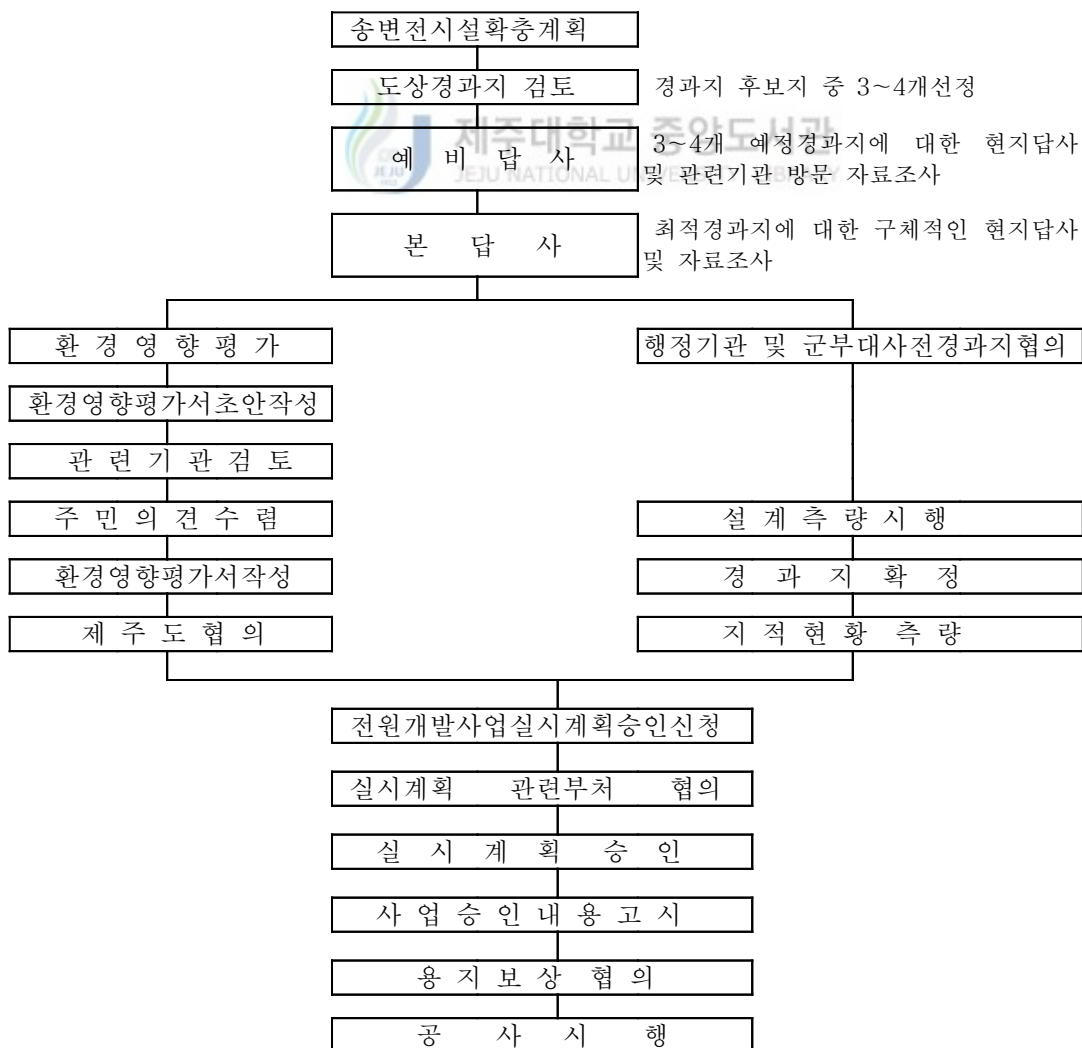
제 III 장 제주지역 성산분기 송전선로 입지반대 사례연구

1. 사업추진 과정

한국전력공사는 현재 1978년도에 66kV급으로 건설된 송전선로(제주지역의 해안선을 따라 연결)를 이용하여 제주도 동부지역, 즉 조천·구좌·성산·표선지역 19,500 가구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 데, 이 송전선로의 최대용량이 3만kW에 불과한데다 선로가 20년이 넘어 낡은 상태여서 전력공급이 '98년부터 한계점에 이르고 있는 불안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99년도 여름철 최대 사용전력은 2만 8천kW임). 특히 현재 추진중인 대규모 관광단지가 조성될 경우, 동부지역 전력난은 한층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는 제주 동부지역 전력공급을 위해 건설되는 성산분기 송전선로(17만 kW까지 송전가능)에 북제주, 남제주 및 한림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송전키 위하여 송전선로 건설 업무흐름도에 따라 사업을 진행시켰다. 송전선로 건설업무흐름도를 보면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 송전선로건설 업무흐름도



한국전력측은 94년 2월에 154kV 성산분기 송전선로 사업계획을 세워 동년 12월 도상경과지 선정안을 얻기 위한 사전 후보지조사에 착수하였으며, 그 조사업체로 (주)동부엔지니어링을 선정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95년 4월 7일 한전 제주지사는 (주)동부엔지니어링이 제출한 예비답사 결과를 토대로 송전선로경과지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를 거친 후 당초 송전선로 예정 경과지 3개 방안 중 제 1안을 선정하였다.

3개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표 3-1>과 같다.

<표 3-1> 154kV 성산분기 송전선로 3가지 대안

입지여건 대안	구 간	경 과 지	선로길이
제 1 안	154kV한라TL NO.83 (남제주군 남원읍 한남리) ~ 성산변전소	남원읍,표선읍, 성산읍	약 23km
제 2 안	154kV한라TL NO.44 (북제주군 조천읍 교래리) ~ 성산변전소	조천읍,구좌읍, 성산읍	약 21km
제 3 안	154kV한라TL NO.28 (북제주군 조천읍 와흘리) ~ 성산변전소	조천읍,구좌읍, 성산읍	약 22.9km

그 후 한전에서는 제 1안에 대한 본답사와 아울러 행정기관 및 군부대 사전경과지 협의과정으로서 제주도, 남제주군, 해군부대, 공군부대, (주)대한항공 비행훈련원과 송전선로 경과지가 관계기관에 지장을 초래하는 지에 대하여 협의를 거쳤다.

그리고 제주도개발특별법³²⁾에 규정되어 있는 경관영향평가초안을 (주)동부엔지니어링으로부터 제출받아 남제주군에 제출하여 주민공람을 95년 8월 5일부터 8월 24일(20일간)까지 거치고 제 1안의 경과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마찬가지로 (주)동부엔지니어링으로부터 제출받아 남제주군에 제출하여 이 또한 동년 9월 4일부터 10월 3일(30일간)까지 주민공람을 거쳤다.

환경영향평가 공람기간 중 한전과 남제주군은 동년 9월 4일 표선면사무소에서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가져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96년 2월 23일 한전은 환경 및 경관영향평가 본평가서를 남제주군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96년 3월 12일 제주도에서 한전이 경관영향평가 초안작성 후 주민의견 수렴 전에 제주도와 협의치 않았다는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자 한전은 경관영향평가 초안을 제주도 경관영향평가심의회측에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한전

32) 현행 제주도개발특별법에는 각종 개발사업 또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할 때 특히 송전선로의 경우는 10km(도심지4km)이상인 경우 경관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사업의 인·허가 또는 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듣기 전에 평가서를 도지사에게 제출,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음.

에 제 1안과 제 2안의 경우 동부산업도로 횡단으로 경관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검토의견을 제시하면서 당초 제 1안에서 제 3안으로 경과지를 변경하도록 요구하였다.

한전에서는 제주도의 검토의견을 수용하여 제 3안에 대한 경관 및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시작하여 96년 10월 29일 경관영향평가서에 대해 제주도의 협의를 거치고 북제주군과 남제주군에 제출하여 11월 1일부터 11월 20일(20일간)까지 주민공람을 거친 결과 남제주군에서는 의견이 없음을 통보한 반면, 북제주군에서는 와흘리 공동목장 경과지 변경요구와 송당리 높은 오름지역의 남측으로 경과지 변경을 요구하는 등의 의견을 통보해 왔다.

이어 12월 2일 한전측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받아 해당 관청에 제출하여 96년 12월 15일부터 97년 1월 4일(20일간)까지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12월 13일에는 성산읍 수산1리 사무소에서, 12월 16일에는 조천읍사무소에서, 12월 17일에는 선흘 1리사무소에서, 12월 18일 구좌읍사무소에서 각각 주민설명회를 가졌으며 97년 1월 28일에는 제주도, 구좌읍, 조천읍, 선흘 2리, 와흘리 등에서 공청회 개최 요구를 해옴에 따라 2월 25일 조천읍사무소에서 지역주민 45명, 동부엔지니어링(주), 한전, 제주도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가 열렸다.

3월 24일 한전에서는 환경단체 및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당초 계획인 4회선 4각 송전철탑에서 오름환경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2회선 4각 송전철탑으로 사업을 변경하였다. 이어 9월 6일 제주도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열고 한전제주지사가 제출한 성산분기 송전선로 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본평가서)를 심의하고 당초 철탑 높이인 60m를 45m로 낮추고 마을이 있는 지역과 관광개발 예정지역, 오름 통과지역은 가능한 한 우회해서 미관이 철탑보다 나은 관형주³³⁾를 시공한다는 전제조건으로 지상에 송전철탑을 건설하도록 허용하여 지중화계획을 장기적 과제로 돌렸다.

98년 4월 15일 한전은 산업자원부로부터 전원개발특례법³⁴⁾에 의한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용지교섭을 벌이고 있으며 향후에 사업 추진이 어려울 경우에는 토지수용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문제의 해결을 모색할 계획이다.

154kV 성산분기 송전선로사업 추진과정을 요약하면 <표 3-2>과 같다.

<표 3-2> 성산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추진일지

일 자	추진내용
'95. 2. 2	154kV 성산분기 송전선로 설계 지적 현황측량 및 환경, 경관영향평가 용역계약 (계약자 동부엔지니어링 주식회사)
'95. 4. 6	예비답사후 한전제주지사에 결과보고(동부엔지니어링)

33) 환경친화형 지지물로서 단순한 형태로 철탑에 비해 심리적, 시각적측면에서 부담감을 최소화하는 경관상 유리한 구조물이다.

34) 발전소·변전소·송전선로 건설을 위한 개별법령으로서 이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소요되는 막대한 인력, 시간, 비용을 개선하기 위해 인·허가권자인 관계 행정기관들이 함께 검토·협의하여 해결하도록 하는 행정절차 간소화제도인데 1978년 12월 5일 법률 제1331호로 제정되어 이후 7차 개정을 하였다.

<표 계속>

일 자	추진 내용
'95. 4. 7	송전선로 경과지 심의위원회 개최 - 의결사항 : 송전선로 예정경과지 3개 방안중 제 1안을 경과지로 선정
'95. 5. 2	본답사 후 결과보고서 한전제주지사 제출(동부엔지니어링)
'95. 5.17	송전선로 경과지에 대한 지장유무 조회 및 대기관협의 - 제주도, 남제주군, 해군부대, 공군부대,(주)대한항공 비행훈련원
'95. 7.26	제 1안에 대한 경관영향평가 실시후 남제주군에 초안제출
'95. 8. 2	경관영향평가 초안 열람 공고(남제주군) - 열람기간 : '95. 8. 5~8.24(20일간)
'95. 8.23	제1안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동부엔지니어링에서 받아 남제주군에 제출
'95. 8.31	환경영향평가 초안 열람공고 - 열람기간 : '95. 9. 4~10 (30일간)
'95. 9.14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 개최 - 장소 : 표선면 사무소 - 일시 : '95. 9. 4(목) 14:00
'96. 2.23	환경 및 경관영향평가 본평가서를 동부엔지니어링으로부터 제출받아 남제주군에 접수
'96. 3.12	경관영향평가 초안작성 후 주민의견 수렴전에 제주도와 협의치 않았다는 이유로 경관영향평가서 제출을 요구하여 한전에서 제주도에 제출
'96. 4.24	경관영향평가 제 3안으로 변경(제주도 경관영향평가심의회 결과에 따름)
'96. 8.20 ~ 22	제 3안에 대한 본답사 결과보고(동부엔지니어링)
'96. 8.31	송전선로 예정경과지 지장유무 검토의회 - 대한항공, 남제주군, 북제주군
'96.10.21	동부엔지니어링으로부터 경관영향평가 초안을 받아 제주도, 북제주군, 남제주군에 초안 제출
'96.12.13	경관영향평가 초안공람('96.11.1~11.20)후에 한전제주지사에 의견 통보 (남제주군) - 의견 없음
'96.12.26	경관영향평가 초안공람('96.11.1~11.20)후에 한전제주지사에 의견 통보 (북제주군) - 송당리의 높은 오름지역 남측으로 경과지 변경요구
'96.12.15 ~ '97. 1.4	한전제주지사는 제 3안의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받아 해당관청에 제출하여 주민공람을 실시
'96.12.13 ~ 18	주민설명회 개최 - 12.13 성산읍 수산1리사무소 - 12.16 조천읍사무소 - 12.17 선흘1리사무소 - 12.18 구좌읍사무소
'97. 2.25	주민공청회 개최 - 장소 : 조천읍사무소 - 참석자 : 지역주민45명, 동부엔지니어링(주), 한전, 제주도 관계자
'97. 3.24	154kV 송전선로 건설사업계획 일부변경 - 당초 4회선 4각철탑에서 2회선 4각철탑으로 변경
'97. 9. 6	제주도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열고 한전제주지사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를 심의하고 조건부 지상화 송전철탑 방식 허용 - 철탑높이를 60m에서 45m로 낮추고 마을이 있는 지역과 관광개발 예정 지역, 오름 통과지역은 가능한 우회, 관형주 설치조건
'98.4.15~	산업자원부로부터 전원개발특별법에 의한 실시계획 승인후 지속적인 용지매수 협의중

2. 입지반대의 원인

이러한 154kV 성산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입지반대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고찰하면 크게 환경적 측면, 경제적 측면, 건강상 위해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환경적 측면의 문제로서 주로 환경시민단체들이 입지반대의 이유로 제기하는 것이다. 이는 제주도 중산간지역에 산재하는 오름군락지를 송전선로 철타입이 지나면 오름경관 및 아름다운 생태계의 훼손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둘째, 경제적 측면의 문제로서 주로 지역주민들이 반대이유로 제기하는 것이다. 이는 송전선로 입지에 따른 보상가격의 불만족 및 주변지역 지가하락에서 비롯되는데 154kV 성산분기 송전선로 사업의 경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 특례법 제 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10 제8항, 동법 제5조의 4 1항에 의거,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해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 평가를 의뢰하여 산출된 지가의 산술평균액을 보상단가로 확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감정평가에 의한 보상단가는 154kV 성산분기 송전선로의 경우 98년도 개별공시가격에 비해 평균 300%에 근접하는 금액으로 실거래 가격과 격차를 많이 완화한 것으로 보아진다. 그러나 실제거래 가격에는 못 미치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손실보상시 편입부지(154kV 철타입 건립시 지형 및 선로의 각도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철타입부지 면적은 평균100㎡, 관형주의 경우 36㎡)에 대한 보상만 이루어져 철타입건립에 따른 지가하락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용지협의를 주민들의 반발로 용지매수협약이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이 선하지³⁵⁾의 보상문제이다. 70년대 한전의 66kV 송전선로 건설시에는 대부분의 선하지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 한전측과 토지주간의 선하지 보상관련 소송이 늘고 있으며 대부분 한전측이 패소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제주지역의 다른 154kV 송전선로의 경우 사업부지에 편입되는 면적에 대해 일률적으로 감정평가한 보상단가의 30%를 지급하였으며 신설되는 성산분기 송전선로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그러나 선하지 보상관련 소송에서 패소 후 지급결정 금액이 보상단가의 30%보다 오히려 낮은 12%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추후 송전선로사업의 경우 선하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별도로 시행하여 보상하도록 한전 자체지침이 내려온 실정인데 이 사실을 감안하면 손실보상금이 상대적으로 적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선하지의 보상에 있어 문제점은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모든 부지에 대해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나 사업기간 및 현재의 인력으로는 사실상 어려워 보상금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토지주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셋째, 건강상 위해측면의 문제로서 지역주민들이 송전선로부터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하여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여 입지를 반대하는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는

35) 전선로 용지에서 지지물 용지를 제외한 토지를 말하는데, 여기서 지지물 용지란 철타입, 철주, 철근콘크리트주, 목주 또는 이와 유사한 공작물을 지지하기 위한 토지를 말한다.

전자파의 위해성에 대해 과학적으로 입증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 언론을 통하여 전자파가 특정 암의 발병과 관계가 있고, 사람과 가축의 유산율을 높인다는 보도가 나가는 것이 주민들로 하여금 송전선로에 대한 입지반대를 일으키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3. 입지반대 운동의 과정

성산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따른 입지반대는 구좌읍 송당리, 성산읍 수산 2리, 조천읍 와흘리 등의 부락 주민들이 제기하였고, 여기에 참여자치환경보전을 위한범도민회 등 시민단체들이 지원세력으로 등장하였는데 이들의 입지반대운동 과정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1) 송당리 지역주민들의 입지반대 운동

154kV 성산분기 송전선로가 구좌읍 송당리 마을인근을 경과한다는 사실을 신문보도를 통해 비로소 알게된 송당리 주민들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함이 없이 한전에 의해 이루어진 일방적인 입지선정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던 중, 96년 12월 18일 구좌읍사무소에서 개최된 주민설명회에서 송당리 주민 일부가 동부산업도로 확장계획과 연계한 지중화 시행과 송당리 경유노선을 반대함은 물론 이에 대하여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재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후 97년 2월 25일 조천읍사무소에서 개최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에서 송당리장은 주민설명회시에 주민들이 제시한 의견(지중화, 마을우회 시공 등)에 대한 답변이 없는 것을 따지고 전체노선 중 마을 인접지역은 송당리만 경유하여 불합리하므로 송전선로 노선을 남제주군과 북제주군의 경계지역으로 변경하여 줄 것 등을 요구하였다.

그러던 중, 98년 1월 6일 송당리장은 제주도에 성산분기 송전선로 환경영향평가 재심의 요청을 하였는데 제주도는 이에 대하여 한전측과 협의를 거친 후, 송당리를 경과하는 성산분기 송전선로사업은 법적 절차를 거친 사업이므로 재심의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을 회신하였다. 그리고 한전측에는 송전선로와 관련된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동년 8월 22일 송당리장 외 15명의 주민이 송전선로가 송당리 마을과 인접하여 경과하는 데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더 나아가 경과지 변경요구를 하기 위해 한전에 항의 방문을 하였다. 이 자리에서 방문자들은 지중화시설 요구, 인접한 송당목장 지역으로의 경과요구, 축사 위로 송전선이 지나갈 때의 젖소에 미치는 악영향, 전자파 유해 문제에 대하여 강렬히 따졌다. 이에 대해 한전에서는 송당리 경유구간 지중화시 공사기간이 장기화(4~5년)되므로 전기공급에 막대한 차질을 빚으며, 공사비가 15배내지 19배가 증가한 약 1,500억원이 소요된다는 것과 중산간지역의 식생이 파괴되기 때문에 국내외에서 야산지역에 대한 지중화 사례가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또한, 다른 인접지역으로의 변경요구에 대해서는 사업계획 변경기간의 장기화로 인해 당장 동부지역의 송전용량이 한계에 부딪혀 각종 신규 전기수요(행원농공단지, 신규양식장, 세화·송당관광지, 골프장 등)에 대처가 불가능한 점과 송당목장 지역으로의 변경시 새로운 주민민원이 발생하는 점을 들어 송당리 주민들을 설득하였다. 그리고 남제주군과 북제주군 경계지역으로의 변경요구에 대해서는 남제주군과 북제주군 경계지역 남측에는 KAL 비행훈련원이 위치하고 있어서 항공법에 의거 비행구역 내에 송전철탑 등 장애물 입지가 불가할 뿐만 아니라 산굼부리, 명진리조트도 경과하게 됨으로써 주민요구의 수용이 어렵다는 것을 알렸으며 이와 함께 전자파는 유해성을 입증하는 확실한 연구가 없음을 밝혔다.

99년 7월 21일 송당리장은 공문을 통하여 한전에 송전철탑을 인가에서 1km이상 거리를 둘 것과 마을과 인접해 있는 송전선로만이라도 지중화 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한전측은 중전과 같이 경과지가 변경되는 지역에 새로운 민원 발생, 사업계획 변경에 장기간 소요되는 점, 지중화시 시공여건인 4차선 이상의 도로구성 미비를 이유로 어렵다는 회신을 송당리에 보냈다. 그러나 송당리에서는 이 회신에 반발하여 동년 8월 4일 지역주민들의 송전선로 반대서명을 받아 이를 제주도에 제출하였다.

9월 9일에는 도의회 관계자, 제주도 관련 공무원, 한전측 관계자 및 송당리 주민들이 참석하여 간담회가 열려 송당리 주민들이 제기한 진정에 대한 현장확인 및 의견교환을 하였으나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하였다.

9월 13일에는 도의회 회의실에서 도의회 의원 3명과 전문위원, 제주도의 관련 공무원, 한전측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송전선로 사업추진에 대한 중재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가 개최되어 위의 진정내용에 대한 한전측의 입장을 듣고 의견을 교환하였으나 뚜렷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채, 민원의 조속한 해결에 제주도와 한전이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데 합의하고 끝났다.

그 후 송당리에서는 11월 12일 한전에 서한문을 보내 송당리에 건설중인 송전철탑 공사를 중지하지 않을 때에는 주민들의 실력저지도 불사하겠다고 주장하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반대운동이 소강상태에 있다.

2) 와흘리 지역주민들의 입지반대 운동

와흘리 주민들은 성산분기 송전선로가 와흘리의 공동목장을 통과하여 마을 공동체가 상실될 우려가 있다며 96년 12월 17일 개최된 주민설명회에서 한전측에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따른 주민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두달이 지나도 한전의 공식적인 회답이 없자 와흘리 주민들은 한전측이 대화도 없이 공사를 강행하려 한다며 불만을 나타내었다.

이처럼 와흘리 주민들이 선로변경을 요구하는 이유는 뉴제주컨트리클럽과 공동으로 와흘리 공동재산인 공동목장을 개발하여 노인시설을 비롯한 와흘리 복지사업에 투자하기로 한 계획이 송전선로 통과로 어렵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 후 한전에서는 97년 2월 13일 와흘리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첫째, 와흘리에서 주민의견서를 통해 제시한 경과지 변경안은 동부산업도로를

통과하게 되어 제주도개발특별법에 의한 경관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불가능한 실정이며

둘째, 제주도에 동부산업도로가 관광객의 주요 수송도로인 점을 감안하여 동부산업도로의 경관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

셋째, 와흘리에서 변경을 요청한 경과지노선의 지적관계에 반도축산개발, 개인들의 문중토지가 산재하여 있어 변경에 따른 또 다른 주민반발을 설명할 명분이 없으므로 경과지 변경의견을 수용하기가 어렵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와흘리 주민들은 2월 25일 성산분기 송전선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에 불참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자 한전측에서는 송전선로 계획은 경관을 최대한 살리는 차원에서 결정된 것이고 공동채산을 쓸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최대한 우회하겠다고 하며 계획변경은 어렵다는 입장을 계속하여 밝혔다.

이어 2월 25일 열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에서는 와흘리 주민들이 현재의 송전선로 경과지가 마을 공동소유의 목장을 경과하여 공동개발사업에 차질을 빚는 만큼 그 북쪽으로 우회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한전측에서는 그렇게 되면 오름지역 및 교래 국민휴양지, 관광승마장, KAL 비행훈련장을 경과하여야 하며 관광객의 주요 수송로인 동부산업도로(지방도 1113호)의 통과가 불가피하므로 경과지 변경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설득하였다.

그러던 중, 11월 4일에 한전에서는 와흘리에 송전선로 경과지(안) 3개안³⁶⁾을 제시하면서 경과지 위치 선정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와흘리 주민대표와 동행하여 측량을 하고자 한다는 공문을 보냈고 와흘리에서는 이에 대한 회신으로 전력사업이 국가 기간산업인 것을 주민들이 잘 알고 있으나 어느 한쪽을 개발하면서 다른 한 쪽이 소외된다면 불행한 일이라며 한전에서 제시한 변경안 중 제 3안에 동의하는 대신 한전이 마을의 발전을 위해 가로등을 마을 운동장에 4기와 마을 연못 주변에 2기를 설치해 줄 것과 연중 전기 점검봉사를 해줄 것을 요구하였다. 12월 16일에 한전에서는 가로등시설 설치요구를 수용하는 한편 매년 전기 순회서비스 봉사활동시 와흘리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할 것을 약속하였다.

그 후 98년 1월 8일 한전에서는 와흘리에서 요청한 가로등 시설의 설치를 완료하여 이를 와흘리에 인계하였다.

99년 10월 23일에는 와흘리에서 다시 한전측에 송전선로사업에 적극 협조한다는 전제아래 마을 운동장에 가로등 2기와 고평동에 가로등 4기를 추가로 설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하였는데 현재 한전에서는 이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다.

3) 환경시민단체의 입지반대운동

성산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로는 제주범도민회, 오름나그

36) 제 1안은 와흘리 공동목장을 관통, 제 2안은 공동목장 북측 가장자리로 경과, 제 3안은 공동목장 남측 가장자리로 경과하도록 되어 있다.

네회, 제주민예총, 푸른이어도의사람들, 오름동우회, 산악동우회, 제주종교인협의회 등 여러 단체가 있으나 참여자치 환경보전을 위한 제주범도민회(약칭 : 범도민회)가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세계적으로 이름이 나있고 제주인의 마음의 고향인 오름(기생화산)을 보호하기 위해 오름이 균락을 이루고 있는 동부중산간 지역에 송전철탑이 경과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것이다. 이 단체는 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송전선로의 전면지중화 입장에 강경함을 보이고 있으며 반대서명 운동을 전개함은 물론 경관, 환경영향평가 심의회의록 공개를 요구하는 등 비교적 활발히 운동을 벌이고 있다. <표 3-3>은 환경시민단체의 그 간의 입지반대활동 상황을 일자로 정리한 것이다.

<표 3-3> 환경시민단체의 성산분기 송전선로 반대운동 일지

일 자	송전선로 입지반대운동 주요내용
96.12.9	범도민회 「오름의 왕국을 절단내는 성산분기 송전선로」라는 제하의 송전선로 반대 성명 발표
96.12.27	오름나그네회 「오름을 지킵시다」라는 제하의 광고를 도내일간지에 발표
97. 2.25	범도민회 「송전선로 지중화하라」라는 제하의 성명 발표
97. 4.15	YTN 성산분기 송전선로 관련 취재 협조 및 인터뷰 - 이지훈 집행위원장
97. 7.22	범도민회가 성산분기 송전철탑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심의 관련 성명발표
97. 7.29	범도민회가 송전탑과 관련한 대학교수 설문조사 결과발표
97. 8. 5	범도민회·오름나그네회 공동명의로 「동부중산간지역 송전선로 반대한다」라는 제하의 광고를 3개 일간지에 발표
97. 8.11	KBS <제주패트롤>과 송전탑 관련 인터뷰 - 범도민회 문용포 사무처장
97. 8.12	범도민회 주관으로 동부중산간지역 송전선로 건설 저지를 위한 도민대책위 구성과 관련한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개최
97. 8.13	범도민회가 송전탑 반대 언론사 중견간부 서명현황 발표
97. 8.21	범도민회가 송전탑에 대한 한전측 입장을 반박하는 기자회견
97. 9. 2	신구범 도지사의 「지중화 불가」 발언에 대한 성명 발표 송전탑 건설을 반대하는 도내 각계인사 300인 선언을 도내 일간지에 발표
97. 9.10	범도민회 주관으로 도당국의 성산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허용에 따른 도민대책위 성명 발표
97. 9.22	제주종교인협의회 주최 「동부중산간 송전탑 반대 오름 기행」안내

제 IV 장 154kV 성산분기 송전선로 입지반대에 관한 설문조사

제 1 절 조사설계

본 연구는 154kV 성산분기 송전선로 입지를 둘러 싸고 사업시행자인 한전측과 지역주민들의 상반된 주장에서 비롯된 입지반대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크게 3개의 대항목을 설정하여 의식조사를 하였다.

첫째 항목은 한전의 전력서비스 만족도는 어떠한가? 에 대한 항목이다. 이는 한전의 전력공급 서비스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이 평소 느끼는 만족도가 송전선로 입지반대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기 위한 것이다.

둘째 항목은 154kV 성산분기 송전선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이다. 이는 지역주민이 과연 성산분기 송전선로에 대하여 필요성 자체를 인정하는가를 조사함으로써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알기 위한 것이다.

셋째 항목은 154kV 성산분기 송전선로 건설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견해이다. 이는 지역주민들이 성산분기 송전선로 사업에 대하여 느끼는 진정한 불만은 어떠한 것이며, 어떠한 요인들로 인해 송전선로의 입지를 반대하는 가를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제 2 절 설문지 구성

설문지는 154kV 성산분기 송전선로사업 추진상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지역주민의 전력공급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154kV 성산분기 송전선로 사업에 대한 필요성 인식도, 154kV 성산분기 송전선로 건설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견해 등 크게 3가지 내용을 몇 가지 하위요소로 구분하여 설문을 구성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주민이 한전측의 전력공급서비스에 대해 느끼는 만족도

- ① 한국전력에 대한 지역주민의 호감 정도
- ② 대고객서비스 만족수준
- ③ 한전에 대한 민원성 전화 또는 방문 경험
- ④ 민원성 전화 또는 방문 빈도
- ⑤ 민원사항에 해결에 대한 만족 정도

둘째, 154kV 성산분기 송전선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 ① 성산분기 송전선로에 대한 인지도
- ② 성산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접한 매체

- ③ 성산분기 송전선로사업과 응답자의 소유토지와 관련정도
- ④ 성산분기 송전선로가 응답자 소유토지 경과시 대응자세
- ⑤ 성산분기 송전선로 필요성에 대한 반응
- ⑥ 성산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한 주민 찬·반 여부
- ⑦ 성산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반대하는 이유

셋째, 154kV 송전선로 건설과정에서의 문제점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6가지 항목을 구성하였다.

- (1) 송전선로 용지취득에 따른 손실보상에 대한 만족도
 - ① 현재의 손실보상제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견해
 - ②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합리적인 보상수준
 - ③ 공공사업추진시 손실보상금액의 실제 거래가 근접 정도
 - ④ 성산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따른 부의 외부효과 여부
- (2) 사업시행자와 지역주민간의 의사소통 정도
 - ① 사업시행자측과 지역주민간 대화의 원활 정도
 - ② 대화 및 협상을 가로 막는 장애요인에 대한 견해
 - ③ 사업시행자측과 지역주민간의 원활한 의사소통방안
- (3) 송전선로 사업의 정보공개 수준
 - ①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한 한국전력의 정보공개 정도
 - ② 공공사업 정보의 공개필요성 이유
 - ③ 송전선로 사업정보 공개의 적절한 시기
 - ④ 사업정보 공개가 입지반대 여론 감소에 대한 기여 정도
- (4) 송전선로 사업의 주민참여도
 - ① 송전선로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주민참여 수준 만족도
 - ② 주민참여 수준의 불만족 원인
 - ③ 바람직한 주민참여 방안에 대한 견해
- (5) 환경(경관)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인식
 - ① 환경(경관)영향평가제도의 사전적 예방기능 수행정도
 - ② 환경(경관)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
 - ③ 환경(경관)영향평가가 환경파괴의 합리적 수단이라는 데에 대한 견해
 - ④ 환경영향평가상의 환경복구관련 약속이행 정도
- (6) 송전선로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

- ① 송전선로의 전자파 유해성에 대한 견해
- ② 전자파의 유해성을 접한 매체

제 3 절 자료의 수집

본 연구를 위한 자료수집은 1999년 9월 9일에서 9월 22일 까지 14일간의 기간을 두고 실시되었으며 설문지 서베이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설문지는 총 847부가 배부되어 847부 전체가 회수되었다. 연구 모집단은 154kV 성산분기 송전선로와 철탑이 들어서는 지역인 마을 중 구좌읍 송당리, 하도리, 성산읍 수산 2리 등 3개 마을의 총인구 4,610명이다. 이들 중 구좌읍 송당리 150명, 하도리 437명, 성산읍 수산 2리 260명을 표본으로 하였다.

이렇듯 철탑 및 송전선로 경과지의 인근 마을주민들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이들이 154kV 성산분기 송전선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며 송전선로 사업 추진 현장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한 체감도가 그 어느 집단보다 크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님비현상의 합리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도출하는데 있어서 비교적 주민반대 여론이 강한 구좌읍 송당리와 지역주민들의 협조로 대체적으로 원만히 용지교섭이 이루어진 구좌읍 하도리 거주자, 남제주군 성산읍 수산 2리 거주자들을 가장 좋은 대상이라고 판단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음을 밝힌다.

보다 많은 마을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나 자료분석 시일의 촉박성으로 인하여 그러하지 못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PC+ 프로그램을 활용했으며, 인구 통계학적 특성과 각 설문항목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빈도수(frequency)측정과 교차분석(cross table)을 실시했다.

제 4 절 설문지 분석

설문지 분석은 분석에 활용된 847부의 설문지를 통계처리하여 먼저 성별,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거주지, 거주기간 및 직업별로 응답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분석하고 한전의 전력공급서비스 만족도, 154kv 송전선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송전선로 용지취득에 따른 손실보상에 대한 만족도, 사업시행자와 지역주민간의 의사소통 정도, 송전선로 사업의 정보공개 수준도, 송전선로 사업의 주민참여도,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인식, 혐오시설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차례로 분석하였다.

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4-1>과 같이 나타났는데 이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응답자의 성별 분포를 남성이 494명으로 58.3%, 여성이 353명으로 41.7%를 나타내 남성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연령별로는 50세 이상이 309명으로 36.5%를 차지해 제일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40세~49세가 204명으로 24.1%, 20세~29세 148명으로 17.5%, 30세~40세가 131명으로 15.5%, 20세이상이 55명으로 6.5%의 순이었다.

교육수준별로는 고졸이 203명으로 24.0%로 전체 응답자 중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으며, 다음으로는 국졸이 189명으로 22.3%, 중졸이 172명으로 20.3%, 무학이 157명으로 18.5%, 대졸이 123명으로 14.5%, 대학원이상이 3명으로 0.4%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별로는 월 급여수준을 기준으로 100만원 미만인 383명으로 45.2%를 차지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였고 100만원~149만원이 264명으로 31.2%, 150만원~199만원이 95명으로 11.2%, 무소득자가 81명으로 9.6%, 250만원 이상이 17명으로 2.0%, 200만원~249만원이 7명으로 0.8%이었다. 응답자의 소득수준은 150만원 미만이 전체응답자중 76.4%를 차지하여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다.

거주지별로는 하도리가 437명으로 51.6%를 차지해 가장 비율이 높고 수산리는 260명으로 30.7%, 송당리는 150명으로 17.7%로 나타났다.

거주기간별로는 20년 이상이 494명으로 58.3%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15년~19년이 238명으로 28.1%, 10년~14년이 57명으로 6.7%, 5년 이상 9년이 36명으로 4.3%, 5년 미만 거주자는 불과 22명으로 2.6%밖에 되지 않았다. 이같이 전체 응답자 중 20년 이상 거주자가 58.3%를 차지하고 있어 비교적 장기거주자가 많았다.

직업별로는 농업이 560명으로 66.1%를 차지해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으며, 다음으로는 자영업이 56명으로 6.6%, 회사원이 33명으로 3.9%, 공무원이 9명으로 1.1%, 축산업이 3명으로 0.4%, 관광업이 1명으로 0.1%, 기타(학생, 주부, 가사 등)가 185명으로 21.8%로 나타나 설문대상 지역주민들 3분의 2가 농업에 생계의 터전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분포표

항 목		빈도수	백분율(%)
직 업	농 업	560	66.1
	축 산 업	3	0.4
	자 영 업	56	6.6
	회 사 원	33	3.9
	공 무 원	9	1.1
	관 광 업	1	0.1
	기 타(학생, 주부 등)	185	21.8
	합 계	847	100

<표 계속>

	항 목	빈도수	백분율(%)
성 별	남	494	58.3
	여	353	41.7
	합 계	847	100
연 령	20세미만	55	6.5
	20세 ~ 29세	148	17.5
	30세 ~ 39세	131	15.5
	40세 ~ 49세	204	24.0
	50세이상	309	36.5
	합 계	847	100
교육수준	무 학	157	18.5
	국 졸	189	22.3
	중 졸	172	20.3
	고 졸	203	24.0
	대 졸 (전문대포함)	123	14.5
	대학원이상	3	0.4
	합 계	847	100
소득수준	소 득 없 음	81	9.6
	100만원미만	383	45.2
	100만원 ~ 149만원	264	31.2
	150만원 ~ 199만원	95	11.2
	200만원 ~ 249만원	7	0.8
	250만원이상	17	2.0
	합 계	847	100
거 주 지	구좌읍 하도리	437	51.6
	성산읍 수산 2리	260	30.7
	구좌읍 송당리	150	17.7
	합 계	847	100
거주기간	5년 미만	22	2.6
	5년 ~ 9년	36	4.3
	10년 ~ 14년	57	6.7
	15년 ~ 19년	238	28.1
	20년 이상	494	58.3
	합 계	847	100

2. 한국전력의 전력서비스 만족도 분석결과

1) 한국전력에 대한 이미지 호감도

한국전력에 대하여 평소 가지고 있는 이미지 호감도에 대한 주민의 반응은 대체로 부정적으로 나타났다<표 4-2> 참조.

먼저 「한국전력에 대한 이미지 호감도는 어느 정도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 847명중 「보통이다」는 448명으로 52.9%, 「좋지 않다」라는 응답자는 179명인 21.1%, 「매우 좋지 않다」는 63명인 7.4%로 전체적으로 보면 부정적인 이미지가 「대체로 좋다」 32명(17.3%), 「매우 좋다」 10명(5.4%)등 긍정

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고 답한 사람들을 합친 것 보다 10%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 한국전력에 대한 이미지 호감도

이미지호감도		평소 한국전력에 대한 이미지 호감도 어느 정도 십니까 ?
주민의 반응	매우 좋다	2.2%(19명)
	대체로 좋다	16.3%(138명)
	보통	52.9%(448명)
	좋지 않다	21.1%(179명)
	매우 좋지 않다	7.4%(63명)
계		100%(847명)

학력이 높을 수록 한전에 대한 이미지는 부정적이었는데, 이러한 학력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01$). 즉, 「매우 좋지 않다」는 응답자 63명중 대학원 1명(33.3%), 대졸 21명(17.1%), 고졸 13명(6.4%), 중졸 11명(6.4%), 무학 8명(5.1%), 국졸 9명(4.8%)의 순이었다.

연령은 중년층에서 한전에 대한 이미지 호감도가 높게 나타난 반면에, 연령이 낮을 수록 호감도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p < 0.001$). 즉, 「좋다」라는 응답자 157명 중 40세~49세가 55명(27%), 30세~39세가 27명(20.6%), 20세미만이 11명(20%), 20세~29세가 26명(17.6%), 50세이상인 38명(12.3%)의 분포를 나타냈고, 「좋지 않다」라는 응답자 242명 중 20세미만이 18명(32.8%), 30세~39세가 40명(30.5%), 20세~29세가 45명(30.4%), 50세이상인 90명(29.1%), 40세~49세가 49명(24.0%)로 나타나 위의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거주기간별로는 대체로 거주기간이 짧을 수록 한전에 대한 이미지 호감도는 낮게 나타났다($p < 0.001$). 즉, 「좋지 않다」라는 응답자 242명 중 5년~9년이 11명(30.6%), 10년~14년이 17명(29.8%), 15년~19년이 70명(29.4%), 20년이상인 140명(28.4%), 5년 미만이 4명(18.2%)의 분포를 보였다.

거주별로는 특이하게도 구좌읍 하도리와 성산읍 수산 2리지역에서 한전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다」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반면에 「좋다」라는 응답은 송당리에서 높게 나타났다($p < 0.001$). 즉, 「좋다」라는 응답자 157명 중 송당리가 29명(19.4%), 하도리가 85명(19.4%), 수산 2리가 43명(16.6%)로 나타났고 「좋지 않다」라는 응답자 242명 중 하도리가 142명(32.5%), 수산 2리가 75명(28.8%), 송당리가 25명(16.7%)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농업과 축산업에 종사하는 지역주민들의 한전에 대한 호감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고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2$). 즉, 부정적인 답변을 한 응답주민 242명 중 농업에 종사하는 주민이 162명(28.9%), 축산업은 3명(100%)로 나타났다<부록편 표 4-3> 참조.

2) 한전의 대고객서비스 만족도

한전의 대고객서비스 만족도는 전체 응답자 846명 중 「매우 만족」은 11명(1.3%), 「대체로 만족」은 205명(24.2%)로 나타났고 「대체로 불만족」은 188명(22.2%), 「매우 불만족」은 63명(7.4%)로 나타나 「만족한다」라는 응답보다는 「불만족한다」는 비율이 4.1% 높게 나타났다<표 4-4> 참조.

<표 4-4> 한국전력의 대고객서비스 만족도

대고객서비스 만족도		평소 한국전력의 대고객서비스 만족도는 어느 정도십니까 ?
주민의 반응	매우 만족	1.3%(11명)
	대체로 만족	24.2%(205명)
	보통	44.8%(379명)
	대체로 불만족	22.2%(188명)
	매우 불만족	7.4%(63명)
계		100%(846명)

연령이 높을 수록 대체로 대고객 서비스에 불만족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p < 0.01$). 즉, 「불만족하다」라는 응답자 188명중 50세 이상이 75명(24.5%), 40세~49세가 50명(24.4%), 20세미만이 12명(21.8%), 30세~39세가 24명(18.3%), 20세~29세가 27명(18.2%)의 순이었다.

또한, 소득이 높으면 높을수록 대체로 서비스수준에 강한 불만을 보였다($p < 0.01$). 「불만족」이라는 응답을 한 사람 188명중 150만원~199만원이 24명(25.3%), 250만원 이상이 4명(23.5%), 100만원~149만원이 62명(23.5%), 100만원 미만이 81명(21.2%), 무소득이 17명(21.0%)의 순이었다.

거주지역은 하도리 지역에서 「불만족」 또는 「매우 불만족」의 응답자비율이 251명 중 146명(32.9%)로 나타나 수산 2리의 75명(28.8%), 송당리의 30명(20.1%)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직업별로는 농업, 축산업, 공무원이 한전의 대고객 서비스에 대해 불만족하다는 응답을 하였는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즉 불만족하다는 응답자 251명 중 농업 종사자는 31.5%(176명), 축산업 종사자는 33.3%(1명), 공무원이 22.2%(2명)로 나타났다<부록편 표 4-5> 참조.

3) 한전에 대한 민원성 전화 또는 방문의 경험

지역주민들의 한전에 대한 민원제기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최근 1년 사이에 한전에 민원성 전화나 방문을 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라는 질문을 한 결과 전체 842명의 응답자중 377명인 44.8%가 최근 1년 사이에 한전에 전화 또는 방문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6> 참조.

<표 4-6> 한전에 대한 민원성 전화 또는 방문 경험

민원성 전화 또는 방문경험		최근 1년 사이에 한전에 민원성 전화 또는 방문을 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주민의 반응	있 다	44.8%(377명)
	없 다	55.2%(465명)
계		100%(842명)

4) 한전에 민원성 전화나 방문의 빈도수

민원성 전화나 방문의 빈도수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 383명중 2~3회에 해당하는 주민이 161명인 42%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1회가 150명인 39.2%, 4회~5회가 49명인 12.8%, 6회 이상도 23명인 6.0%로 나타났다<표 4-7> 참조.

<표 4-7> 한국전력에 민원성 전화 또는 방문빈도수

민원성 전화나 방문 빈도수		만일 민원성 전화나 방문의 경험이 있으시다면 몇 회입니까? (최근 1년간)
주민의 반응	1회	39.2%(150명)
	2회~3회	42.0%(161명)
	4회~5회	12.8%(49명)
	6회 이상	6.0%(23명)
계		100%(383명)

특이한 점은 연령이 적을 수록 민원성 전화 또는 방문을 한 횟수가 많아 이들이 주로 한국전력과 접촉도가 많은 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6회이상 민원전화를 하거나 방문한 23명중 20세미만이 6명(23.1%), 20세~29세가 6명(9.7%), 30세~39세가 4명(7.8%), 40세~49세가 3명(3.3%), 50세 이상이 4명(2.6%)였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0.001).

그리고 민원성 전화 또는 방문 빈도에서 4회상 방문한 응답자 72명 중 축산업 종사자가 2명(100%), 자영업 종사자가 7명(35.0%), 회사원이 4명(30.8%)로 나타나 이들 계층이 한전과 접촉빈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부록편 표 4-8> 참조.

5) 민원사항에 해결에 대한 만족도

「민원전화 및 방문후 불만사항에 대한 문제 해결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라는 질문에 전체응답자 381명 중 불만족이 107명인 28.1%, 매우 불만족이 16명인 4.2%로 나타나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응답자가 123명인 32.3%로서 만족을 느끼는 응답자인 111명(29.1%)보다 3.2% 많게 나타났다<표 4-9> 참조.

한편 직업별로는 공무원, 자영업, 회사원 순으로 불만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즉, 「불만족」이라는 응답자 107명 중에서 공무원은 3명(50%), 자영업 종사자는 7명(35.0%), 회사원이 4명(30.8%)의 순이었다<부록편 표 4-10> 참조.

<표 4-9> 민원사항 해결에 대한 만족도

민원사항 해결만족도		민원전화 및 방문 후 민원사항에 대한 문제 해결만족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주민의 반응	매우 만족	4.2%(16명)
	대체로 만족	24.9%(95명)
	보통	38.6%(147명)
	대체로 불만족	28.1%(107명)
	매우 불만족	4.2%(16명)
계		100%(381명)

이상에서 한전의 전력공급서비스 만족도에 대한 주민들의 응답을 분석한 결과를 종합하면 한전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게 나타났고 대고객서비스 만족도면에서 불만족이, 그리고 고객민원사항 해결만족도면에서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후술하는 송전선로 사업에 대한 찬·반대에 대한 응답에서 보듯이 전체 응답자 847명 중 반대가 275명으로 32.5%의 결과로 이어지는데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공공기관이 고객들에게 신뢰감과 서비스에 대한 만족을 주지 못하면 그 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에 불신감을 유발함은 물론이거니와 그로 인해 사업시행자측과 주민간의 자연스러운 대화와 협상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게 된다. 특히 연령과 소득이 높은 계층일수록 전력공급서비스 만족도에 불만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들 계층이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지역이나 바로 인접지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가장 많은 계층임을 감안할 때, 이들 계층으로 하여금 비선호시설 입지에 있어서 강한 반발을 일으키게 할 수 있다.

3. 154kV 송전선로 사업의 필요성 인식도 분석결과

1) 성산분기 송전선로사업에 대한 인지도

한전에서 추진중인 154kV 성산분기 송전선로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주민은 전체응답자 847명 중 583명인 68.8%였으며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 264명인 31.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사업에 대한 홍보가 미흡함을 반증하고 있다<표 4-11> 참조.

<표 4-11> 성산분기 송전선로 인지도

성산분기 송전선로 인지도		한전에서 추진중인 154kV 성산분기 송전선로에 대하여 들어보셨습니까?
주민의 반응	있 다	68.8%(583명)
	없 다	31.2%(264명)
계		100%(847명)

한편 성별로 보면 남성의 77.1%가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에, 여성은

57.2%가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01$). 또한 대체로 연령이 높을 수록,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이 많을 수록 지역에 거주기간이 장기일 수록 이 사업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러한 변수들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p < 0.001$, $p < 0.01$, $p < 0.001$). 즉 연령별로 보면 「성산분기 송전선로 사업에 대하여 들어본 적이 있다」라는 응답자 583명 중 50세 이상(71.2%), 30세~39세(71.0%), 40세~49세(70.1%), 20세~29세(69.6%), 20세 미만(43.6%)의 순이었고, 학력별로는 대학원이상(100%), 대졸(83.7%), 중졸(72.7%), 고졸(68.5%), 국졸(64.6%), 무학(58.0%)의 순으로 들어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을 하였다.

또한 소득별로는 200만원~249만원(100%), 250만원이상(82.4%), 150만원~199만원(82.1%), 100만원~149만원(70.8%), 100만원 미만(65.5%) 무소득(56.8%)의 순으로 나타났고, 거주기간별로는 5년미만(86.4%), 20년이상(73.5%), 15년~19년(62.2%), 10년~14년(61.4%), 5년~9년(50.0%)의 순으로 송전선로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주로 고연령, 고소득, 고학력, 장기거주자일 수록 성산분기 송전선로 사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부록편 표 4-12> 참조.

2) 성산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접한 매체

전체 응답자 597명중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하여 들었다는 응답자가 282명인 47.2%, TV를 통하여 들었다는 응답자가 176명인 29.5%, 신문·잡지를 통하여 본 사람은 136명인 22.8%, 라디오는 3명인 0.5%에 불과 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의 반 가까이가 주로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를 통해 정보를 얻은 것으로 나타나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홍보에 있어 좀 더 다각화를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표 4-13> 참조.

<표 4-13> 성산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접한 매체

사업정보 인지매체		154kV송전선로에 대하여 들어보신적이 있으시다면 주로 어느 매체를 통해서 입니까 ?
주민의 반응	신문·잡지	22.8%(136명)
	T V 방송	29.5%(176명)
	라 디 오	0.5%(3명)
	기타(공청회,설명회)	47.2%(282명)
계		100%(597명)

또한 성별로는 「TV 방송」이라고 응답한 176명 중 남성이 127명(33.0%), 여성이 49명으로 23.1%로 나타났고, 「신문·잡지」라고 응답한 136명 중 여성이 51명으로 24.1%, 남성이 85명으로 22.1%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남성은 TV방송을,

여성은 신문·잡지에서 사업정보를 얻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그리고 남녀 모두 주로 공청회나 주민설명회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학력수준별로는 학력이 높을 수록 TV방송에서 사업정보를 얻은 것으로 응답했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01$). 즉, 「TV 방송을 통하여 송전선로 사업에 대하여 들었다」는 응답자 176명 중 대학원이상이 3명(100%), 대졸이 38명(36.5%), 고졸이 49명(33.3%), 중졸이 33명(26.2%), 무학(25.0%), 국졸(24.0%)의 순이었다.

소득수준별로는 「신문·잡지를 통하여 송전선로 사업에 대하여 들었다」라는 응답자 136명 중 200만원~249만원이 3명(42.9%), 무소득이 15명(27.8%), 150만원~199만원이 19명(24.7%), 100만원~149만원이 43명(23.0%), 100만원 미만인 56명(21.8%)의 순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또한 거주지별로는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접하였다는 응답자 282명 중 수산 2리와 송당리 주민들이 각각 107명으로 57.5%, 70명으로 56.9%로 나타나 하도리지역의 105명(36.5%)에 비하여 그 비율이 훨씬 높았다<부록편 표 4-14> 참조.

3) 성산분기 송전선로와 응답자의 소유 토지와의 관련정도

전체 응답자 741명 중 478명인 64.5%가 송전선로 부지와 「전혀 관계가 없다」는 응답을 하였고, 다음으로는 「선로 주변지역이다」는 155명으로 20.9%, 「송전선로와 바로 인접해 있다」는 89명으로 12.0%, 「직접 선로가 경과하고 있다」는 응답은 19명인 2.6%로 나타났다<표 4-15> 참조.

<표 4-15> 성산분기 송전선로와 응답자소유 토지와의 관련성

응답자 소유토지와 관련성		154kV 성산분기 송전선로와 귀하의 토지는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주민의 반응	선로가 경과	2.6%(19명)
	선로에 인접	12.0%(89명)
	선로 주변지역	20.9%(155명)
	무관	64.5%(478명)
계		100%(741명)

한편 성별로는 선로가 경과하고 있거나 선로가 바로 인접하고 있다고 응답한 108명 중 남성이 76명(17.4%), 여성이 32명(10.5%)로 나타나 송전선로와 관련된 토지는 주로 남성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p < 0.05$).

또한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 수록 대체로 응답자들의 토지가 송전선로와 관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p < 0.001$). 즉, 「직접 선로가 경과하고 있다」고 응답한 19명 중 40세~49세가 7명(3.8%), 30세~39세가 4명(3.4%), 50세이상이 7명(2.7%),

20세~29세(0.7%), 20세미만(0%)의 순으로 나타났다.

소득별로도 소득이 많을수록 대체로 송전선로와 관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반대로 소득이 적을 수록 대체로 「송전선로가 무관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p<0.001$). 즉, 「직접 선로가 경과하고 있다」고 응답한 19명 중 100만원~149만원이 11명(4.9%), 150만원~199만원이 2명(2.5%), 100만원 미만인 5명(1.5%), 무소득이 1명(1.3%)의 순으로 분포를 보였다. 이는 이들이 경제력을 바탕으로 이 지역에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전혀 무관하다」고 응답한 478명 중 무소득이 67명(87.0%), 250만원 이상이 11명(64.7%), 100만원 미만이 228명(67.9%), 150만원~199만원이 47명(58.0%), 100만원~149만원이 123명(55.2%), 200만원~249만원 2명(28.6%)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선로가 경과한다」 또는 「선로와 바로 인접하고 있다」 이라고 응답한 108명중 축산업이 2명(100%), 농업이 82명(17%), 자영업이 5명(12.8%)로 나타났다($p<0.001$)<부록편 표 4-16> 참조.

4) 송전선로가 응답자 소유토지 경과시의 대응자세

「송전선로가 귀하의 토지를 경과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846명중 50.5%인 427명이 「어떠한 경우든 반대한다」 라고 응답하였고 「보상이 충분하면 응하겠다」 는 응답은 47.3%인 400명의 분포를 나타내었다<표 4-17> 참조.



<표 4-17> 송전선로가 응답자 소유토지 경과시의 대응자세

응답자 대응자세		송전선로가 귀하의 토지를 경과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민의 반응	충분한 보상시 응함	47.3%(400명)
	무조건 반대	50.5%(427명)
	사업자 보상안에 따름	1.2%(10명)
	공익사업이니 보상없어도 따름	1.1%(9명)
계		100%(846명)

한편 성별로는 「보상이 충분하다면 응한다」 고 응답한 400명 중 여성이 191명으로 54.1%, 남성이 209명으로 42.4%로 나타났고, 「어떠한 경우든 반대한다」 는 응답은 남성이 272명으로 55.2% 여성은 155명으로 43.9%를 나타냈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연령별로는 「보상이 충분하면 응하겠다」 는 응답자 400명중 20세 미만이 38명(69.1%), 20세~29세가 89명(60.1%), 50세 이상이 133명(43.2%), 40세~49세가 86명(42.2%), 30세~39세가 54명(41.2%)로 나타나 주로 연령이 낮은 20세 미만과 20대 계층에서 보상만 충분히 되면 응하겠다는 답변이 많았다. 반면에 「어떠한 경우든 반대한다」 는 응답은 30세 이상의 주민계층에서 많이 나타났다. 즉 응답자

427명 중 30세~39세가 76명(58%), 40세~49세가 115명(56.4%), 50세 이상이 165명(53.6%), 20세~29세가 54명(36.5%), 20세 미만이 17명(30.9%)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령별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01$).

소득별로는 송전선로가 응답자의 소유토지 경과시 「보상만 충분히 주어진다면 용지매수에 응하겠다」는 답변응답자 400명 중 무소득자가 48명(59.3%), 100만원~149만원 131명(49.6%), 100만원 미만이 173명(45.3%), 150만원~199만원이 43명(45.3%), 200만원~245만원이 2명(28.6%), 250만원 이상이 3명(17.6%)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즉, 연령이 낮고 소득이 낮은 계층일 수록 경제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용지매수에 경제적인 보상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이 많을 수록 대체로 입지반대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떠한 경우든 반대한다」라는 응답자 427명 중 250만원이상이 14명(82.4%), 150만원~199만원 51명(53.7%), 100만원미만이 201명(52.6%), 100만원~149만원 127명(48.1%), 200만원~249만원이 3명(42.9%), 무소득이 31명(38.3%)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거주지별로는 「어떠한 경우든 반대한다」는 응답자 427명 중 송당리가 107명(71.3%), 하도리가 190명(43.6%), 수산 2리가 130명(50.0%)를 나타내어 송당리 주민들의 강한 반대성향을 단적으로 입증하고 있다($p < 0.001$). 반면에 「보상이 충분하면 응하겠다」는 응답은 하도리가 236명(38.0%), 수산 2리가 124명(47.7%), 송당리 40명(26.7%)로 나타나 비교적 하도리와 수산 2리의 입지반대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실제의 용지매수협의 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직업별로는 회사원, 자영업이 「보상이 충분하면 응한다」는 비율이 높았고 「어떠한 경우든 반대한다」는 응답은 축산업 종사자, 농업 종사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즉, 「보상만 충분하면 응하겠다」는 응답자 400명 중 회사원이 19명(57.6%), 자영업 종사자가 31명(55.4%)으로 높게 나타났고, 「어떠한 경우든 반대한다」 응답은 축산업 종사자 2명(66.7%), 농업 종사자가 298명(53.3%)로 나타났다($p < 0.001$)<부록편 표 4-18> 참조.

5) 송전선로 필요성에 대한 반응

전체 응답자 845명 중 공공시설로서 송전선로가 「꼭 필요하다」고 응답한 주민은 301명인 35.6%이고 「필요하기는 하지만 내 소유의 토지에는 안된다」는 응답은 277명인 32.8%였으며 「내 소유 및 타인 소유 어느 곳에도 절대 안된다」는 응답은 241명인 28.5%, 「전혀 필요없다」는 응답은 불과 3.1%에 그쳤다<표 4-19> 참조.

한편 성별로는 「필요성은 인정하나 내 소유 토지에는 안된다」고 응답한 277명 중 남성이 173명(35.0%)로 가장 많았고 여성은 104명(29.6%)로서 남성이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연령별로는 「필요하기는 하지만 내 소유의 토지에는 안된다」는 응답이 30세

미만보다 30세 이상에서 많이 나타났다. 즉, 「송전선로가 필요하기는 하나 내 소유의 토지에는 안된다」는 응답자 277명 중 50세 이상이 119명(38.6%), 30세~39세가 47명(35.9%), 40세~49세가 70명(34.3%), 20세미만 13명(24.1%), 20세~29세 28명(18.9%)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이러한 결과는 님비성향이 30세 이상 계층에서 매우 강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거주지별로는 「필요성은 인정하나 내 소유의 토지에는 안된다」는 응답자 277명 중 송당리가 80명(53.7%)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 비교적 주민간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진 하도리와 수산 2리는 각각 110명(25.2%), 87명(33.6%)로 나타나 큰 격차를 보였다, 반면에 하도리와 수산 2리는 「꼭 필요하다」는 응답이 각각 166명(38.0%)와 101명(39.0%)로 나타나 송당리 34명(22.8%)보다 높았다.

이러한 성별, 연령별, 거주지별로 송전선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0.001, p<0.001, p<0.001)<부록 편 표 4-20> 참조.

<표 4-19> 성산분기 송전선로 필요성 인식

송전선로 필요성 인식		귀하께서는 공공시설로서 송전선로를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주민의 반응	꼭 필요하다	35.6%(301명)
	필요하기는 하지만 내소유의 토지에는 안된다	32.8%(277명)
	필요하기는 하지만 내소유 및 타인소유 토지에도 안된다	28.5%(241명)
	필요없는 시설이다.	3.1%(26명)
계		100%(845명)

6) 154kV성산분기 송전선로 사업에 대한 주민 찬·반대 여부

「성산분기 송전선로에 대한 귀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847명 중 반대가 275명(32.5%), 전면 지중화 조건부 찬성이 190명(22.4%) 그 다음은 마을주변지역 우회조건부찬성이 162명(19.1%), 오름지역 지중화조건부 찬성이 96명(11.3%), 무조건 찬성이 124명(14.6%)로 나타났다<표 4-21> 참조.

<표 4-21> 성산분기 송전선로사업 찬·반 여부

송전선로 찬·반 여부		송전선로 사업에 대해 귀하는 찬성, 반대 어느 쪽 입니까?
주민의 반응	찬 성	14.6%(124명)
	전면지중화조건부 찬성	22.4%(190명)
	오름지역 지중화조건 부 찬성	11.3%(96명)
	마을주변지역우회조건부 찬성	19.1%(162명)
	반 대	32.5%(275명)
계		100%(847명)

여기에서 주목할 점은 앞의 문항에서는 송전선로 건설이 「꼭 필요하다」고 응

답한 주민들이 가장 많았던 반면에 이 문항에서는 지중화 또는 마을 주변지역을 우회할 경우는 찬성한다는 조건부 찬성이 총 52.8%나 되어 무조건 반대나 무조건 찬성보다 그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또한 성별로는 여성이 103명인 29.2%, 남성이 172명인 34.8%로 나타나 남성이 여성보다 반대가 많았다($p < 0.01$).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을 수록 대체로 주민들의 반대가 심하였다. ($p < 0.05$) 즉 「반대한다」는 응답자 275명 중 40세~49세가 87명(42.6%), 30세~39세가 46명(35.1%), 50세 이상이 100명(32.4%), 20세 미만이 14명(25.5%), 20세~29세가 28명(18.9%)의 순으로 나타났다.

거주지별로는 송당리 주민들이 반대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반대한다」는 응답자 275명 중 송당리가 51명(34.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수산 2리가 87명(33.5%), 하도리가 137명(31.4%)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부록편 4-22> 참조.

7) 성산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반대 이유

지가하락 및 손실보상 등 경제적인 이유로 반대한다는 응답이 120명 42.6%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는 82명 29.1%가 전자파에 대한 우려를 꼽았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오름환경 파괴를 이유로 든 주민은 불과 47명 16.7%로 나타나 주민들은 주로 자연환경적인 측면보다는 경제적인 보상과 자신들의 건강적인 측면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표 4-23> 참조.

<표 4-23> 성산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반대이유

송전선로건설 반대이유		성산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반대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십니까 ?
주민의 반응	오름환경 파괴	16.7%(47명)
	손실보상제도에 대한 불신	11.0%(31명)
	주민참여 미흡	0.7%(2명)
	전자파위해성에 대한우려	29.1%(82명)
	경제적인 이유로(지가하락, 손실보상)	42.6%(120명)
계		100%(847명)

한편 연령별로는 대체로 연령이 높을 수록 전자파에 대한 우려가 크게 나타났다. 즉 반대 이유로 「전자파의 위해성에 대한 우려」를 든 응답자 중 20세~29세가 40.0%(12명), 50세 이상이 30.7%(31명), 40세~49세가 27.9%(24명), 30세~39세가 26.5%(13명), 20세 미만이 12.5%(2명)의 순이었다.

또한 소득별로는 대체로 소득이 많을수록 전자파에 대한 강한 우려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50만원 이상이 50%(3명), 100만원~149만원이 32.3%(30명), 150만원~199만원이 31.0%(9명), 100만원 미만이 29.4%(37명), 무소득이 12.0%(3명)의 순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서 고령인 사람일수록 자신의 육체적 건강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드러났다($p < 0.001$, $p < 0.001$) <부록편 표 4 -24> 참조.

응답자 847명 중 「성산분기 송전선로에 대하여 들어보지 못했다」는 주민이 264명(31.2%)나 되는 것은 사업시행자인 한전측의 홍보노력이 다소 미진하였다는 것을 나타낸다. 성산분기 송전선로사업에 대한 인지도에서 고학력, 고소득, 고연령층, 장기거주자일 수록 높게 나타난 반면에 학력과 소득수준이 낮고 저연령층, 단기거주자일 수록 이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은 공공사업 홍보가 비교적 소외계층인 이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못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이어서 향후 그 개선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소득이 낮고 연령이 낮은 계층일 수록 손실보상만 충분히 이뤄지면 용지매수에 응하겠다는 응답을 하여 이들에게는 경제적 보상이 문제의 중요한 해결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 응답주민들이 송전선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35.6%가 「꼭 필요하다」는 반응을, 32.8%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내 소유 토지에는 안된다」는 응답을 하여 전체적으로 68.4%의 응답자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할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산분기 송전선로사업의 주민 찬·반 여부를 묻는 문항에 대해서는 32.5%의 주민이 무조건 반대라는 강경한 입장을 나타내어 이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근원적 문제는 지역주민들의 넘비현상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학력이 높을 수록, 소득의 높을 수록, 연령이 많을 수록 전자파의 위해성 때문에 반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식층이면서 연령이 높고 삶이 대체로 풍족하면 금전적인 보상 측면 못지 않게 자신들의 신체적인 건강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4. 154 kV 송전선로 건설과정에서의 문제점

가. 송전선로 용지취득에 따른 손실보상에 대한 만족도

1) 현재의 손실보상제도에 대한 견해

전체 응답자중 「다소 미흡하다」가 481명(56.8%), 「매우 미흡하다」가 313명(37.0%)인데 반해, 「적정하다」는 응답은 53명(6.3%)에 불과했다. 이로서 주민 대다수가 현재의 손실보상제도에 강한 불만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25> 참조.

한편 교육수준별로는 대체로 학력이 높을 수록 현재의 손실보상제도에 불만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p < 0.02$) 즉 「매우 미흡하다」는 응답자 중 대학원이상이 66.7%(2명), 중졸이 44.2%(76명), 대졸이 39.0%(48명), 고졸이 34.5%(70명), 국졸이 34.4%(65명), 무학이 33.1%(52명)의 순이었다 <부록편 표 4-26> 참조.

<표 4-25> 현재의 손실보상제도에 대한 견해

현 손실보상제도에 대한 견해		현재의 실물자산만을 보상의 대상으로 보는 재물 보상원칙에 의한 손실보상제도를 어떻게 보십니까?
주민의 반응	적절한 수준	6.3%(53명)
	다소 미흡	56.8%(481명)
	매우 미흡	37.0%(313명)
계		100%(847명)

2) 지역주민들의 바라는 합리적인 보상수준

전체 응답자중 71.9%가 「환경권 및 생활권침해에 대해서도 보상이 되어야 한다」는 응답을, 11.9%가 「지가하락분까지 보상해야 한다」고 하여 주민 대다수가 포괄적인 보상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표 4-27> 참조.

<표 4-27> 지역주민이 바라는 합리적인 보상수준

합리적인 보상수준		귀하께서 바라는 합리적인 보상수준은?
주민의 반응	현 제도가 합당	4.1%(35명)
	지가하락분까지 보상	11.9%(101명)
	환경권, 생활권 침해에 대한 보상도 되어야 한다	71.9%(609명)
	모르겠다	12.0%(102명)
계		100%(847명)

3) 공공사업추진시 손실보상금액의 실제거래가에 대한 근접 정도

실제가의 50%~60%선이 43.1%로 가장 많았고 30%~40%선이 30.7%라고 응답한 반면 90%~100%라는 응답은 2.5%에 불과하여 주민들은 지가 보상이 실제 토지가에 상당히 미달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나타냈다<표 4-28> 참조.

<표 4-28> 손실보상금액의 실제가 근접정도

실거래가 근접정도		손실보상금액(용지매수금액)은 시가에 어느 정도까지 근접한다고 보십니까?
주민의 반응	실제가의 30~40%	30.7%(260명)
	실제가의 50~60%	43.1%(365명)
	실제가의 70~80%	23.7%(201명)
	실제가의 90~100%	2.5%(21명)
계		100%(847명)

4) 성산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負의 외부효과 여부

공공시설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負의 외부효과가 주민들에게도 현저히 인식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송전선로 건설을 통한 편익은 타지역에 비해서 「별로 없다」는 응답이 전체응답자 846명 중 345명(40.8%)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그저 그렇다」가 245명(29.0%), 심지어 「전혀 없다」는 응답자도 209명(24.7%)나 되었다<표 4-29> 참조.

<표 4-29>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부의 외부효과 여부

부의 외부효과 여부		송전선로 입지로 인한 경제적,환경적 피해에 비해 그 시설로 얻는 편익은 시설이 입지하지 않은 타 지역에 비해서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의 반응	매우 크다	1.3%(11명)
	대체로 크다	4.3%(36명)
	그저 그렇다	29.0%(245명)
	별로 없다	40.8%(345명)
	전혀 없다	24.7%(209명)
계		100%(846명)

그 내용을 연령별로 보면 대체로 연령이 많을 수록 입지에 따른 편익은 없다는 응답이 많았는데 이는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01$).

즉 나이가 많을수록 입지에 따른 편익은 전혀 없다는 비판적인 입장을 띄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50세 이상이 32.4%(100명), 30세~39세가 24.4%(32명), 20세~29세가 20.9%(31명), 40세~49세가 19.2%(39명), 20세미만이 12.7%(7명)의 순이었다<부록편 표 4-30> 참조.

나. 당사자간 의사소통 문제에 대한 인식도

1) 사업시행자측과 지역주민간 대화(협상)의 원활 정도

대체적으로 양 당사자간에 「대화(협상)가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중 45.7%로 가장 많고, 「보통이다」는 26.5%,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25.9%로 72% 정도의 주민들은 사업시행자측과 주민간의 대화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표 4-31> 참조.

<표 4-31> 사업시행자측과 주민간 대화의 원활정도

의사소통 원활성		사업시행자측과 지역주민간의 대화의 원활성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주민의 반응	잘 이루어진 편	1.9%(16명)
	보통이다	26.5%(224명)
	대체로 안 이루어진 편	45.7%(387명)
	전혀 안 이루어진 편	25.9%(219명)
계		100%(846명)

또한 남성의 28.0%(138명)가 전혀 대화 및 협상이 안 이루어진다고 답한 반면 여성은 22.9%(81명)가 같은 응답을 하여 남성이 여성보다 대화와 협상이 원활하지 못함을 지적하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또한 연령별로는 연령이 많을 수록 대화와 협상노력의 미흡함을 꼽았다($p < 0.01$). 즉 「대화가 전혀 안 이루어진 편」이라고 응답한 주민 중 50세 이상이

29.9%(92명), 30세~39세가 27.5%(36명), 40세~49세가 24.5%(50명), 20세~29세가 23.0%(34명), 20세 미만인 12.7%(7명)의 순이었다. 그리고 소득별로도 소득이 많을수록 대화와 협상이 안 이루어진 점을 지적하였는데 200만원~249만원이 57.1%(4명), 150만원~199만원이 30.5%(29명), 100만원~149만원이 29.2%(77명), 100만원 미만이 25.7%(98명), 250만원 이상이 11.8%(2명), 무소득이 11.1%(9명)의 순이었다($p < 0.001$) <부록편 표 4-32> 참조.

2) 대화 및 협상을 가로막는 장애요인

전체 응답자의 44.4%(271명)가 사업시행자측의 대화 및 협상노력 부재를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지적했고 23.4%(143명)가 양 당사자간의 불신감을, 14.4%(88명)가 사업시행자측의 권위주의를 지적하였다 <표 4-33> 참조.

<표 4-33> 대화 및 협상을 가로막는 장애요인

대화 및 협상을 가로막는 장애요인		대화 및 협상을 가로 막는 장애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의 반응	권위주의	14.4%(88명)
	사업시행자의 협상노력부족	44.4%(271명)
	상호간의 불신감	23.4%(143명)
	모르겠다	17.7%(108명)
계		100%(846명)

그 내용을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사업시행자측의 대화 및 협상노력 부재를 더 많이 지적하였다. 즉 남성은 46.2%가, 여성은 41.8%가 그러한 응답을 하였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 < 0.02$). 그 외에 연령별, 교육수준, 소득별, 거주기간별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치를 얻었으나($p < 0.001$, $p < 0.001$, $p < 0.01$, $p < 0.05$) 일관성이 부족하였다 <부록편 표 4-34> 참조.

3) 사업시행자측과 지역주민간의 원활한 의사소통방안

양 당사자간의 대화통로를 확대하여야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다는 응답이 34.2%로 가장 많았고 29.6%의 주민들이 서로를 진정한 협상의 파트너로 인정하는 자세를 들었으며 사업시행자가 권위주의를 버려야 한다는 응답도 22.6%의 분포를 보였다 <표 4-35> 참조.

한편 교육수준이 낮을 수록 대화의 통로확대를 꾀았고 송당리는 서로를 진정한 파트너로 인정하는 자세를, 수산 2리는 대화통로의 확대를 가장 높게 지적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교육수준별, 거주지별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p < 0.05$, $p < 0.001$) <부록편 표 4-36> 참조.

<표 4-35> 사업시행자측과 지역주민간의 원활한 의사소통방안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방안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방안은?
주민의 반응	서로를 진정한 협상파트너로 인정하는 자세	29.6%(249명)
	사업시행자의 권위주의 타파	22.6%(190명)
	상호간의 편견을 버림	13.6%(114명)
	대화통로의 확대	34.2%(288명)
계		100%(846명)

다. 송전선로 사업에 대한 정보공개 정도

1) 송전선로 사업에 대한 한국전력의 정보공개 수준

한국전력의 송전선로에 대한 정보공개 노력도에 대한 평가에서 「매우 소극적」 또는 「다소 소극적」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 중 무려 71.8%나 되었다. 이는 「매우 적극적」 또는 「다소 적극적」이라고 응답한 1.5%에 비하여 엄청나게 높은 비율로서 한전의 송전선로사업에 관한 제반정보공개가 매우 미흡함을 드러내는 증거하고 할 수 있다<표 4-37> 참조.

<표 4-37> 한전의 성산분기 송전선로 사업정보 공개 정도

사업정보 공개 정도		성산분기 송전선로 사업에 대한 한국전력의 정보공개 정도는 어떠하다고 보십니까?
주민의 반응	매우 적극적	0.4%(3명)
	다소 적극적	1.1%(9명)
	보통	26.8%(227명)
	다소 소극적	48.4%(410명)
	매우 소극적	23.4%(198명)
계		100%(847명)

2) 공공사업 정보의 공개가 필요한 이유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라는 응답이 37.3%였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하여」는 30.2%, 주민과 사업시행자간의 신뢰관계 구축」은 27.3%로 나타난 반면 「공공사업의 홍보를 위하여」는 5.2%에 불과하였다<표 4-38> 참조.

이러한 조사결과는 주민들이 공공사업에 대한 정보공개는 단지 홍보를 위한 목적보다는 헌법상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과 함께 주민 참여와 행정기관과의 신뢰관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계학적 관점에 볼 때,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라는 응답을 많이 하였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01$)<부록편 표 4-39> 참조.

<표 4-38> 공공사업의 정보공개가 필요한 이유

사업정보공개 필요성		공공사업 정보의 공개가 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주민의 반응	국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37.3%(316명)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30.2%(256명)
	지역주민과 사업시행자간 신뢰 관계 구축을 위하여	27.3%(231명)
	공공사업의 홍보를 위하여	5.2%(44명)
계		100%(847명)

3) 송전선로 사업정보 공개의 적절한 시기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사업정보 공개가 이뤄져야 한다고 68.4%의 응답자가 밝혔고 다음으로는 경과지 검토단계부터가 17.0% 그 외 예비답사단계(8.1%), 본답사단계(2.1%), 현행대로(4.4)의 분포를 나타내어 지역주민들은 대다수가 사업계획 초기 단계서부터의 정보공개를 강력히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40> 참조.

<표 4-40> 사업정보 공개의 적절한 시기

사업정보 공개의 적절한 시기		송전선로 사업정보의 공개가 어느 시기부터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의 반응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68.4%(579명)
	경과지 검토단계부터	17.0%(144명)
	예비답사 단계부터	8.1%(69명)
	본답사 단계부터	2.1%(18명)
	현행대로	4.4%(37명)
계		100%(847명)

한편 연령이 30대인 계층에서 그리고 대체로 교육수준이 높을 수록, 소득이 많으면 많을 수록 사업계획 수립단계서부터의 정보공개를 원하는 것으로 드러났고 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다.($p < 0.001$, $p < 0.001$, $p < 0.001$) 즉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라고 응답한 주민들 중 30세~39세가 73.3%(96명), 20세 미만이 69.1%(38명), 20세~29세가 68.9%(102명), 50세 이상이 68.3%(211명), 40세~49세가 64.7%(132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수준별로는 대학원 이상이 100%(3명), 대졸이 76.4%(94명), 고졸이 70.0%(142명), 무학이 69.4%(109명), 중졸이 66.3%(114명) 국졸이 61.9%(117명)의 순으로 「사업계획단계에서부터」라고 응답하였고 소득별로는 200만원~249만원이 100%(7명), 150만원~199만원이 77.9%(74명), 100만원~149만원이 72.7%(192명), 100만원 미만이 66.6%(255명), 무소득이 53.1%(43명), 250만원 이상이 47.1%(8명)의 순으로 위와 같은 응답을 하였다<부록편 표 4-41> 참조.

4) 사업정보 공개가 입지반대 여론 감소에 대한 기여 정도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적시에 제공된다 해도 입지 반대 여론을 감소시키는데는 크게 기여를 하지 않는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 응답자 중 「별로 도움이 안된다」 또는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응답이 69.8%로 나타나 「매우 크게 도움이 된다」 또는 「대체로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30.3%보다 훨씬 비율이 높았다. 그러나 30%정도의 주민들이 정확하고 충분한 사업정보의 적시제공이 입지반대여론의 감소효과를 갖고 있다고 인식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표 4-42> 참조.

<표 4-42> 사업정보 공개가 입지반대 여론감소에 대한 기여 정도

적시·적절한 사업정보 공개의 역할		송전선로 사업정보가 지역주민들에게 적시·적절하게 제공된다면 입지반대 여론을 줄이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주민의 반응	매우 크게 도움	1.8%(15명)
	대체로 도움	28.5%(241명)
	별로 도움이 안됨	46.4%(393명)
	전혀 도움이 안됨	23.4%(198명)
계		100%(847명)

이 설문에 대해서는 대체로 연령이 많을 수록, 대체로 소득이 많을 수록 「전혀 도움이 안된다」는 완고한 입장을 나타냈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p<0.001, p<0.001). 즉 「전혀 도움이 안된다」 응답자 중 40세~49세가 29.4%(60명), 30세~39세가 26.0%(34명), 50세 이상이 24.9%(77명), 20세~29세가 14.9%(22명), 20세 미만이 9.1%(5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만원~249만원이 42.9%(3명), 150만원~199만원이 31.6%(30명), 100만원~149만원이 31.1%(82명), 100만원 미만이 19.3%(74명), 250만원 이상이 17.6%(3명), 무소득이 7.4%(6명)의 순으로 회의적인 응답이 많았다.

직업별로는 농업과 축산업 종사자, 공무원 계층에서 위와 같은 응답의 비율이 많았는데 이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부록편 표 4-43> 참조.

라. 송전선로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도

1) 송전선로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주민참여 수준의 만족도

「별로 만족치 못하다」 또는 「전혀 불만족하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 중 58.7%를 차지하여 대체적으로 지역주민들은 주민참여에 대하여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표 4-44> 참조.

또한 대체로 연령이 높고 소득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주민참여 만족도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0.001, p<0.001)<부록편 표 4-45> 참조.

<표 4-44>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주민참여 수준의 만족도

주민참여수준 만족도		성산분기 송전선로 사업추진에 있어 주민참여수준 만족도는?
주민의 반응	대체로 만족	2.4%(20명)
	그저 그렇다	39.0%(330명)
	별로 만족치 못함	36.1%(306명)
	전혀 불만족	22.6%(191명)
계		100%(847명)

2) 주민참여 수준에 대한 불만족 원인

전체 응답자의 35.5%가 주민참여 「시기의 부적절」을 지적하였다. 이는 앞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주민참여시기가 앞당겨져야 한다는 주민들의 요망이 반영된 결과로 보여진다. 그 다음으로는 34.7%가 「공람,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의 개최에 대한 홍보부족」을 지적하였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공청회 등이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개선할 수 있는 주된 주민참여 방법임을 감안할 때 주목할만한 점이다.

한편 「사업시행자측의 주민참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14.6%의 주민이 응답하였고, 「제공된 사업정보의 난해성」은 9.6%의 분포를 나타내었다<표 4-46> 참조.

<표 4-46> 주민참여 수준의 불만족 원인

주민참여수준 불만족원인		만약 주민참여 수준에 불만족 하신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의 반응	사업시행자측의 주민참여에 대한 부정적 인식	14.6%(73명)
	지역주민들의 무관심	5.6%(28명)
	제공된 사업정보의 난해성	9.6%(48명)
	공청회, 주민설명회등의 개최홍보 부족	34.7%(174명)
	주민참여시기의 부적절	35.5%(178명)
계		100%(501명)

소득별로는 대체로 소득이 높을 수록 주민참여에 대한 「시기의 부적절」을 지적하는 비중이 높았고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 < 0.001$) 즉 「시기의 부적절」을 지적한 응답자 중 200만원~249만원이 100%(1명), 150만원~199만원이 44.6%(33명), 100만원~149만원이 38.8%(66명), 100만원 미만인 32.9%(71명), 무소득이 18.2%(6명), 250만원 이상이 14.3%(1명)의 순으로 나타났다<부록편 표 4-47> 참조.

3) 바람직한 주민참여 방안

전체 응답자의 35.5%가 주민설명회, 31.2%가 공청회제도를 가장 바람직한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이 제도들은 기존에 시행중인 방법이면서도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주민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제도이다. 따라서 이들 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 및 적극적인 개최홍보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보다 폭 넓게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한다<표 4-48> 참조.

<표 4 - 48> 바람직한 주민참여방안

바람직한 주민참여방안		바람직한 주민참여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주민의 반응	공 청 회	31.2%(264명)
	주민설명회	35.5%(300명)
	주민감시반(주민과 환경단체 참여)	11.6%(98명)
	주민투표제	11.0%(93명)
	여론수렴반(간담회, 여론모니터 등)	9.1%(77명)
	반 상 회	0.4%(3명)
계		100%(845명)

또한 교육수준별, 연령별, 거주기간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 < 0.01$, $p < 0.05$, $p < 0.01$) 즉, 소득이 낮을수록, 교육수준은 높을수록, 거주기간은 짧을수록 공청회제도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많았다<부록편 표 4-49> 참조.

마. 환경(경관)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인식

1) 환경(경관)영향평가제도의 사전적 예방기능 수행정도

「대체로 기여하지 못한다」 또는 「전혀 기여 못한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자 중 45.7%로 「매우 기여」 또는 「대체로 기여한다」는 응답자 15.3% 보다 더 많은 분포를 보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화된 환경영향평가 기능에 대해 극히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4-50> 참조.

<표 4-50> 환경(경관)영향평가제도의 사전적 예방기능 수행정도

환경(경관)영향평가제도의 사전적 예방기능		환경(경관)영향평가제도가 자연환경 훼손의 사전적예방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의 반응	매우 크게 기여	0.9%(8명)
	대체로 기여	14.4%(122명)
	그저 그렇다	39.0%(330명)
	대체로 기여못함	29.6%(251명)
	전혀 기여못함	16.1%(136명)
계		100%(845명)

연령별 차이로는 연령이 높을수록 기여하지 못한다는 비판적인 인식이 강한테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p < 0.001$)<부록편 표 4-5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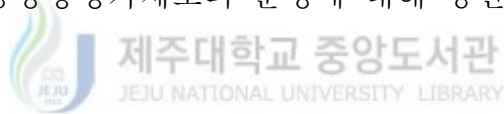
2) 환경(경관)영향평가의 문제점

전체 응답자의 42.4%가 평가주체가 사업시행자측이어서 실제 평가에 있어 평가서가 사업자 구미에 맞는 주문제작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고 21.3%는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공청회시 환경단체의 참여제한을, 21.1%는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적 지침 부재로 인한 자의성이 개입될 소지가 있다는 점을 들었다<표 4-52> 참조.

<표 4-52> 환경(경관)영향평가의 문제점

환경(경관)영향평가의 문제점		환경(경관)영향 평가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의 반응	평가대상의 제한문제	15.2%(110명)
	객관적 지침 부재로 인한 자의성 개입소지	21.1%(153명)
	평가주체가 사업시행자여서 평가의 공정성, 타당성문제	42.4%(307명)
	공청회시 환경단체 참여제한	21.3%(154명)
	계	100%(724명)

3) 환경(경관)영향평가가 「환경파괴의 합리적 수단」이라는 비판에 대한 견해 「매우 그렇다」 또는 「대체로 그렇다」라고 응답한 주민이 전체 응답자 중 72.3%를 차지하여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운영에 대해 강한 불신감을 나타내었다 <표 4-53> 참조.



<표 4-53> 환경(경관)영향평가가 ‘환경파괴의 합리적 수단’이라는 비판에 대한 견해

환경파괴의 합리적수단		환경(경관)영향평가가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환경파괴의 합리적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의 반응	매우 그렇다	24.8%(210명)
	대체로 그렇다	47.5%(402명)
	대체로 그렇지 않다	9.2%(78명)
	결코 그렇지 않다	0.7%(6명)
	모르겠다	17.7%(150명)
계	100%(846명)	

한편 대체로 교육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환경영향 평가제도 운영에 비판적인 자세를 보였다. 즉 대졸이 53.7%(66명), 고졸이 49.3%(100명), 중졸이 46.2%(79명), 국졸이 44.4%(84명), 무학이 42.9%(72명), 대학원 이상이 33.3%(1명)의 순으로 대체로 환경영향평가가 제구실을 못하고 환경파괴의 합리적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부록편 표 4-54> 참조.

4) 기존의 송전선로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서 내용 이행정도

「별로 이행되지 않음」 또는 「전혀 이행되지 않음」이라는 응답을 한 주민이 전체 응답자중 61.6%에 달하여 전반적으로 한전측이 환경영향평가서의 환경복구

이행약속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견해를 나타냈다<표 4-55> 참조.

<표 4- 55>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의 이행정도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의 이행정도		기존의 한전측의 송전선로사업에서 한전측이 환경영향평가상의 환경복구 이행약속을 어느 정도 이행하였다고 보십니까?
주민의 반응	매우 잘 이행	0.1%(1명)
	대체로 이행	6.1%(52명)
	그저 그렇다	32.1%(272명)
	별로 이행되지 않았음	37.5%(318명)
	전혀 이행되지 않았음	24.1%(204명)
계		100%(846명)

한편 연령별, 교육수준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p<0.001). 즉 대체로 연령이 많으면 많을 수록, 대체로 교육수준이 높으면 높을 수록 기존의 송전선로 사업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이 거의 이행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전혀 이행되지 않았음」은 응답자 중 50세 이상이 27.5%(85명), 30세~39세가 26.0%(34명), 40세~49세가 24.5%(50명), 20세~29세가 19.6%(29명), 20세 미만이 10.9%(6명)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원 이상이 100%(3명), 대졸이 34.1%(42명), 중졸이 29.1%(50명), 고졸이 22.2%(45명), 국졸이 19.6%(37명), 무학이 17.2%(27명)의 순으로 같은 응답을 한 것은 위의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부록편 표 4-56> 참조.

바. 송전선로의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도

1) 송전선로의 전자파 유해성에 대한 견해

「매우 유해할 것이다」 또는 「다소 유해할 것이다」라는 응답이 전체의 80.2%를 차지하여 주민들 대다수가 송전선로로부터 나오는 전자파가 본인들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57> 참조.

<표 4-57> 전자파 유해성에 대한 견해

전자파 유해성		154kV 성산분기 송전선로의 첩탑의 전자파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주민의 반응	매우 유해할 것이다	37.3%(316명)
	다소 유해할 것이다	42.9%(363명)
	그저 그렇다	17.3%(147명)
	그리 유해하지 않을 것이다	2.5%(21명)
계		100%(847명)

2)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해 들은 매체

전체 응답자 중 41.9%가 「TV방송」이라고 답했고 그 다음은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라는 응답이 30.3%, 「신문·잡지」가 19.4%, 「막연한 추측」이라는 응답은 6.9%를 나타냈다<표 4-58> 참조.

<표 4-58> 전자파 유해성을 접한 매체

유해성 인지 매체		전자파가 유해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어느 매체를 통하여 들으셨습니까?
주민의 반응	T. V	41.9%(336명)
	신문, 잡지	19.4%(155명)
	라디오	1.5%(12명)
	주위 사람들	30.3%(243명)
	막연한 추측	6.9%(55명)
계		100%(846명)

제 V 장 154kV 성산분기 송전선로 입지확보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 1 절 문제점

비선호시설에 대한 주민의 반대는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권리 행사방법의 하나라고도 볼 수 있지만 정부나 사업시행자들에게는 아직도 개인적 또는 지역적 이기주의의 발로로서 공공사업의 추진을 방해하는 걸림돌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시각차이때문에 공공시설이 입지하게 되는 곳에서는 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고자 노력하며, 주민들은 사업추진을 반대하고 방해하는 현상이 일어나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어떠한 경우에는 물리적인 집단행동으로 까지 나아가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의 발생은 국가정책을 지연 또는 중단시키거나, 계획의 변경으로 경제적으로는 물론 공익차원에서도 국가적인 손실을 초래하게 되므로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정부 및 공공단체는 공공시설의 입지확보 정책에 초점을 두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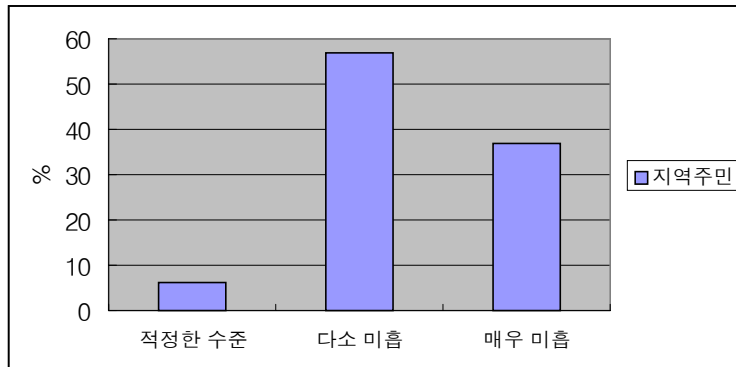
공공시설 부지확보과정에서 문제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손실보상제도의 불합리



제주지역 성산분기 송전선로사업에 대한 제 IV장의 주민설문조사 결과를 재구성한<그림 5-1>에서 보듯이 전체응답주민 847명 중 현재의 손실보상제도가 「다소 미흡하다」는 응답은 481명인 56.8%, 「매우 미흡하다」는 응답이 313명인 37.0%로 응답자의 대다수(93.8%)가 현재의 손실보상제도가 미흡하다고 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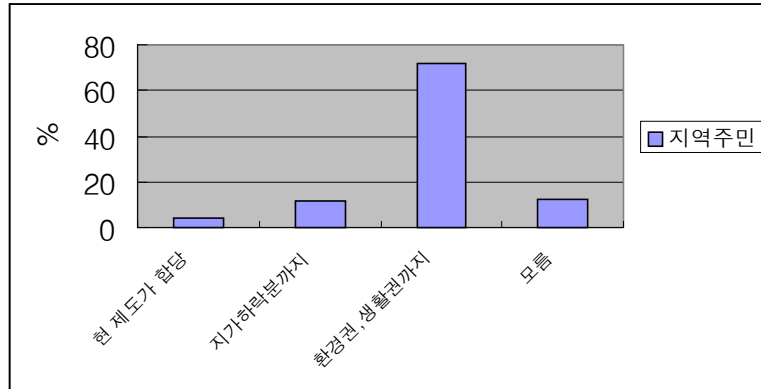
<그림 5-1> 현재의 손실보상제도에 대한 지역주민 반응



<그림 5-2>에서는 전체 응답자 중 609명(71.9%)가 합리적인 보상수준으로

「환경권과 생활권도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지역주민들은 포괄적인 손실보상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림 5-2> 합리적인 보상수준에 대한 지역주민 반응



이러한 손실보상제도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불만은 그 동안 혐오시설 및 위해시설의 설치로 인해 지역주민이 감수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은 점차 개선되어 왔다. 하지만, 생활권 보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데다가 재산권 보상마저 체계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현실, 즉 종래의 손실보상 제도는 토지, 건물 등의 실물자산만을 직접적인 보상대상으로 간주하고 이와 관련된 통상적인 손실은 부가적으로 보는 재물보상의 원칙에 기초해 있기 때문에 생활권은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간주되지도 않았다.³⁷⁾ 다는 데에 그 원인이 있다.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에서는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생활권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이주대책만을 언급하는 데 그칠 뿐, 생활권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보상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여타 대부분의 실정법 또한 생활권보상 자체를 규정해 놓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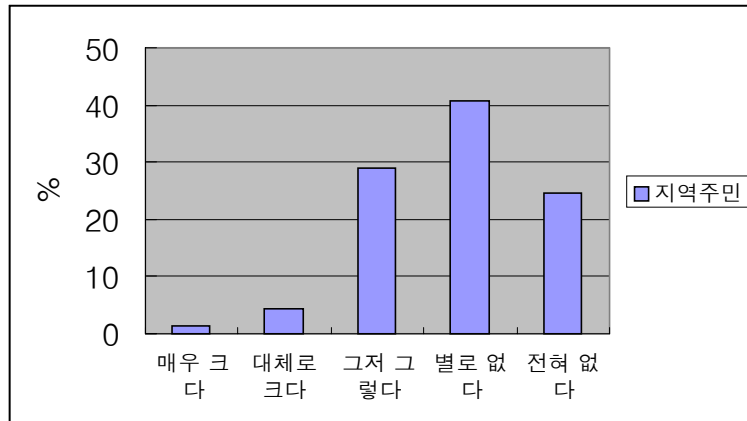
또한 <그림 5-3>에서 전체 응답자의 846명 중 「혐오시설의 입지로 인한 편익은 거의 없다」는 답변이 345명(40.8%), 「전혀 편익이 없다」는 응답이 209명(24.7%)에 달하여 65.5%의 주민이 혐오시설의 입지를 통한 편익은 거의 없고 그로 인한 환경과피와 지가하락 등 경제적인 손실만 발생한다고 응답하여 이러한 외부성이 혐오시설의 입지를 가로막는 넘비현상의 주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오하레(O'Hare)』는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시설의 입지는 재산가치의 손실 및 쾌적비용의 손실과 같은 비용을 보상해 주지 않으면 실패하며 그와 같은 시설의 입지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지역주민들이 개발사업이나 공공시설의 입지에 반대하여 집단반발을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는 그러한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간접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이 적정하지 않다는 데 있는데, 예컨대 쓰레기매립장, 하수종말처리장 등 혐오시설의 입지가 환경을 오염시키고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며 주변지역

37)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개발사업 수행을 위한 협상연구, 1994, p.66.

<그림 5-3> 송전선로의 부의 외부효과에 대한 지역주민 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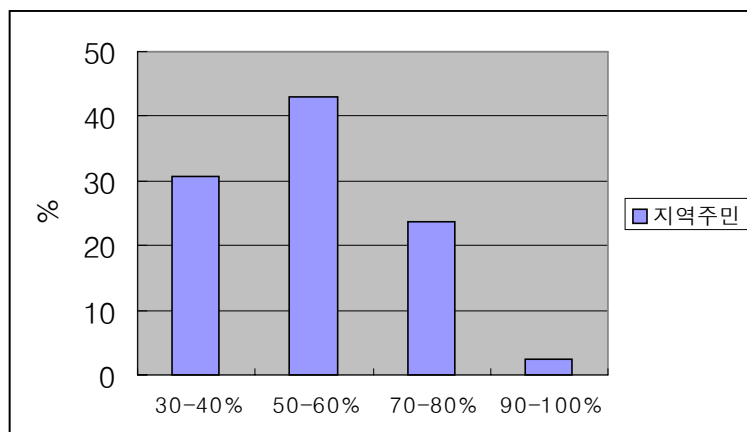


의 지가(地價)를 하락시켜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반면에 그 시설로 얻는 편익은 시설이 입지 하지 않은 타 지역에 비해서 별로 크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의 비대칭성이 나타나기 때문인 것이다.

이러 혐오시설에 대한 외부성은 인구사회학적 속성상 소득이 높을수록, 연령이 높을 수록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이들이 송전선로의 입지반대를 주도하는 계층이라는 점과 일맥상통한다.

<그림 5-4>에서 보면 용지매수금액이 실제 토지가의 50~60%선밖에 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전체응답자 847명 중 365명(43.1%), 30~40%선이라는 응답이 260명(30.7%), 70~80%선이라는 응답이 201명(23.7), 90~100%선이라는 응답은 불과 21명(2.5%)의 분포를 나타내어 지역주민이 느끼는 손실보상 금액수준이 실제 거래가와 상당히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헌법은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

<그림 5-4> 보상가의 실제가 근접정도에 대한 지역주민 반응



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규정(제23조 제 3항)하고 있으며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10제8항,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사유지의 용지매수의 경우 2개 감정기관 감정가격의 산술평균치로 매수 및 보상하게 되어 있으나 보상금액이 공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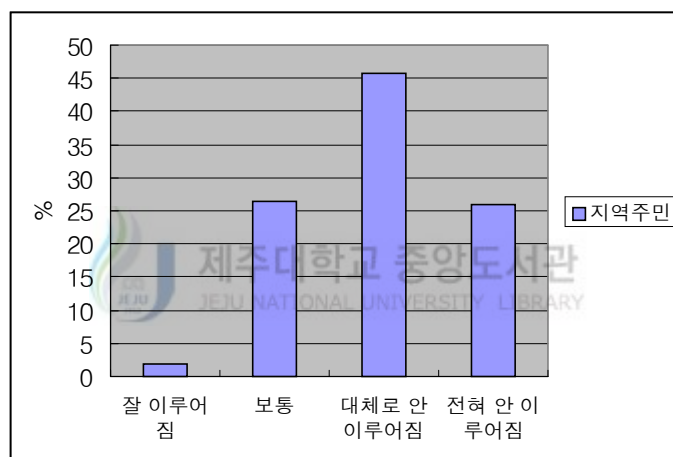
가보다는 높으나 실제 거래가액에는 미치지 못하는 데 문제가 있다.

실제로 154kV 성산분기 송전선로는 용지보상 금액이 98년 개별공시지가에 비해 평균 300%에 근접하는 것으로 실제 거래가와의 격차를 많이 해소한 것으로 보아 지지만 실제 거래가에는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변의 지가하락분에 대해서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2. 대화노력의 미흡

<그림 5-5>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45.7%가 「한전측과 주민간의 대화 및 협상이 대체로 안이루어지고 있다」는 응답을 하였고 25.9%는 「전혀 대화와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하였다.

<그림 5-5> 지역주민과 한전측의 대화의 원활정도에 대한 지역주민 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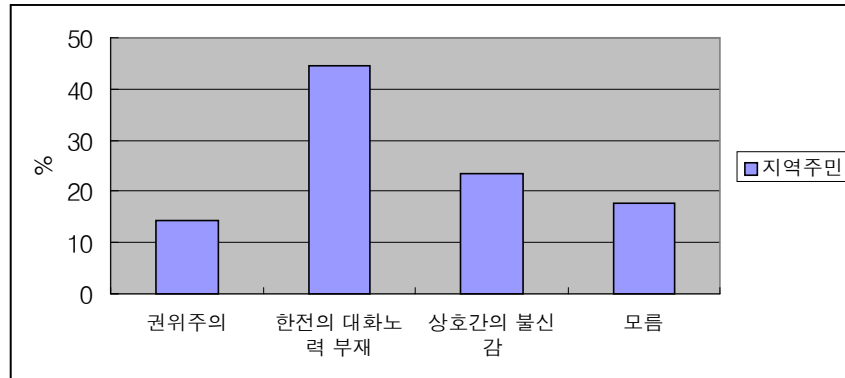


이에 대한 원인으로서는 <그림 5-6>과 같이 「한전측의 대화와 협상노력의 부재」가 44.4%, 「양 당사자간의 불신감」이 23.4%, 「사업시행자의 권위주의」가 14.4%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사업시행자인 한전의 지역주민에 대한 대화와 협상노력이 다소 미흡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적극적인 대화 및 협상의 자세가 요구된다.

또한 소득수준이 높고 연령이 많을 수록 이러한 대화 및 협상의 미흡함을 지적하는 비율이 많았는데 이는 이들이 주로 송전선로가 경과하는 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거나 인접에 토지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즉, 이들이 대화와 협상의 미흡을 느끼고 그 이유로 44.4%의 주민들이 한전측의 대화와 협상의 노력부재를 들었다는 사실은 그 만큼 송전선로 입지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설문결과에서도 이들 계층에서 송전선로 반대입장이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화란 자연적 인간활동이며 흥미롭고, 감격적이고, 창조적인 경험이다.

<그림 5-6> 대화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에 대한 지역주민 반응



대화란 자기 자신과 상대방과의 토론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있고 호의적인 이해의 공동추구이다. 또한, 대화는 개인적 성장과 공동체 의식의 창조를 유발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민주화가 어느 정도 진척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대화의 결핍시대를 살아오며 대화의 방법에 익숙하지 못하여, 각종 시위와 폭력이 난무하고 대화라는 기치아래 독선과 아집이 난무하는 양상을 보여 왔다. 민주적인 대화문화가 아직 온전히 형성되지 않았으므로 대화가 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도 하였다. 대화보다는 억압과 저항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풍토속에서 공동체의 당면한 문제해결은 갈수록 어려워져 결과적으로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대화가 잘 안되고 그로 인해 갈등이 심화되었는가를 살펴보자.

첫째,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는 권위주의 때문이다. 권위주의는 대단히 경직된 자세와 견해를 가지게 하여 불확실하고 이성적이지 못한 것에 편견을 가지고 대하며 인습적인 가치에 지나치게 집착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항상 자기의 경직된 사고와 인습을 방위함으로써, 폐쇄적이 되어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운 의사소통에는 관심이 적을 수 밖에 없다.

둘째, 국민들의 민주훈련 및 자율의식의 결여 때문이다. 앞의 요인과 함께 국민들은 민주적 훈련을 받을 기회가 없었고, 독립적·자율적인 사고와 행동을 발전시키지 못했다는 것은 역시 대화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자기의견이 절대적이 아니며, 다른 사람의 의견도 존중해야 한다는 생각, 언제나 서로가 양보하고, 상호조절하는 타협을 통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태도를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자기가 속하고 있는 집단이나 연대의 한계를 넘어서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자율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개인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로운 대화보다도 집단의 이익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한 이유로 집단적 사고와 행동만이 지배적이며 자율성을 성장시킬 수 있는 풍토가 결여되어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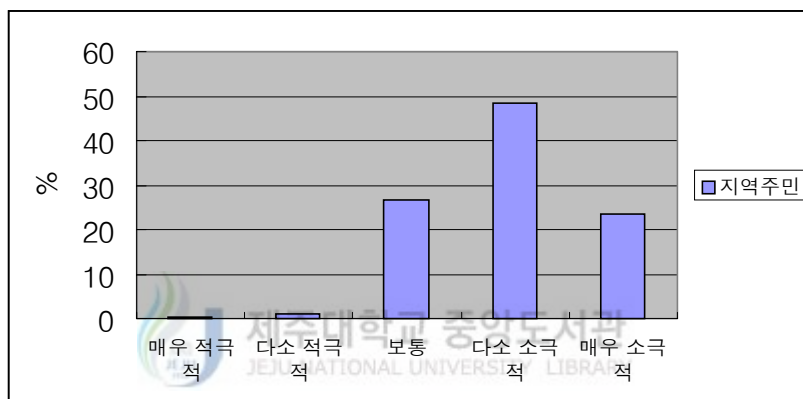
또한, 양 당사자간의 대화에 앞서 집단시위나 농성의 형태가 목표달성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것은 제도적으로 주민들의 불만을 적극 수렴할 수 있는 통로가 미흡했고, 따라서 시위나 농성이 있는 후에야 협상이 진전되는 것도 주민들에게 시위나 농성의 효용성을 알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3. 사업추진에 따른 개발정보 공개의 미흡

<그림 5-7>에서와 같이 송전선로 사업에 대한 한전측의 정보공개 정도에 대하여 「매우 소극적」이라는 응답이 전체응답자 중 23.4%, 「다소 소극적」이라는 응답이 48.4%의 분포를 보여 71.8%의 지역주민들이 한전의 사업정보 공개수준이 미흡하다고 지적하였다.

<그림 5-7> 송전선로에 대한 한전의 사업정보 공개정도에 대한 지역주민 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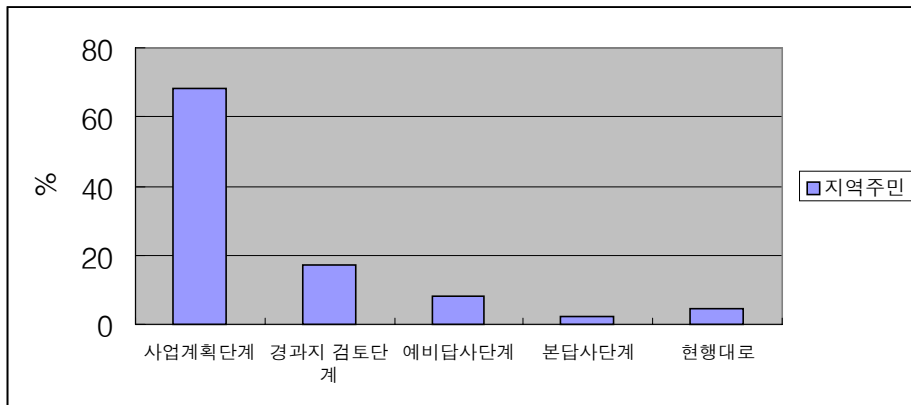


또한, <그림 5-8>의 사업정보 공개 시기에 있어서도 지역주민들은 「사업계획 수립단계에서부터 사업정보 공개가 이루어져야한다」는 응답자가 68.4%, 「경과 지 검토단계에서 부터」가 17.0%, 「예비답사 단계에서 부터」가 8.1%, 「본답사 단계에서 부터」가 2.1%의 분포를 나타내어 지역주민들은 사업초기인 계획단계에서부터 정보공개가 이루어져야 함을 지적하였다. 즉, 시기적으로 사전 정보공개가 아닌 사후 정보제공 성격이 강하여 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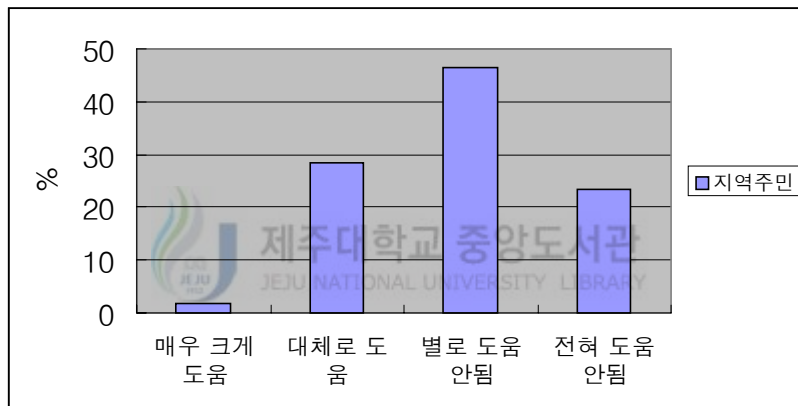
그러나 <그림 5-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업에 관한 「적시, 적절한 정보가 제공되어도 지역주민들의 강한 입지반대 여론을 누그러뜨리는 데는 큰 기여를 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46.4%, 「전혀 기여를 못한다」는 응답이 23.4%에 달하여 적시·적절한 사업정보가 입지반대 여론을 완화시키는 역할에 대해서는 대체로 회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는 ① 주민들에게 행정 전반에 관해 ‘알 권리’를 보장해 주며 ② 주민과 행정간에 신뢰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역동성 있는 협력을 가능하게 하고 ③ 주민들의 사회·경제적 활동에 도움을 줌으로써 생활의 충실과 향상을 기할 수 있으며 ④ 행정과정에서의 주민참여를 촉진시키는 데 기여한다.³⁸⁾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림 5-8> 송전선로 사업정보 공개의 적절한 시기에 대한 지역주민 반응



<그림 5-9> 사업정보의 공개가 입지반대 여론감소에 기여여부에 대한 지역주민 반응



하고 우리나라에서의 행정정보 공개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데 그 중요한 몇 가지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³⁹⁾

첫째, 행정정보의 공개는 주민들이 행정을 비판하고 정책형성이나 계획수립에 참여하는 데 기본전제가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비밀행정의 폐습, 실정의 은폐, 보안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공개를 기피하고 있다. 이러한 기피현상은 지역개발사업이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를 공개하면 언제나 유력한 반대의견이 생기게 된다는⁴⁰⁾이유 때문이다.

둘째, 주민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개발사업 및 혐오시설 설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권리가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사업주체들은 정보공개에 상당히 소극적이다. 또한 사후적 성격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정보공개는 본질적인 목적이 주민들에게 사업추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 정책형성이나 계획수립에 필요한 판단의 자료로 삼게 함으로써 주민참여의 활성화

38) 本田 弘, 情報公開制度論(東京: 北樹出版社), 1988, pp.15~26.

39) 부만근, “제주지역 주민운동론”, 제주대출판사, 1997, pp.384~385.

40) 五十風敬喜, 情報公開と 現代(東京 : 日本評論社,1992), p.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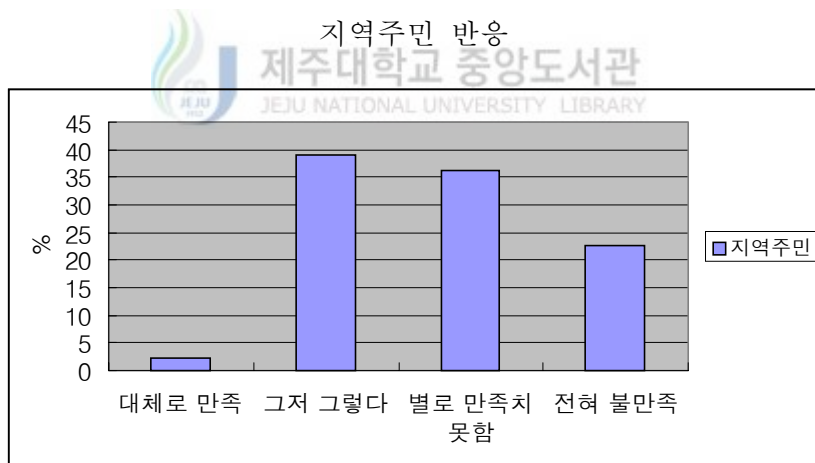
화를 기하는 데 있다고 할 때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사전적 성격이 많아야 되는데도 실제로 공개되는 정보는 대부분 사후적 성격의 것이 많아 실질적인 정보 제공이 못되고 있어 주민참여가 예방적 참여운동으로 되지 못하고 대중요법적 저항운동으로 될 소지를 안고 있다.

4. 입지선정 과정에서의 주민참여의 미흡

주민참여는 정책과정에서 이해관계의 조정을 통하여 정책내용의 타당성, 공정성과 현실적합성을 높여주는 한편 행정과 주민간의 상호신뢰를 통해 주민운동을 예방하거나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개발사업 추진이나 공공시설의 입지선정과정에서 주민들을 적극 참여시켜야 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주민참여는 만족할 수준만큼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5-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송전선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참여 수준은 「별로 만족하지 못하다」는 응답이 36.1%, 「전혀 불만족하다」는 응답은 22.6%로 나타나 지역주민들은 대체로 주민참여 수준에 불만족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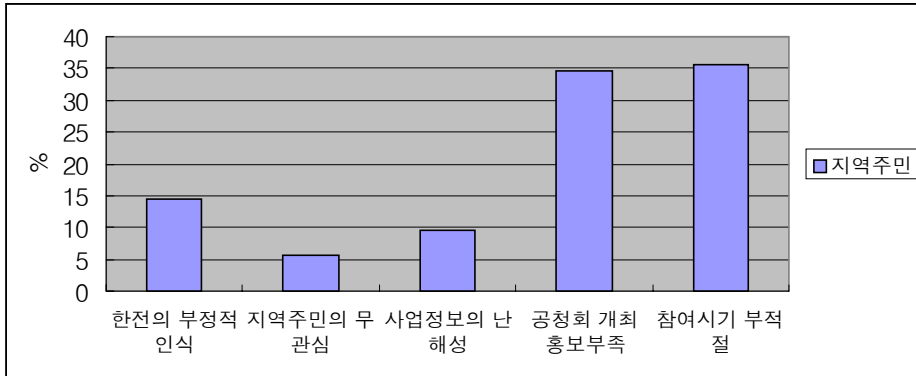
<그림 5-10> 송전선로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참여 수준 만족에 대한



주민참여 수준의 불만족 원인으로는 <그림 5-11>의 내용과 같이 「주민참여시기의 부적절 때문」이라는 응답이 35.5%, 「공청회·주민설명회 개최에 대한 홍보 부족 때문」이라는 응답이 34.7%, 그리고 「사업시행자측의 주민참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14.6%의 분포를 나타내었다.

다시말해서, 지역주민들의 참여수준에 대한 불만족은 혐오시설 입지가 확정되고 설치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서야 비로소 공청회를 통한 주민의 의견청취 등과 같은 소정의 절차를 ‘형식적으로’ 밟을 뿐이기 때문에 주민참여 시기의 부적절이 생기고 그로 인한 참여수준의 불만족이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청회나 공람에 대한 홍보마저 미흡하여 주민들이 참여하기가 쉽지 않은 데에서

<그림 5-11> 주민참여 수준의 불만족 원인에 대한 지역주민 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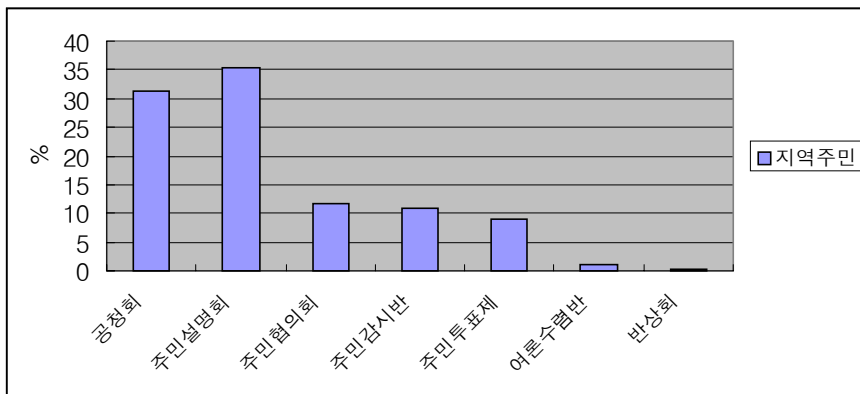


참여수준에 대한 불만족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특이한 점은 지역사회의 여론주도 계층이며 송전선로 경과지 및 바로 인접지역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비중이 높은 고연령층, 고소득층일 수록 주민참여수준에 불만족을 표출하였는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지역사회에서의 입지기반을 고려할 때, 이들의 사업에 대한 불만족은 입지거부의 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림 5-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바람직한 주민참여 방안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에서 묻는 질문에 응답자 중에서 35.5%가 「주민설명회」를, 31.2%가 「공청회제도」를 제시하였으나 이러한 방안들은 전문적인 환경단체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고 또한 개최에 대한 홍보마저 미흡함을 보여 만족스러운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5-12> 바람직한 주민참여 방안에 대한 지역주민 반응



협오시설의 경우 입지선정시 사전조사를 통해 제반 여건을 갖춘 지역을 후보지로 선정하고, 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선,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예상입지에 대한 주민의 동

의를 얻어 입지선정전문연구기관의 입지 타당성조사를 실시한 후 주민공람을 통해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토록 하고 필요시에는 주민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최종적으로 입지를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법제적으로는 이들 시설의 입지선정과정에서 주민이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 사업주체는 등은 주민참여에 부정적이어서 입지선정을 둘러싼 정책결정의 단계에서 주민 참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주민참여 유도수단인 행정정보의 공개조차 제대로 안되고 있다.

그렇다면 행정기관이나 사업주체들은 왜 주민참여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그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초기부터 주민참여를 확대하면 주민들을 불필요하게 자극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사업절차를 지연시킬 수 있다.

둘째, 일반주민들은 기술적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의 참여는 개발사업이나 공공시설의 입지에 대한 효과적 평가·분석을 방해하고 오히려 혼란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셋째, 시설이 입지선정 문제는 입지후보지의 부족, 입지선정에 따른 법률적·제도적 제약 때문에 최선의 해답이 존재할 수 없는데도 참여자들이 이를 인식하지 못하여 최선의 해답을 강요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결국 사업추진을 불가능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참여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은 참여로부터 얻는 효과에 비하며 아주 작은 대가(代價)이며 사업주체의 노력에 의하여 얼마든지 해결 가능한 것이다.

5.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부실

우리나라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일정 규모이상의 개발사업에 있어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다. 이 법은 1993년 6월 11일 법률 제 4567호로 제정·공포된 법으로서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서 미리 당해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평가, 검토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유지,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⁴¹⁾

즉 환경영향평가는 개발계획을 비롯한 사업계획의 추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평가하여 그 부정적인 영향을 제거 내지 감소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현재의 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효과적 방안을 모색하는 제도⁴²⁾로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효과를 가지고 있다.⁴³⁾

첫째, 환경영향평가의 실시로 인해 사업자는 사업계획의 추진과정에서부터 환

41) 안문석, 환경행정론, 법문사, 1995, p.271.

42) 최상복, 환경학개론, 배영출판사, 1987, p.479.

43) 김병진,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향」, 한국행정연구, 1995년 가을호, 한국행정연구원, p.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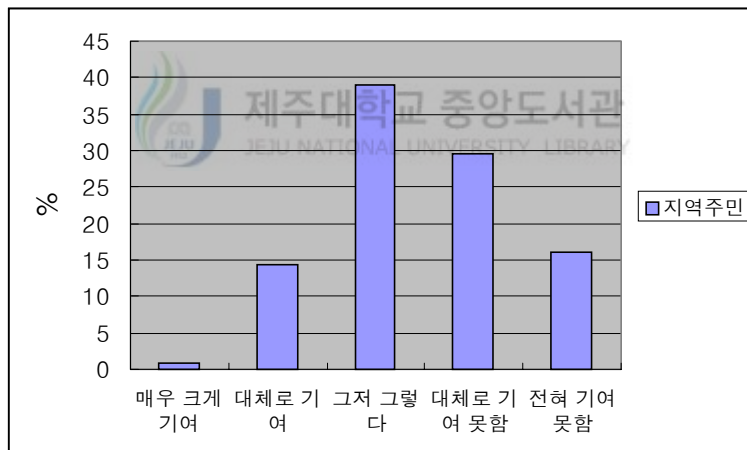
경문제를 고려하기 때문에 환경오염과 자연자원의 훼손을 사전예방할 수 있다.

둘째, 환경영향 평가결과 예측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하수처리장 등 환경 기초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환경투자를 확충할 수 있다.

셋째,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사업계획 내용에 주민의사가 반영될 수 있고 평가내용의 공개 등을 통하여 환경보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위와 같은 효과가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제도는 원래 환경보전이라는 적극적인 정책수단으로 도입되었다기 보다는 소극적으로 환경과피의 정도를 사전에 다소나마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도입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⁴⁴⁾ 그러나, <그림 5-13>에서 보듯이 환경영향평가의 사전적 예방기능에 대하여 「대체로 기여하지 못한다」는 응답이 29.6%, 「전혀 기여 못한다」는 응답이 16.1%로 나타나 「매우 크게 기여한다」(0.9%), 「대체로 기여한다」(14.4%)보다 높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지역주민들은 환경과피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제도화된 환경영향평가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13> 환경(경관)영향평가의 사전적 예방기능에 대한 지역주민 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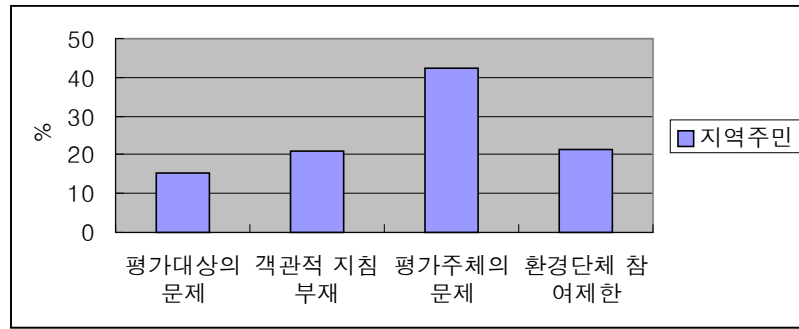


또한, <그림 5-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환경영향평가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42.4%가 평가주체의 문제로 인하여 평가서 자칫 사업자 구미에 맞는 주문제작서가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고 21.6%는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공청회에 환경단체의 참여제한으로 인한 타당성 저하를, 21.1%는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적 지침 부재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자의성 개입소지를, 15.2%는 평가대상의 제한 문제로 인하여 환경영향평가가 오히려 환경과피의 합리적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와 같은 지역주민들의 반응을 정리하면 실제의 환경영향평가에 있어서 평가대상사업을 일정규모 이상으로 제한함으로써 상수원보호구역, 자연생태계보호구역

44) 권해수, 「지방자치시대의 환경정책」, 지방자치, 1995년 11월호, 현대사회연구소, p.69.

<그림 5-14> 환경(경관)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지역주민 반응



등 환경적으로 중요한 지역에서 규모는 작더라도 환경파괴 효과가 큰 사업이 환경영향평가에서 제외되고 있는 등 아직도 환경파괴의 합리적 수단⁴⁵⁾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평가서작성에 있어서도 경관영향평가에 대한 객관적 지침이 확립되지 않아 평가의 자의성이 개입될 소지가 없지 않으며, 그리고 경관영향평가의 평가주체에 대한 문제로 특별법상의 경관영향평가제도는 사업시행자가 전문용역업체를 선정하여 평가서를 작성, 제출토록 하고 있어 결국 평가서가 사업자의 구미에 맞는 주문제작서가 될 수 있어 형식화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주민의견 수렴과 관련하여 공청회개최에 일정한 제약을 두고 있고 공청회의 참여범위도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주민으로 한정함으로써 전문지식을 갖고 주민의사를 대변할 수 있는 환경단체의 참여를 어렵게 하고 있는 것도 문제점의 하나인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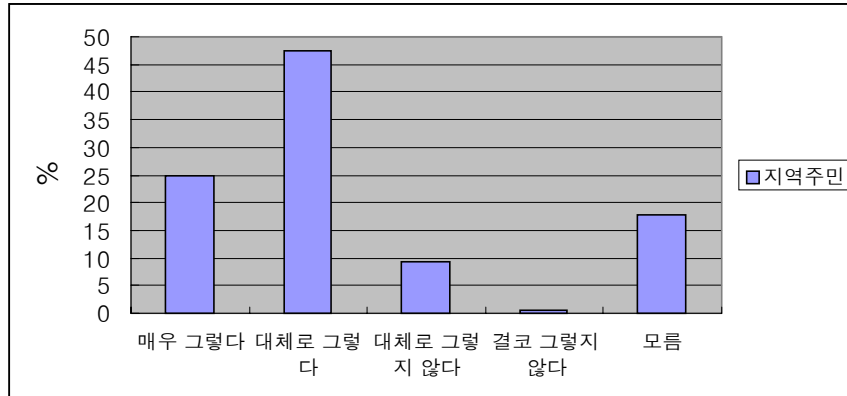
<그림 5-15>에서 보듯이 환경영향평가가 제 구실을 못하고 환경파괴의 합리적 수단이 되어버리지 않았는가 하는데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매우 그렇다」는 응답이 24.8%, 「대체로 그렇다」라는 응답이 47.5%의 분포를 보여 「대체로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인 9.2%,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인 0.7%보다 월등히 높은 분포를 나타내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운영에 있어 강한 불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그림 5-16>에서 한전의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에 대한 이행 정도를 묻는 질문에는 「별로 이행되지 않는다」는 응답이 37.5%, 「전혀 이행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24.1%로 「매우 잘 이행」의 0.1%, 「대체로 이행」의 6.1%보다 큰 차이가 나타나 그 동안 한전측에서 송전선로사업을 벌이면서 환경영향평가서상의 환경복구 이행약속을 잘 준수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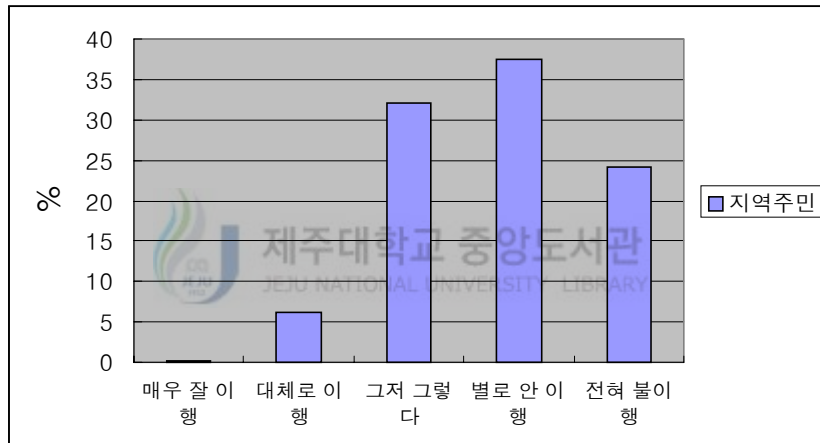
지금까지의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정책은 환경문제의 사전적 예방보다는 주로 대증요법적 차원의 사후적 규제(事後的 規制)에 치중해 왔다. 이렇게 일단 환경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취해지는 사후규제적 정책으로는 환경의 오염이나 파괴를 예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파괴된 환경의 사후 복구를 위한 투자는 환경보전을 위한 사전적 투자보다 훨씬 비경제적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45) 육동일, 「지역·집단이기주의에 관한 실증적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1995, pp.221~222.

<그림 5-15> 환경(경관)영향평가가 환경파괴의 합리적 수단이라는 데
대한 지역주민 반응



<그림 5-16>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의 이행 정도에 대한 지역주민 반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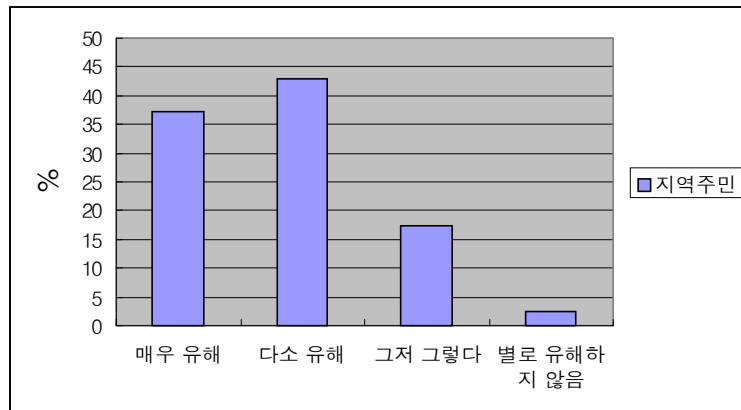


6. 송전설비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한 우려

최근 들어 한전의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지역을 중심으로 전자파의 유해성이 큰 논란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유해성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학계의 논란과 언론 보도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부정적인 인식 및 지나친 두려움을 야기하여 각종 공공사업의 추진을 가로 막는 상황이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림 5-17>에서 보듯이 송전선로의 전자파 유해성에 대하여 묻는 질문에 「매우 유해할 것이다」라는 응답이 37.3%, 「다소 유해할 것이다」라는 응답은 42.9%로 조사되어 「그리 유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2.5%)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분포를 보임으로써 지역주민들이 송전선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에 대한 우려 수준이 매우 심각한 정도임을 알 수 있다.

<그림 5-17> 송전선로 전자파 유해성에 대한 지역주민 반응



또한,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반대이유를 묻는 질문에 29.1%가 전자파의 유해성 우려 때문이라고 답하여 지가하락 등 손실보상 문제와 관련된 경제적인 이유 때문이라는 응답(42.6%)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유해성 문제가 송전선로 입지 반대의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임을 알 수 있다.

제 2 절 개선방안

비선호시설의 입지저항을 극복하는 정책은 주민참여를 근간으로 하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것이어야 한다. 입지선정 절차를 보다 과학화하고 사업시행자와 지역주민들간의 충분한 대화, 협상을 통해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관계당국도 공공시설 입지에 대한 주민의 반대의사를 무조건 지역이기주의로 매도하지 말고 민주적인 의견표명의 기회를 보장하고 이해 당사자들의 의사소통 경로를 마련함과 동시에 적절한 지역 지원사업을 취하여 비선호시설의 입지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결국 비선호시설 설치에 있어서 주민의 반대를 완화하고 님비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주민참여제도의 확립과 함께 철저한 환경오염 관리, 피해에 대한 조사와 그에 합당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1. 주민의 사회경제적 불이익에 대한 적정보상

지역주민들이 공공시설의 입지에 반대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는 위의 문제점에서 이미 제시하였듯이 그러한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간접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이 적정하지 않다는데 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이 송전선로와 같은 공공시설의 설치에 반대하는 것을 완화시키고 님비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산권은 물론 생활권까지도 포함하는 포괄적인 보상대책을 마련하여 선별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주체는 공공시설의 입지나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입할 때에는

실제의 거래가격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하며 그 시설의 영향을 현저하게 받을 우려가 있는 주변지역의 토지에 대해서도 토지소유주가 매도를 희망할 때에는 시가대로 매입해 줌으로써 재산권의 침해를 방지해야 한다.

둘째, 비선호시설의 입지로 인하여 지가가 하락할 경우 재산가치 하락분 만큼 보상을 해줌으로써 미래에 예상되는 불확실하거나 장기적 피해까지도 보상대상에 포함시키는 조건부 보상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간접적인 보상방안의 하나로 상정할 수 있는 것이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지원하여 포괄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다. 개별적인 보상도 중요하지만 지역의 숙원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비선호시설의 입지와 유치시설의 입지를 함께 묶어 계획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반드시 지역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 현실적으로 무엇인가 나아지는 것이 있음을 느낄 수 있는 사업에 적극 지원해야한다. 다시 말하면 지원사업은 공익사업보다는 육성사업이나 지역사회개발과 같이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있는 사업이어야 한다.

광역적인 지역이나 국가의 이익을 위한 사업이라고 일부 지역 주민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옳지 못하며 비선호시설이 입지함에 따라 지역주민이 입을 지가하락 등 상대적인 불이익을 적절한 보상으로 조정하여야만 집단민원의 요인을 줄일 수 있다.

비선호시설 입지지역의 주민들이 자신들만을 일방적인 피해를 입는 당사자로 인식하고 금전적인 또는 정신적인 피해를 받게 되며, 입지에 따른 손해의 적정한 보상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면 그 만큼 비선호시설 입지반대는 강력해질 수 밖에 없다.

또한, 용지매수 협상과정에서 보면 지역주민들이 유리한 보상을 얻기 위해 전략적으로 강력하게 반발하는 경향도 있는데 이럴 경우 정부와 지방정부 또는 사업시행자, 주민들간에 확고하고 철저한 보상원칙이 마련된다면 극렬한 반대로 인한 갈등표출은 줄어들 것이다.⁴⁶⁾

그러나, 합리적 보상에 의한 갈등해결은 주민들의 반대를 무마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수준의 보상』이 되어야 하는 데 이는 현실적으로는 법적·재정적으로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상은 비선호시설을 둘러싼 갈등의 본원적 해결 수단이라기 보다는 주로 완화수단으로 작용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갈등원인이 경제적 사안인 경우, 보상은 갈등해결의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하게 된다.

2. 사업주체와 주민간 불신감의 해소

남비현상 극복을 위한 전제조건인 하나는 사업주체와 주민간 상호불신감의 해

46) 김갑성·강신겸·최진우, “협오시설의 입지갈등과 합리적인 해소방안”, 삼성경제연구소, 1996, p.40.

소라고 할 수 있다. 지역주민과 사업주체간의 비선호시설 건설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금전적인 보상이나 지가의 하락에 대한 피해 또는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 등이 그 원인으로 일반적으로 지적된다. 그러나 갈등의 저변에 깔려있는 상호불신감도 가장 큰 원인의 하나라고 판단된다<표 4-23>와 <표 4-33> 참조.

이러한 불신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자세가 필요하다. 사업시행자는 지역주민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지역주민들은 사업시행의 불가피성을 서로 인정하고 상충하는 이익을 대화를 통해 풀어 나간다면 서로간에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지역주민들은 ‘자치단체가 왜 우리지역에 비선호시설을 건설하려고 하는가? ‘다른 지역에서는 유력인사가 살거나, 이해가 걸려있어 우리지역에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가?’ 와 같은 형평성의 문제와 함께 장래에 무슨 사고가 일어날 지 어떻게 누가 아느냐?’ 하는 시설의 안정에 대한 의혹을 품게 마련이다. 더불어 지금까지의 정부의 행태로 미루어 주먹구구식으로 계획했을 것이라고 지레짐작을 한다면 주민들의 의견은 한가지로 집약될 수 밖에 없다. 결국 반대를 하지 않으면 자기지역만 피해를 입는다는 결론에 도달하기 쉽다.

반면 정부 및 사업주체의 생각은 어떠한가? ‘우리가 이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고민하고 준비했는데 일부 주민들이 주민대표라며 반대를 해도 되는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하는 계획을 주민이 반대해서 추진하지 못하면 국가적으로 큰 피해를 입는데 왜 반대를 하나?’, ‘주민이 알면 얼마나 안다고 시설의 안정성에 대한 정부의 발표를 왜 믿지 않나?’ 는 등 주민에 대한 대표성이나 전문성의 결여를 지적하며 불신을 표시한다.

이러한 상호간의 불신감은 문제해결의 타협점을 찾기 위한 전 단계인 대화 자체를 원천적으로 막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러한 상호불신감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설명하는 좋은 예로서 죄수의 딜레마(Prisoner's dilemma)가 있다. 용의자 두 사람이 모두 자백을 하지 않고 최소한의 형량을 받을 수 있지만 서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백을 하게 되고 결국은 자백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많은 형량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답이 최적의 해답으로 결론지어지는 가장 큰 요인은 서로를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은 죄수끼리 협상하거나 의견을 알 수 없는 상황을 전제한 것이다.

만약 두 용의자가 서로 대화하고, 타협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나 암묵적인 믿음이 있다면 두 사람 모두 딜레마에 빠지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보더라도 지역주민들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계획과 결정을 신뢰하고 타협을 통해 합의된 내용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또 정부는 주민의 반대의견을 지역이기주의로 치부하고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는 것이 아니라 계획단계에서부터 주민을 설득하고 서로 협력적인 관계에서 대안을 모색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3. 사업추진에 관련한 정보공개와 활성화

지역주민들에게 있어 공공사업에 대한 정보공개는 단지 홍보를 위한 목적보다는 헌법상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과 함께 주민들과 사업시행자간의 이해 관계를 조정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공공사업에 있어서의 정보공개는 입지선정 검토단계에서부터 보다 적극적으로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지역 주민들에게 충분히 제공하여 사업시행자가 정보를 은폐시키고 있다는 인상을 불식시켜야 한다. 진정한 의미의 정보제공은 사전적인 것이 되어야지 정책이 결정된 후의 사후 통보적인 것이 되어서는 주민들의 불만이나 입지반대를 해소할 수 없는데 이러한 사실은 성산분기 송전선로 입지문제에 있어서도 나타나고 있다<표 4-38>와 <표 4-40> 참조.

정보공개를 통해 주민들이 필요한 정보를 접할 수 있게 되면 지역사회의 현실과 문제점을 정확히 이해하고 특정한 혐오시설 설치의 불가피성을 인식하게 됨으로써 사업추진에 따르는 반발을 완화시킬 수 있다.

이같이 필요하고도 충분한 사업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것은 님비현상을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며 주민과 사업주체간의 신뢰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참여 등을 촉진시킬 수 있다. 그러면 비선호시설의 입지선정과정에서는 실제로 어떠한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는 가를 고찰해 보자.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은 공급자 측면의 정보와 수요자 측면의 정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데 공급자 측면의 것은 주로 시설주체에 의한 정보의 제공으로서 당해 사업의 당위성, 기술적 안정성, 법적·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정보라든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자료 등 주로 시설입지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의도를 가진 정보이다.

반면에 수요자 측면의 정보는 공급자 측면의 정보가 갖고 있는 문제를 극복하고 건설적인 주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당해 시설의 입지가 지역사회의 발전에 어떻게 작용할 것인지, 주민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또 그러한 시설을 설치하는 이외의 대안은 없는 것인지, 시설의 그 지역입지가 형평성에 타당한 것인지 등 지역주민들이 지역의 장래와 관련하여 알고 싶어하는 내용의 정보들이다. 시설주체나 행정기관은 공급자 측면의 정보제공도 필요하지만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요자 측면의 정보제공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와 함께 시설주체와 주민들 간에 기술적 정보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공유해야만 입지결정자의 개인적·조직적 이해나 선호 또는 정치적 차협에 의해서가 아니라 객관적 기준에 따라 입지선정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주민들도 스스로 시설의 안정성이나 환경영향 등에 대한 기술적 내용을 알게 되어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주민참여의 제도적 보장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시행자측이 주민들의 비선호시설 입지반대에 대응하는 바람직한 방안 중의 하나는 실질적인 주민참여제도의 확립과 참여기회를 확대시키는 것이다. 그런데 주민참여에 있어서는 비선호시설의 설치로 영향을 받게 되는

이해당사자들이 균형 있게 참여하여야 결정과정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일반 지역주민은 물론이고 환경단체나 기술적 이익집단 등 사회의 여러 계층을 망라하는 넓은 범위의 참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주민 참여의 시기는 대안 선택이 이루어진 이후 보다는 그 이전에 이루어지는 사전적 참여가 사업시행자와 지역주민간의 갈등관리에 보다 바람직하다고 본다. 주민들의 조기참여가 대안선택의 초기단계에서는 시간과 자원면에서 행정 또는 사업추진의 비능률을 초래하는 것 같지만 조기참여는 오히려 비선호시설의 입지선정에 있어서 주민들로 하여금 인정감을 갖도록 만들어 그들을 이해시키고 협조를 얻어낼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 된다.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그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1) 공청회

공청회는 행정입법, 행정계획, 행정처분, 기타 주민의 이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사항에 관하여 최종 결정에 도달하기 전에 의견을 널리 구하는 절차로서 관련 이해당사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된다.⁴⁷⁾

따라서 공청회는 비선호시설의 설치 등 특정정책의 추진 및 관심사항, 분쟁사항의 해결을 위한 각계 각층의 여론을 수렴하여 주민과의 이해조정을 도모하고 사업추진의 방향 설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현행 공청회제도는 ① 주민들의 의견청취보다도 정책에 대한 정당성 확보와 설득의 통로로 이용되고 있고 ② 공청회 참여대상자를 협조적 성향이 높은 인사위주로 선정하여 초청하는 경향이 있고 ③ 공청회에서 발언기회의 제한으로 다수의 의견이 표출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공청회가 주민참여를 위한 진정한 제도적 장치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공청의 대상의 확대이다. 도시계획의 수립이나 도시재개발사업 등에 국한하지 말고 일반 공공사업에까지 그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바람직한 의견은 적극적으로 사업추진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참여 의지를 고양시켜야 한다.

셋째, 다수 주민의 객관적인 의견수렴을 위하여 공청회의 공개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공청회에 관심있는 주민 모두에게 공개할 것, 지정 토론자의 수를 지나치게 많이 하여 준비된 발언만으로 공청회가 종료되지 않도록 할 것, 일반청중에게 자격제한 없이 발언기회를 충분히 부여할 것, 시책방향에 호의적이거나 협조적인 인사위주의 토론자 지정관습을 지양할 것, 충분한 공시기간의 부여 및 사전 사업설명 등의 홍보로 다수 주민의 참여를 유도할 것 등이 요청된다고 하겠다.

2) 위원회

위원회는 제도적으로 현재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주민참여 통로로서 그 성격에 따라 자문위원회, 심의회, 행정위원회 등 세 가지가 있다.

47) 최창호, 지방자치제도론, 삼영사, 1988, p.669.

우선 주민자문위원회는 자치단체의 행정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시책을 건의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위원회이다. 이 위원회 설치의 구체적인 목적은 주민의 요구·기대·실정의 파악, 주민의사의 시책에 반영, 시책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이해의 촉진, 계획 수립과 집행에 있어서 주민협력의 확보, 주민간의 분쟁의 조정과 해소 등에 있는데⁴⁸⁾ 위원구성은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의 소유자가 아닌 일반 주민으로 이루어진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한편 심의회는 지방행정에의 주민의견 반영, 행정에의 전문지식과 경험의 도입, 관계단체·행정조직 등의 의견조정 및 시책집행에의 협력, 대립적 이해관계의 조정을 통한 행정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위원회이다.⁴⁹⁾

이 위원회의 위원구성은 지역내 각종 단체의 대표자, 대학교수, 언론인, 법조인 등 학식·경험의 소지자와 이익대표, 지방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마지막으로 행정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 지방인사위원회, 토지수용위원회 등과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의 일부로서 자치단체장으로부터 비교적 독립된 입장에서 정책결정 및 집행의 권한을 행사하는 위원회이다. 그러나 이 위원회 위원은 전문적 지식과 경험의 소지자여야 하므로 일반주민은 이에 참여할 수 없다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⁵⁰⁾

그런데 위의 여러 위원회들은 주민참여의 통로로서는 현실적으로 ① 행정기관에 협조적 인사를 위원회의 위원에 일방적으로 선임하는 등 공정성이 미흡하며, ② 정책결정에의 참여기능보다는 이미 결정된 정책에 대한 형식적 심의와 자문에 그치고 1년에 단 1회의 회의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있는 등 운용이 형식화하고 있고, ③ 위원구성이 주로 사회지도층 인사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회저변층에 대한 여론수렴이 미흡하여 대표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위원회제도는 진정한 주민참여를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첫째, 사회지도층을 중심으로 하는 위원구성을 지양하고 사회 각 계층의 대표로 구성함으로써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많은 위원회에 집행권과 실질적인 독립성을 부여함으로써 주민참여의 영향력을 높여야 한다.

셋째, 동일인을 여러 위원회에 중복 위촉하는 현상을 지양하여야 한다. 법령상 당연직 위원과 해당분야에 전문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위촉을 억제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간부도 법령상 당연직 이외에는 위촉을 지양하여 위원회의 자율성을 높이고 형식적 운영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주민참여 수단으로서의 위원회가 되도록 해야 한다.

넷째, 위원회운영에 있어서 위원회의 목적, 권한, 책임의 명확화와 효율적 행정 절차를 고안함으로써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3) 반사회

48) 최창호, 지방자치학, 삼영사, 1995, p.664.

49) 岩崎忠夫, 住民參加論(東京: 第一法規), 1984, pp.182-183.

50) 岩崎忠夫, 위 의책, pp.184-185.

반상회는 지역주민들이 정기적으로 회합하여 중요한 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함은 물론 행정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건의하는 주민조직으로 통, 반, 단위의 모임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

우리나라는 1976년 5월에 전국적으로 반상회가 조직되어 매달 1회씩 개최되어 왔으나 1990년대 들어와서는 그 활동이 침체되어 지역사회공동체와 주민조직으로서의 제 역할을 못함에 따라 1998년 폐지되었다. 그러나 주민과의 정례적인 대화를 통하여 건의사항 등을 수렴·해결함으로써 주민불편 해소에 많은 기여를 하는 기능 또한 무시할 수 없기에 이 제도의 부활을 통하여 주민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그 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볼 때 반상회제도는 ① 건의사항이 건설적인 제안보다는 주로 행정기관에 대해 일방적 해결을 요구하는 사안들이며, ② 지식층, 부유층, 영세민, 세입자 등의 참여는 저조하고 주로 주부층 위주로 참여함으로써 중류층 여론이 과다대표되는 폐단이 초래되었고, ③ 반상회 개최일은 매월 25일로 강제하는 등 행정주도의 획일적 운용과 행정시책 홍보의 통로로 이용되어 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반상회제도를 통해 주민참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행정기관은 반상회를 주민참여의 주요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주민의 의사나 요구가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민의 광범한 의사를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민주행정의 의사와 참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많은 정보를 공개하며 참여에 관심과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

둘째, 외형적 성과보다는 주민의 단합과 자율적인 협동을 이루는 모임이 되도록 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획일적 운영을 지양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반상회의 기능과 운영방법을 개발하여야 한다.

셋째, 건의사항의 성실한 처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지도층, 부유층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반상회 운영의 부실을 제거하여야 한다.

4) 여론조사

여론조사는 설문이나 면접 등을 통하여 비선호시설의 설치에 따르는 지역주민들의 행정에 대한 태도 및 요구사항, 특정사업에 대한 인식도와 선호도 등의 자료를 광범위하게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여론조사는 통상 그 의견이나 태도를 나타내지 아니하는 침묵하는 다수자를 포함한 주민전체의 의견이나 태도를 파악한다는 점에서 다른 주민참여 채널이 추종할 수 없는 장점을 지니고 있으며, 동일한 설문을 정기적으로 행함으로써 주민의향의 변화 추이를 파악할 수 있다.⁵¹⁾

5) 간담회

간담회는 자치단체의 장을 비롯한 행정기관과 주민들이 직접대화를 통하여 비

51) 부만근, 지방행정에 있어서 주민참여의 활성화방안, 「사회발전연구」, 1998. 제14집, 제주대학교 지역사회발전연구소, p.106.

선호시설의 설치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나 요망사항을 청취하여 행정에 이를 반영함과 아울러 행정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주민참여 채널이다. 간담회는 이같이 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향을 들어 행정의 문제점을 발견하여 이를 시정하며, 주민의 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식을 높이는 한편 공무원들에게 자극을 주어 의식개혁에 기여하는 부수적 효과도 거둘 수 있다.

6) 주민투표제도

혐오시설 입지반대에 대한 대립·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쟁점사안을 주민투표에 회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주민투표는 공공시설의 입지를 둘러싸고 주민측과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심하게 대립함으로써 정치적 타협이 어렵거나 주민들간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그들의 의견을 정확하게 수렴하기 어려울 경우에 주민들이 투표를 통해 다수결로 입지를 선정하는 등 정책사안을 결정하는 방식이다.⁵²⁾

우리나라의 주민투표제도는 1994년 3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채택되었다. 동법 제13조의 2 제 1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또는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결정사항 등에 관하여 주민투표에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⁵³⁾

이와 같은 주민투표제도는 원자력 발전소, 쓰레기처리시설 등의 이른바 비선호시설의 건설과 환경문제 등 직접 지역에 관계되는 문제에 대해서, 주민에게 그 가부를 묻는 새로운 직접민주주의의 정치참여방법이다. 이러한 혐오시설 등 공공시설의 입지에 따르는 영향은 자치단체의 주민전체에 걸치는 경우도 있으나 극히 일부지역 주민에게만 한정되는 것도 있다. 후자의 경우는 비록 지방자치법이 정한 주민투표의 대상은 될 수 없지만 일부 지역주민이기는 하나 그 시설이 주민생활에 워낙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주민과 사업시행자간에 심각한 대립·갈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상 규정은 없다고 해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 판단에 의해 해당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실시하거나 가구별로 전수의견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주민투표의 시행여부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며, 공공시설 입지계획을 둘러싸고 대립·갈등이 이미 현재화되어 있는 상태라면 주민들이 이성적 판단에 의해 투표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주민투표 부의 사항이나 투표시기의 결정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주민들과 사업시행자간에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는 시설입지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의견조사를 활용하거나 각종위원회를 통하여 이해관계인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52) 부만근, “지역개발관련 집단민원에 대한 대처방안”, 제주대 지역사회발전연구소, 사회개발연구 제10집, 1994, p.31.

53) 그러나 주민투표의 대상, 발의자, 발의요건, 기타 투표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케르(D. H. Kerr)」는 정책추진과정에서 참여가 제약되면 정책은 규범적 정당성을 상실하게 되어 실패한다고 지적하고 있는데⁵⁴⁾ 개발사업이나 비선호시설의 입지결정에 있어서 주민들의 참여배제는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소외감과 무력감을 갖도록 하고 다른 대안이나 선택의 여지없이 정책당국의 결정에 무조건 승복하라는 강제를 당한 것으로 여기게 만든다. 이러한 참여의 배제로 인한 주민들의 반응은 정책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정당한 것이라 해도 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그 결정의 취소나 사업집행의 철회를 요구하는 투쟁지향적 행태로 나타나는 수가 많다. 따라서 주민참여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대안선택 이전단계에서부터 기회를 부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합리적 개선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제 5장 제 1절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원래 이 제도는 환경보전이라는 적극적인 정책수단으로 도입되었다기 보다는 소극적으로 환경파괴의 정도를 다소나마 줄이기 위한 대안으로 도입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제도의 실제운영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한계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환경영향평가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어 환경보전을 위한 적극적 정책수단이 되며 동시에 영향평가를 둘러싼 주민들의 불신과 반발을 막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차원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첫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일정 규모이상의 개발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고 있는데 환경파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정규모 이하의 면적이라 해도 이를 평가대상사업으로 전환함으로써 사업시행자와 지역주민과의 의견조정을 통해 순조로운 사업추진이 이루어져야 한다.

제주도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제주도개발특별법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법과 동법 시행령은 15만㎡ 이상의 토지구획정리사업, 10만㎡ 이상의 아파트지구 개발사업, 10만㎡이상의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 5만㎡이상의 주차장 시설사업, 10㎡ 이상의 매립사업, 5천㎡이상의 양식장 설치사업, 10만㎡이상의 쓰레기매립장 등 비교적 규모가 큰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⁵⁵⁾ 그러나 특히 전력 송전선로는 10km(도심지 4km)이상인 경우 경관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이 기준은 이는 환경영향평가법 제 4조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보다는 그 범위가 크게 강화된 것으로서 여타의 사업에 있어서도 환경에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해야 할 것이다.

둘째, 환경영향 평가주체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

54) D. H. Kerr. "The Logic of Policy and Successful Policies". Policy Science.

Vol. 7. 1978. pp.351~363.

55) 제주도개발특별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 6조 참조

어야 한다. 현행법상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주체는 바로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아무리 전문기관인 대행기관에 의해서 평가를 수행한다고 해도 사업시행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평가서가 작성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공정성과 중립성에 문제가 되고 있다.

근래에 와서 환경영향 평가과정을 거친 사업이라 해도 환경문제가 크게 야기되고 있는 것은 사업시행자가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내용을 잘 지키지 아니하는 탓도 있지만 평가서가 부실하게 작성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⁵⁶⁾ 따라서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주체는 별도의 중립적인 평가기관이 설립되어 그 기관에 맡기는 것이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주민공청회에 전문성을 구비한 환경전문단체의 참여를 보장하여 상충된 이해관계의 조정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불신과 대립을 줄이고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⁵⁷⁾

넷째, 지역환경영향 평가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⁵⁸⁾ 현재의 환경영향평가는 17개 유형 63개 사업단위로 실시되고 있는 데 이러한 방식으로는 여러 건의 사업이 한 지역에서 동시에 시행될 때 그러한 사업들이 복합적으로 지역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평가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보다 바람직한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동시에 시행되는 개발사업들이 지역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역환경영향평가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 적극적 홍보실시



넘비현상의 해소는 대화의 바탕위에 적절한 보상이라는 타협의 절차과정을 통해서 그 해결이 가능하다고 본다. 그런데 넘비현상에 있어 대화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생산적이고 효과적인 대화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의 의견을 알려주고, 새로운 정보와 정확한 사실들을 제공하여, 대화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홍보인데, 대화에 앞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홍보는 대상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잘못된 인식에 기인하는 편견과 선입견을 저하시킴으로써 계몽의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지역주민들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많은 정보를 대중매체를 통하여 습득함으로써 대중매체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대중매체를 잘 이용함으로써 지역주민과 사업시행자간의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등 홍보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다.

첫째, 신문은 다른 매체와 달리 기록의 영속성을 지니고 있어서 선전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고 홍보하고자 하는 대상에 일반대중이 접할 기회가 많아, 그 대상과 친밀하게 되며 아울러,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

둘째, TV를 통한 홍보는 다른 인쇄매체와 달리 시각적인 효과를 충분히 활용

56) 양병이,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지역개발」, 지방행정, 1992년 8월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p.49.

57) 부만근, 「제주지역 주민운동론」, 제주대출판부, 1997, p.404.

58) 김병진, 전개서, p.79.

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지역주민들은 그들의 시각에 의한 정보를 가장 신뢰하며 따르는 경향이 있는 바, 그러한 점을 충분히 활용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주민들을 오도하지 말아야 한다.

홍보에 임하는 자세 또한 중요한데 적극적이지 못한 홍보는 설득에 있어 성공하기가 어렵다. 홍보는 보다 나은 생산을 위한 투자이지 결코 낭비가 아니므로 홍보에 적극적인 경제적 지원이 따라야 한다. 홍보는 서로간의 불신을 해소시키는 대화를 유도하는 역할을 하며, 올바른 홍보는 비선호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막연한 공포 또는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홍보는 전자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한 우려는 주민들이 자기지역에 성산분기 송전선로 입지를 반대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 전자파는 전기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전기기기, 즉 TV, 형광등, 전자레인지, 냉장고, 진공청소기 등의 가전제품이나 송전선 또는 변전소 등의 전력설비에서 발생하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나 태양, 구름속등의 자연계도 전자파를 발생하고 있다. 이렇듯 전자파는 우리 일상 생활속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접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전자파에 대하여 너무나 잘 모르고 있다.

전자파는 전압에 의해 발생하는 전계와 전류에 의해 발생하는 자계로 구성되는 일종의 전자기 에너지로써, 전계(電界)와 자계(磁界)가 서로 공존하며 공간속을 진동하여 전파하는 파동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전자파의 세기는 전계와 자계중 자계의 세기를 말한다.

전자파는 주파수가 높고 파장이 짧아지며, 그에 따라 전자파가 갖는 에너지는 증가한다. 그러나 전력설비는 전자파는 아래 <표 5-1>과 같이 주파수가 60Hz로 극히 낮고 파장은 5,000km로 아주 길어 에너지를 갖고 있지 않다

<표 5-1> 전자파의 파장비교

전압별	경과지구분	국가기술키준 (전기설비기술기준)	한전설계기준 (전선최소높이)
154kV	일반지역	6.12m	16m
345kV		8.52m	18m
765kV		13.32m	28m

※ 1MHz = 1,000,000Hz ※ 한국전력공사 Internet Homepage 전자파자료집 참조

※ 1 cm = 1/1,000,000cm

또한, 전자파는 발생원으로부터 가까울 수록 강도의 크기는 높아지고 거리가 멀어지면 그 강도는 급격히 감쇄되는 특성이 있어 일반가정에서 송전선로의 전자파세기는 무시할 수 있으며, 송전선로의 전자파는 가전기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와 비교할 때, 노출빈도, 전자파 세기가 적다.

그 이유는 한국전력에서 <표 5-2>에서와 같이 송변전설비를 법정기준보다 훨씬 강화하여 건설하고 있기 때문이다.

<표 5-2> 송전선로 국가기술기준 및 한전설계기준

전기기구	주파수	과 장
X선	1X 10 ¹² MHz	0.03 cm
전자레인지	2,450MHz	12.2cm
휴 대 폰	900MHz	33cm
송전선이나 변전소 등 전력설비	60Hz	5,000km

※ 1MHz = 1,000,000Hz, 1 cm = 1/1,000,000cm

※ 한국전력공사 Internet Homepage 전자파관련 자료집 참조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직까지 전자파에 대한 유해성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밝혀진 것이 전혀 없으며 전자파가 특정한 종류의 암의 발생율을 높인다는 일부의 주장은 단순히 그럴 것이라는 추측에서 기인된 것이다. 이미 여러 건의 동물실험 및 여러 보도를 통하여 전자파의 동물에 대한 유해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된 언론 보도를 보면 <표 5-3>과 같다.

<표 5-3> 전자파관련 신문 보도자료

신문명	일자	보 도 내 용	비고
조선일보	95.9.27	○“전자파-자기장 피해 과장돼 있다” - X선 발견 1백주년 6개학회 학술대회 발표내용 인용보도 - 생활속 전자파발생체 인체에 무해	
환경타임즈	96.8.28	○ 송전선로 이격거리 길어 전자파 영향 미미 - 변전소근무자 1,600명 건강특이성 미발견 - 60Hz전자파 에너지 보유량 적어 인체무해	
동아일보	96.10. 8	○ 「유해」 구체적 증거 아직 없다 - 이화여대 물리학 양인상 교수 인용보도	
조선일보	96.10.29	○ “고압선 전자장 압과 무관” - (英誌보고서) 핀란드 헬싱키대 20년간 조사결과	
동아일보	96.11. 2	○ “전자파 해롭지 않다”(미 워싱턴 포스트지 인용) - 보통사람들이 가정에서 흔히 쓰는 전자제품과 고압송전선에서 나오는 전자기장이 인체에 어떤 인정할 만한 해를 미치지 않는다고 보도	
전기산업신문	97.5.15	○ 일본 전력중앙연구소 연구결과 “송전선 전자파 인체에 영향없다” - 임신한 쥐 실험 생식이상 발견 못해 - 송전선 자기계 20밀리 가우스 수준	

※ 한국전력공사 Internet Homepage 전자파관련 자료집 참조

최근의 법원판결을 통해서도 부산고법은 판결문에서 「송전철탑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해 아직 학계의 논란이 있고 국가재정 형편상 전자파 차단을 위한 송전선로 지중화가 시기상조로 전자파에 의한 건강침해를 이유로 공사를 중지할 수 없다」고 밝혀 전자파의 유해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현재 전국에 산재해 있는 변전소에 1,600여명의 한전 직원들이 3교대로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으나 매년 실시되고 있는 정밀건강진단에서 변전소 근무직원들이 암이나 백혈병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어떠한 증상도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한전측은 전자파의 유해성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본다. 이러한 홍보는 지역주민들의 전자파의 유해성에 대한 공포내지는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결과적으로 송전선로 등 비선호시설의 입지를 반대하는 님비현상을 완화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 VI 장 결 론

본 연구는 한국전력측이 추진중인 154kV 성산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이 지역 주민들의 님비현상으로 인해 그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실정에 착안하여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사업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규명하고 님비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설문의 분석결과 나타난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사업추진과정에서 실물자산만을 손실보상의 대상으로 보아 주민의 생활권이나 환경권과 같은 권리는 전혀 보상이 되지 않을뿐 더러 주변지역의 지가하락에 대해서도 보상이 이루어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즉 비용과 편익의 불일치로 인해 지역주민들은 그들이 치러야 하는 비용에 비하여 그들이 누릴 수 있는 편익이 작다고 느끼고 있었다.

둘째, 주민들은 사업시행자인 한전의 대화노력 미흡, 주민과 한전간의 불신감, 한전의 권위주의로 인해 서로간의 대화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하였다.

셋째, 주민들은 한전측의 송전선로 사업정보의 공개수준에 대해서도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원인으로는 한전측이 정보공개에 매우 소극적이고 주민참여의 시기가 부적절한데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주민들은 주민참여 수준에 대해서도 불만족하다는 지적을 하였는데 그 원인으로는 주민참여가 사업계획 초기단계에서부터 이루어지지 않고 사업이 이미 확정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시기의 부적절성과 공람, 주민설명회, 공청회개최 등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주민참여가 제한되는 점, 그리고 제공된 사업정보가 전문적인 용어로 되어있어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이에 못지 않게 사업시행자측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주민참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지적하였다.

다섯째, 환경영평가에 있어서 평가주체가 사업시행자인 관계로 얼마든지 사업시행자가 그들에게 유리하게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수 있다는 점, 객관적 지침의 부재로 자의성의 개입소지, 평가대상의 제한으로 환경파괴를 조장할 수 있다는 점,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공청회시 환경전문단체의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스스로 공정성과 타당성을 상실하는 점을 지적하였다.

여섯째, 전자파의 유해성의 문제로서 지역주민들은 전자파가 건강에 해를 줄 것이라는 우려를 송전선로 입지반대의 중요 요인의 하나로 지적하였다.

이러한 조사분석의 결과 규명된 문제점을 통하여 도출된 비선호시설 입지선정에 있어서 님비현상의 해결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개발사업중에서도 특히 비선호시설의 입지를 반대하는 가장 큰 요인은 지가하락 등 경제적인 요인으로서 지가 손실보상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이 일차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손실보상 규모의 적정화를

이뤄 비용과 편익 불일치를 해소하여야 하며 개별적인 보상과 함께 간접적인 보상방안으로 주민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주민숙원사업의 적극 활용이 바람직하다.

둘째, 사업시행자와 행정당국은 비선호시설의 기피현상 이른바 NIMBY현상을 부정적으로만 인식하는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이를 일반적인 현상으로 인정하여 서로를 진정한 대화의 상대로 인식,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점을 찾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셋째, 사업시행자측은 지역주민과 함께 하지 않는 지역개발사업은 수행될 수 없음을 인식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하여 적시·적절한 사업정보를 전문적인 용어보다는 지역주민이 알기 쉬운 용어로 전달하고 사업추진을 지역주민과 함께 한다는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

넷째, 사업에 대한 정당성 확보와 더 나은 정책방향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설명회와 공청회의 시기와 내용에 대한 홍보에 더욱 주력함은 물론 초기 정책결정 과정에서부터 시설입지 등의 정책시행 과정, 그리고 비선호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련된 사후과정에 이르기까지 사업추진의 전 과정에 걸쳐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다섯째, 환경영향평가제도 및 경관영향평가에 대한 객관적인 지침마련과 함께 별도의 중립적인 평가기관이 설립되어 평가결과에 대한 공정성과 타당성 확보를 기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송전선로에서 나오는 전자파 등 비선호시설의 안전성에 대해 홍보를 통한 정확한 지식과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지역주민들이 비선호시설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갖는 주된 요인 중의 하나는 안정성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많은 수의 지역주민이 비선호시설의 위험성에 대한 지식과 정보를 매스미디어를 통해 얻고 있음을 볼 때 언론의 홍보기능이 매우 중요하며 국민의 이해와 협력을 높이기 위해서 언론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상에서 제주지역 성산분기 송전선로사업의 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을 통해 비선호시설 입지선정에 있어서 님비현상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사례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은 그 자체에 한계가 있는데다가 선정된 사례가 하나뿐이어서 상호 비교분석을 할 수 없었던 것 역시 본 연구의 한계였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본 연구는 사례분석과 설문조사를 통하여 특정한 정책의 동태적 측면에 대한 질적, 양적 분석을 동시에 행함으로써 님비현상의 해결방안에 대한 관점을 이해하는데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가. 국내서적

- 김홍식, 「지역이기주의 극복을 위한 정책연구」, 한국지방연구원, 1993.
김갑성·강신겸·최진우, 「협오시설 입지갈등의 합리적 해소방안」, 삼성경제연구소, 1998.
부만근, 「제주지역 주민운동론」, 제주대출판사, 1997.
안문석, 「환경행정론」, 법문사, 1995.
최상복, 「환경학개론」, 배영출판사, 1987.
최창호, 「지방자치학」, 삼영사, 1995.
_____, 「지방자치제도론」, 삼영사, 1998.

나. 국내논문

- 심상균, 「님비현상의 효율적 극복방안」, 경북대 석사학위논문, 1994.
육동일, 「지역·집단이기주의에 관한 실증적 연구」, 연세대 박사학위논문, 1995.
한상철,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주민행태에 관한 연구 - 집단민원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2.

다. 정기간행물

- 김길수, 「협오시설의 입지갈등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제21집, 1995.
김영수, 「지역이기주의의 극복과 지방의회의 당면과제」, 중앙행정논총, 제7권, 1993.
김병진,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향」, 한국행정연구, 1995년 가을호.
권해수, 「지방자치시대의 환경정책」, 지방자치연구, 1995년 11월호.
부만근, 「집단민원의 추세와 해소방안」, 서귀포시 의회보, 창간호, 1992.
_____, 「지역개발관련 집단민원에 대한 대처방안」, 사회개발연구, 제10집.
_____, 「지방행정에 있어서 주민참여 활성화방안, 사회발전연구」, 제14집, 1998.

이달곤, 「지역이기주의의 원인과 합리적인 해소방안」, 지방행정, 1991년 6월호.
 안성호, 「행정과 절차적 정의」, 한국행정학보 제25권 제1호, 1991.
 양병이, 「환경영향평가제도와 지역개발」, 지방행정, 1992년 8월호.
 양홍석, 「NIMBY현상의 원인과 극복방안」, 고시행정, 1991.
 유해운, 오창택, 「비선호시설 입지확보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연구, 제8권 제2호, 1996.
 정세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지방재정, 1991년 가을호.
 최외출, 「지역발전을 위한 지역이기주의적 증후의 해소방안」 새마을 지역 개발논총, 제13집, 1992.

라. 기업자료 및 법령

한국원자력연구소 부설 원자력 제2연구소, 해외출장보고서, 1991.
 한국전력공사 Internet Homepage 전자파관련 자료집

2. 외국문헌

D.H.Kerr, The Logic of Policy and Successful Policies, Policy Science, Vol. 7, 1978.
 F.J.Popper, "LULUS", Resources, 1983.
 Fiorino Danie "Environmental Risk and Democratic Process : A Critical Review" : Columbia Journal of Environmental Law 14, 1989.
 John J. Pitney, Jr., "Bile Barrel Politics : Siting Unwanted Facilities" ,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Management, vol. 3, 1984.
 Smith, D.M, Human Geograph : A Welfare Approach, New York : st, Martine Press, 1977.
 岩崎忠夫, 住民參加論(東京: 第一法規),1984
 本田 弘, 情報公開制度論(東京 : 北樹出版社), 1988
 五十風敬喜, 情報公開と 現代(東京 : 日本評論社), 1992

부 록

1. 설 문 지

2. 조 사 표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부록>

1. 설 문 지

154kV 성산분기 송전선로 건설에 대한 지역주민 여론조사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

먼저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설문조사는 현재 추진중인 154kV 성산분기
송전선로 설치와 관련된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귀하의 고견을 참고코자 하는 것입니다.

귀하께서 답해주신 내용은 익명으로 오직 학술적인
연구만을 목적으로 통계처리되오니 이점 양지하시고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평소 느끼신 점을 솔직하게
말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하의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1999년 9월

제주대학교 행정대학원

한 홍 식 올림
(TEL.757-1353)

인구통계학적 조사

1. 귀하의 성별은?

- ① 남 () ② 여()

2. 귀하의 연령은?

- ① 20세 미만 () ② 20세 ~ 29세 ()
③ 30세 ~ 39세 () ④ 40대 ~ 49세 ()
⑤ 50세 이상 ()

3. 귀하의 교육정도는?

- ① 무학() ② 국졸()
③ 중졸() ④ 고졸()
⑤ 대졸() ⑥ 대학원 이상()

4. 귀하의 소득수준은?

- ① 소득 없음 ()
② 월 100만원 미만 ()
③ 월 100만원 ~ 149만원 ()
④ 월 150만원 ~ 199만원 ()
⑤ 월 200만원 ~ 249만원 ()
⑥ 월 250만원 이상 ()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5. 귀하가 현재의 거주지에 사신 기간은?

- ① 5년 미만 () ② 5년 ~ 9년 ()
③ 10년 ~ 14년 () ④ 15년 ~ 19년 ()
⑤ 20년 이상()


6. 귀하의 직업은 ?

- ① 농업 ② 축산업 ③ 수산업
④ 자영업 ⑤ 회사원 ⑥ 기 타

조사 문항

♣ 154kV 성산분기 송전선로란 한국전력이 전력수요가 급증하는 성산지역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건설추진 중인 전력공급 선로를 말합니다.

I. 한국전력의 전력서비스 만족도

1. 평소 한국전력의 이미지에 호감도는 어느 정도십니까 ?
① 매우 좋다 ② 좋다 ③ 그저 그렇다 ④ 좋지 않다
⑤ 매우 좋지 않다
2. 전력공급 서비스수준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
① 매우 만족 ② 대체로 만족 ③ 그저 그렇다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3. 최근 1 년사이에 한전에 민원성 전화나 방문을 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4. 만일 있으시다면 몇 회입니까 ?
(전화 및 방문 모두 포함, 3번 문항의 ①번 응답자에 한함)
① 1회 ② 2회 ~ 3회 ③ 4회 ~5회 ④ 6회 이상
5. 민원전화 또는 방문 후 불만사항에 대한 해결의 만족도는 어느정도입니까 ?
(3번 문항의 ①번 응답자에 한해 대답해주십시오)
① 매우 만족 ② 대체로 만족 ③ 그저 그렇다 ④ 불만족
⑤ 매우 불만족

II. 154kv 송전선로 사업에 대한 필요성 인식도

6. 한전에서 추진중인 154kV 송전선로에 대하여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② 없다

7.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다면 주로 어느 매체를 통해서 입니까 ?

- ① 신문·잡지 ② TV방송
- ③ 라디오 ④ 기타(주민공청회 또는 주민설명회 등)

8. 154kV 송전선로 계획과 귀하의 토지와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 ① 토지에 선로가 경과하고 있다 ② 토지가 송전선로와 바로 인접하고 있다
- ③ 토지가 선로 주변지역이다 ④ 전혀 관계가 없다.

9. 만일 송전선로가 귀하의 토지를 경과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① 보상이 충분하면 응하겠다
- ② 어떠한 경우든 반대한다
- ③ 사업자가 보상하는대로 따르겠다
- ④ 공익사업이니 보상없이도 따르겠다

10. 귀하께서는 공공시설로서 송전선로를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① 꼭 필요하다
- ② 필요하기는 하지만 내 소유의 토지에는 안된다
- ③ 필요하기는 하지만 내 소유 및 타인 소유의 토지에도 안된다
- ④ 필요없는 시설이다



11. 154kV 성산분기 송전선로 사업에 대해 귀하는 찬성, 반대 어느 쪽입니까?

- ① 찬 성
- ② 전면 지중화 조건부 찬성
- ③ 일부 구간(오름주변 지역) 지중화 조건부 찬성
- ④ 마을 주변지역 우회 조건부 찬성
- ⑤ 반 대

12. 성산분기 송전시설을 반대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십니까 ?

(11번 문항의 ⑤번 응답자만 대답해주십시오)

- ① 오름환경 파괴
- ② 손실보상제도에 대한 불신
- ③ 주민참여 미흡
- ④ 위해성(전자파 등)에 대한 우려
- ⑤ 지가하락 및 손실보상 등 경제적인 이유로

III. 154 kV 송전선로 건설과정에서의 문제점

가. 송전선로 용지취득에 따른 손실보상에 대한 만족도

13. 현재의 실물자산 만을 보상의 대상으로 보는 재물보상의 원칙에 의한 손실보상제도를 귀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① 매우 적절한 수준이다 ② 적절한 수준이다
③ 다소 미흡하다 ④ 매우 미흡하다
14.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합리적인 보상수준은?
① 현 제도가 합당하다
② 지가하락분까지 보상해야 한다.
③ 환경권 및 생활권 침해에 대해서도 보상이 되어야한다.(이주대책, 생활대책, 고용대책, 지역개발지원까지 포함하는 폭넓은 보상)
④ 모르겠다.
15. 귀하께서는 현재 공공기관에 별이는 각종 개발사업에서 손실보상 금액(용지매수 금액)이 시가에 어느 정도까지 근접한다고 보십니까?
① 실제가의 30%~40% ② 실제가의 50%~60%
③ 실제가의 70%~80% ④ 실제가의 90%~100%
16. 귀하께서는 송전선로의 입지로 인한 경제적, 환경적 피해에 비해 그 시설로 얻는 편익은 시설이 입지 하지 않은 타 지역에 비해서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크다 ② 대체로 크다 ③ 그저 그렇다
④ 별로 없다 ⑤ 전혀 없다

나. 당사자간 의사소통 문제에 대한 인식도

17. 귀하께서는 사업시행자측과 지역주민간에 대화(협상)가 원활성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① 매우 잘 이루어졌다
② 잘 이루어진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⑤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18. 대화 및 협상을 가로 막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앞 문항에서 ④과 ⑤에 답하신 분만 대답해주시오)

- ① 서로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권위주의 때문
- ② 사업시행자측의 대화 및 협상노력 부재
- ③ 상호간의 불신감
- ④ 모르겠다

19. 당사자간에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방안은?

- ① 서로를 진정한 협상의 파트너로서 인정하는 민주적인 자세
- ② 사업시행자측의 권위주의 타파
- ③ 상호간에 편견을 버림
- ④ 당사자간 대화에 통로 확대

다. 송전선로 사업에 대한 정보공개 수준도

20. 성산분기 송전선로 사업에 대한 한국전력의 정보공개 수준은 어떠하다고 보십니까?

- ① 매우 적극적이다
- ② 다소 적극적이다
- ③ 보통이다
- ④ 다소 소극적이다
- ⑤ 매우 소극적이다.



21. 귀하께서는 공공사업에 대한 정보공개가 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①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 ②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 ③ 지역주민과 사업시행자간에 신뢰관계 구축을 위하여
- ④ 공공사업의 홍보를 위하여

22. 귀하께서는 성산분기 송전선로 사업정보의 공개가 어느 시기부터 이루어졌어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 ② 경과지 검토단계부터
- ③ 예비답사 단계부터
- ④ 본답사 단계부터
- ⑤ 현행대로

※ 참고

1. 현재 입지선전과정은 사업계획 수립-경과지 검토-예비답사- 본답사-환경영향 평가순으로 진행됨.
2. 경과지 검토과정에서 3-4개의 후보지 검토가 이루어지고 예비답사는 3-4개 후보지에 대한 현지답사 및 자료조사가, 본답사에서는 최적후보지에 대한 구체적인 답사 및 자료 조사가 이루어짐

23. 귀하께서는 송전선로 사업정보가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히 그리고 적시에 제공된다면 지역주민의 입지반대 여론을 줄이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을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크게 도움 ② 대체로 도움
③ 별로 도움이 안됨 ④ 전혀 도움이 안됨

라. 송전선로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도

24. 성산분기 송전선로 사업추진에 있어서 주민참여의 수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만족할만한 수준 ② 대체로 만족할만한 수준 ③ 그저 그렇다
④ 별로 만족하지 못함 ⑤ 전혀 불만족

25. 주민참여 수준에 불만족 하신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4번 문항 ④, ⑤ 응답자만 대답해주십시오)

- ① 사업시행자측의 주민참여에 대한 부정적 인식
② 지역주민들의 무관심
③ 제공된 사업정보가 이해하기 어렵다
④ 공람 및 공청회 주민설명회 등의 개최에 대한 홍보부족
⑤ 주민참여(의견수렴)시기의 부적절

26. 바람직한 주민참여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 ① 공청회 ② 주민설명회 ③ 주민협의회 및 자문단
④ 주민감시반(지역주민과 환경단체 참여) ⑤ 주민투표제
⑥ 여론수렴반(여론모니터, 설문조사, 간담회)
⑦ 반상회

마.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인식

27. 귀하께서는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자연환경 훼손의 사전적 예방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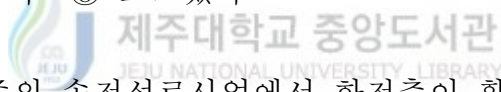
- ① 매우 크게 기여 ② 대체로 기여 ③ 그저 그렇다
- ④ 대체로 기여 못함 ⑤ 전혀 기여 못함

28. 환경영향평가제도(경관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앞 문항의 ③, ④, ⑤ 응답자만 대답해주시시오)

- ① 평가대상의 제한문제(일정규모 이상으로 제한하여 규모가 작은 사업은 평가대상에서 제외)
- ② 객관적 지침의 부재로 평가의 자의성 개입 소지
- ③ 평가주체가 사업시행자측이고 실제평가가 사업시행자측이 선정한 용역 기관에 의해 이루어져 사업시행자측에 유리하게 평가서가 작성될 수 있는 점
- ④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주민공청회시에 전문성을 구비한 환경전문 단체의 참여제한.

29. 환경영향평가가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환경파괴의 합리적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그렇다 ② 대체로 그렇다 ③ 대체로 그렇지 않다
- ④ 결코 그렇지 않다 ⑤ 모르겠다



30. 귀하께서는 기존의 송전선로사업에서 한전측이 환경영향평가서를 어느 정도 이행하였다고 보십니까?

- ① 매우 잘 이행 ② 대체로 이행 ③ 그저 그렇다
- ④ 별로 이행되지 않음 ⑤ 전혀 이행하지 않음

바. 송전선로의 전자파 위험성에 대한 문제인식도

31. 154kV 성산분기 송전선로의 전자파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 ① 매우 유해할 것이다
- ② 다소 유해할 것이다
- ③ 그저 그렇다
- ④ 그리 유해하지 않을 것이다
- ⑤ 전혀 유해하지 않을 것이다

32. 전자파가 위해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어느 매체를 통하여 들으셨습니까?

- ① T. V ② 신문·잡지 ③ 라디오 ④ 주위 사람들
- ⑤ 막연히 그럴 것이라는 추측

2. 조사분석표

<표 4-3> 한국전력에 대한 이미지 호감도 분석

항 목 (비율)		평소 한국전력에 대한 이미지 호감도는 어느 정도십니까 ?					계 (비율%)	χ^2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 통	좋지 않다	매우 좋지 않다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 별	남	10(2.0)	77(15.6)	262(53.0)	104(21.1)	41(8.3)	494(100)	1.807
	여	9(2.5)	61(17.3)	186(52.7)	75(21.2)	22(6.2)	353(100)	NS
연 령	20세미만	3(5.5)	8(14.5)	26(47.3)	15(27.3)	3(5.5)	55(100)	44.786 p<.001
	20세이상 30세미만	6(4.1)	20(13.5)	77(52.0)	33(22.3)	12(8.1)	148(100)	
	30세이상 40세미만	1(0.8)	26(19.8)	64(48.9)	26(19.8)	14(10.7)	131(100)	
	40세이상 50세미만	-	55(27.0)	100(49.0)	36(17.6)	13(6.4)	204(100)	
	50세이상	9(2.9)	29(9.4)	181(58.6)	69(22.3)	21(6.8)	309(100)	
교 육	무학	5(3.2)	12(7.6)	92(58.6)	40(25.5)	8(5.1)	157(100)	50.707 p<.001
	국졸	4(2.1)	34(18.0)	105(55.6)	37(19.6)	9(4.8)	189(100)	
	중졸	3(1.7)	36(20.9)	88(51.2)	34(19.8)	11(6.4)	172(100)	
	고졸	1(0.5)	44(21.7)	101(49.8)	44(21.7)	13(6.4)	203(100)	
	대졸	6(4.9)	12(9.8)	61(49.6)	23(18.7)	21(17.1)	123(100)	
	대학원이상	-	-	1(33.3)	1(33.3)	1(33.3)	3(100)	
소 득	소득 없음	4(4.9)	15(18.5)	36(44.4)	23(28.4)	3(3.7)	81(100)	27.936 NS
	월 100만원 미만	13(3.4)	69(18.0)	204(53.3)	72(18.8)	25(6.5)	383(100)	
	월 100만원~150만원 미만	1(0.4)	37(14.0)	146(55.3)	57(21.6)	23(8.7)	264(100)	
	월 150만원~200만원 미만	-	15(15.8)	48(50.5)	22(23.2)	10(10.5)	95(100)	
	월 200만원~250만원 미만	-	-	6(85.7)	-	1(14.3)	7(100)	
월 250만원 이상	1(5.9)	2(11.8)	8(47.1)	5(29.4)	1(5.9)	17(100)		
거 주 지	구좌읍 하도리	11(2.5)	74(16.9)	210(48.1)	96(22.0)	46(10.5)	437(100)	32.785 p<.001
	성산읍 수산 2리	1(0.4)	42(16.2)	142(54.6)	58(22.3)	17(6.5)	260(100)	
	구좌읍 송당리	7(4.7)	22(14.7)	96(64.0)	25(16.7)	-	150(100)	
거 주 기 간	5년 미만	4(18.2)	2(9.1)	12(54.5)	2(9.1)	2(9.1)	22(100)	47.587 p<.001
	5년 이상 10년 미만	2(5.6)	13(36.1)	10(27.8)	10(27.8)	1(2.8)	36(100)	
	10년 이상 15년 미만	-	7(12.3)	33(57.9)	13(22.8)	4(7.0)	57(100)	
	15년 이상 20년 미만	-	38(16.0)	127(53.4)	50(21.0)	20(8.4)	238(100)	
	20년 이상	3(1.3)	78(15.8)	266(53.8)	104(21.1)	36(7.3)	494(100)	
직 업	농 업	8(1.4)	79(14.1)	311(55.5)	122(21.8)	40(7.1)	560(100)	42.501 p<.02
	축 산 업	-	-	-	2(66.7)	1(33.3)	3(100)	
	자 영 업	1(1.8)	16(28.6)	28(50.0)	11(19.6)	-	56(100)	
	회 사 원	-	8(24.2)	20(60.6)	4(12.1)	1(3.0)	33(100)	
	공 무 원	-	3(33.3)	3(33.3)	2(22.2)	1(11.1)	9(100)	
	관 광 업	-	-	1(100)	-	-	1(100)	
	기 타	10(5.4)	32(17.3)	85(45.9)	38(20.5)	20(10.8)	185(100)	
	계	19(2.2)	138(16.3)	448(52.9)	179(21.1)	63(7.4)	847(100)	

<표 4-5> 대고객서비스 만족도 분석

항 목 (비율)		한전의 대고객서비스 만족도는 어떠하십니까 ?					계 (비율%)	χ^2
		매 우 만 족	대체로 만족	보 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 별	남	6(1.2)	117(23.7)	224(45.4)	106(21.5)	40(8.1)	493(100)	1.274
	여	5(1.4)	88(24.9)	155(43.9)	82(23.2)	23(6.5)	353(100)	NS
연 령	20세미만	2(3.6)	13(23.6)	21(38.2)	12(21.8)	7(12.7)	55(100)	32.179 p<.01
	20세이상 30세미만	1(0.7)	52(35.1)	56(37.8)	27(18.2)	12(8.1)	148(100)	
	30세이상 40세미만	2(1.5)	29(22.1)	70(53.4)	24(18.3)	6(4.6)	131(100)	
	40세이상 50세미만	-	43(21.1)	102(50.0)	50(24.5)	9(4.4)	204(100)	
	50세이상	6(1.9)	68(22.1)	130(42.2)	75(24.4)	29(9.4)	308(100)	
교 육	무학	3(1.9)	22(14.0)	79(50.3)	44(28.0)	9(5.7)	157(100)	29.952 NS
	국졸	2(1.1)	48(25.4)	77(40.7)	47(24.9)	15(7.9)	189(100)	
	중졸	3(1.8)	42(24.6)	81(47.4)	37(21.6)	8(4.7)	171(100)	
	고졸	2(1.0)	52(25.6)	94(46.3)	38(18.7)	17(8.4)	203(100)	
	대졸	1(0.8)	41(33.3)	46(37.4)	22(17.9)	13(10.6)	123(100)	
	대학원이상	-	-	2(66.7)	-	1(33.3)	3(100)	
소 득	소득 없음	3(3.7)	30(37.0)	24(29.6)	17(21.0)	7(8.6)	81(100)	38.257 p<.01
	월 100만원 미만	5(1.3)	102(26.7)	172(45.0)	81(21.2)	22(5.8)	382(100)	
	월 100만원~150만원 미만	1(0.4)	48(18.2)	132(50.0)	62(23.5)	21(8.0)	264(100)	
	월 150만원~200만원 미만	1(1.1)	20(21.1)	41(43.2)	24(25.3)	9(9.5)	95(100)	
	월 200만원~250만원 미만	-	2(28.6)	5(71.4)	-	-	7(100)	
	월 250만원 이상	1(5.9)	3(17.6)	5(29.4)	4(23.5)	4(23.5)	17(100)	
거 주 지	구좌읍 하도리	7(1.6)	99(22.7)	185(42.3)	100(22.9)	46(10.5)	437(100)	27.364 p<.001
	성산읍 수산 2리	-	57(21.9)	128(49.2)	62(23.8)	13(5.0)	260(100)	
	구좌읍 송당리	4(2.7)	49(32.9)	66(44.3)	26(17.4)	4(2.7)	149(100)	
거 주 기 간	5년 미만	1(4.5)	9(40.9)	7(31.8)	4(18.2)	1(4.5)	22(100)	34.528 p<.01
	5년 이상 10년 미만	-	14(38.9)	15(41.7)	7(19.4)	-	36(100)	
	10년 이상 15년 미만	-	9(15.8)	40(70.2)	6(10.5)	2(3.5)	57(100)	
	15년 이상 20년 미만	2(0.8)	59(24.8)	102(42.9)	62(26.1)	13(5.5)	238(100)	
	20년 이상	8(1.6)	114(23.1)	215(43.6)	109(22.1)	47(9.5)	493(100)	
직 업	농업	6(1.1)	106(19.0)	271(48.5)	135(24.2)	41(7.3)	559(100)	50.059 p<.01
	축산업	-	-	2(66.7)	1(33.3)	-	3(100)	
	자영업	-	23(41.1)	24(42.9)	9(16.1)	-	56(100)	
	회사원	1(3.0)	15(45.5)	11(33.3)	3(9.1)	3(9.1)	33(100)	
	공무원	-	1(11.1)	6(66.7)	2(22.2)	-	9(100)	
	관광업	-	-	1(100)	-	-	1(100)	
	기타	4(2.2)	60(32.4)	64(34.6)	38(20.5)	19(10.3)	185(100)	
	계	11(1.3)	205(24.2)	379(44.8)	188(22.2)	63(7.4)	846(100)	

<표 4-8> 한전에 민원성 전화 또는 방문의 빈도수 분석

인구통계학적 특성		항 목 (비율)				계 (비율%)	χ^2
		만일 민원성 전화 또는 방문이 경험이 있으시다면 몇회입니까 ? (최근 1년 사이))					
		1회	2회~3회	4회~5회	6회 이상		
성 별	남	82(36.3)	96(42.5)	33(14.6)	15(6.6)	226(100)	2.970
	여	68(43.3)	65(41.4)	16(10.2)	8(5.1)	157(100)	NS
연 령	20세미만	9(34.6)	4(15.4)	7(26.9)	6(23.1)	26(100)	41.933 p<.001
	20세이상 30세미만	32(51.6)	17(27.4)	7(11.3)	6(9.7)	62(100)	
	30세이상 40세미만	20(39.2)	21(41.2)	6(11.8)	4(7.8)	51(100)	
	40세이상 50세미만	25(27.2)	53(57.6)	11(12.0)	3(3.3)	92(100)	
	50세이상	64(42.1)	66(43.4)	18(11.8)	4(2.6)	152(100)	
교 육	무학	28(36.8)	37(48.7)	8(10.5)	3(3.9)	76(100)	41.970 p<.001
	국졸	26(34.2)	37(48.7)	7(9.2)	6(7.9)	76(100)	
	중졸	32(36.8)	43(49.4)	8(9.2)	4(4.6)	87(100)	
	고졸	25(29.1)	35(40.7)	21(24.4)	5(5.8)	86(100)	
	대졸	38(67.9)	8(14.3)	5(8.9)	5(8.9)	56(100)	
	대학원이상	1(50.0)	1(50.0)	-	-	2(100)	
소 득	소득 없음	15(38.5)	7(17.9)	10(25.6)	7(17.9)	39(100)	46.688 p<.001
	월 100만원 미만	70(37.8)	90(48.6)	17(9.2)	8(4.3)	185(100)	
	월 100만원~150만원 미만	46(43.8)	41(39.0)	12(11.4)	6(5.7)	105(100)	
	월 150만원~200만원 미만	9(20.9)	22(51.2)	10(23.3)	2(4.7)	43(100)	
	월 200만원~250만원 미만	4(80.0)	1(20.0)	-	-	5(100)	
	월 250만원 이상	6(100)	-	-	-	6(100)	
거 주 지	구좌읍 하도리	75(41.4)	71(39.2)	25(13.8)	10(5.5)	181(100)	2.291 NS
	성산읍 수산 2리	51(38.1)	60(44.8)	14(10.4)	9(6.7)	134(100)	
	구좌읍 송당리	24(35.3)	30(44.1)	10(14.7)	4(5.9)	68(100)	
거 주 기 간	5년 미만	2(25.0)	4(50.0)	2(25.0)	-	8(100)	20.813 NS
	5년 이상 10년 미만	1(7.1)	9(64.3)	3(21.4)	1(7.1)	14(100)	
	10년 이상 15년 미만	11(37.9)	13(44.8)	2(6.9)	3(10.3)	29(100)	
	15년 이상 20년 미만	38(36.5)	44(42.3)	10(9.6)	12(11.5)	104(100)	
	20년 이상	98(43.0)	91(39.9)	32(14.0)	7(3.1)	228(100)	
직 업	농업	95(36.8)	126(48.8)	29(11.2)	8(3.1)	258(100)	43.721 p<.001
	축산업	-	-	1(50.0)	1(50.0)	2(100)	
	자영업	5(25.0)	8(40.0)	4(20.0)	3(15.0)	20(100)	
	회사원	4(30.8)	5(38.5)	3(23.1)	1(7.7)	13(100)	
	공무원	5(83.3)	1(16.7)	-	-	6(100)	
	관광업	-	1(100)	-	-	1(100)	
	기타	41(49.4)	20(24.1)	12(14.5)	10(12.0)	83(100)	
	계	150(39.2)	161(42.0)	49(12.8)	23(6.0)	383(100)	

<표4-10> 민원사항 해결에 관한 만족도 분석

항 목 (비율)		민원전화 및 방문후 불만사항에 대한 문제 해결만족도는 어느정도입니까?					계 (비율%)	χ^2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보 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성 별	남	8(3.6)	48(21.5)	87(39.0)	68(30.5)	12(5.4)	223(100)	5.912
	여	8(5.1)	47(29.7)	60(38.0)	39(24.7)	4(2.5)	158(100)	NS
연 령	20세미만	3(11.5)	2(7.7)	5(19.2)	15(57.7)	1(3.8)	26(100)	59.288 p<.001
	20세이상 30세미만	3(4.8)	19(30.6)	16(25.8)	15(24.2)	9(14.5)	62(100)	
	30세이상 40세미만	4(7.5)	20(37.7)	11(20.8)	17(32.1)	1(1.9)	53(100)	
	40세이상 50세미만	2(2.2)	24(26.4)	43(47.3)	20(22.0)	2(2.2)	91(100)	
	50세이상	4(2.7)	30(20.1)	72(48.3)	40(26.8)	3(2.0)	149(100)	
교 육	무학	1(1.3)	14(18.7)	37(49.3)	20(26.7)	3(4.0)	75(100)	46.172 p<.001
	국졸	1(1.3)	20(26.0)	32(41.6)	24(31.2)	-	77(100)	
	중졸	5(5.8)	24(27.9)	37(43.0)	17(19.8)	3(3.5)	86(100)	
	고졸	4(4.7)	21(24.7)	27(31.8)	32(37.6)	1(1.2)	85(100)	
	대졸	5(8.9)	15(26.8)	13(23.2)	14(25.0)	9(16.1)	56(100)	
	대학원이상	-	1(50.0)	1(50.0)	-	-	2(100)	
소 득	소득 없음	2(5.1)	8(20.5)	10(25.6)	18(46.2)	1(2.6)	39(100)	40.090 p<.01
	월 100만원 미만	2(1.1)	49(26.8)	75(41.0)	46(25.1)	11(6.0)	183(100)	
	월 100만원~150만원 미만	7(6.6)	30(28.3)	36(34.0)	30(28.3)	3(2.8)	106(100)	
	월 150만원~200만원 미만	3(7.1)	7(16.7)	20(47.6)	11(26.2)	1(2.4)	42(100)	
	월 200만원~250만원 미만	2(40.0)	1(20.0)	2(40.0)	-	-	5(100)	
	월 250만원 이상	-	-	4(66.7)	2(33.3)	-	6(100)	
거 주 지	구좌읍 하도리	11(6.1)	51(28.5)	58(32.4)	50(27.9)	9(5.0)	179(100)	9.301 NS
	성산읍 수산 2리	4(3.0)	28(20.9)	60(44.8)	38(28.4)	4(3.0)	134(100)	
	구좌읍 송당리	1(1.5)	16(23.5)	29(42.6)	19(27.9)	3(4.4)	68(100)	
거 주 기 간	5년 미만	1(11.1)	4(44.4)	1(11.1)	3(33.3)	-	9(100)	24.001 NS
	5년 이상 10년 미만	2(13.3)	8(53.3)	2(13.3)	3(20.0)	-	15(100)	
	10년 이상 15년 미만	1(3.4)	9(31.0)	9(31.0)	10(34.5)	-	29(100)	
	15년 이상 20년 미만	3(2.9)	24(23.5)	41(40.2)	26(25.5)	8(7.8)	102(100)	
	20년 이상	9(4.0)	50(22.1)	94(41.6)	65(28.5)	8(3.5)	226(100)	
직 업	농 업	6(2.3)	62(24.2)	116(45.3)	63(24.6)	9(3.5)	256(100)	48.942 p<.01
	축 산 업	-	-	-	2(100)	-	2(100)	
	자 영 업	2(10.0)	3(15.0)	8(40.0)	7(35.0)	-	20(100)	
	회 사 원	1(7.7)	6(46.2)	2(15.4)	4(30.8)	-	13(100)	
	공 무 원	2(33.3)	-	1(16.7)	3(50.0)	-	6(100)	
	관 광 업	-	1(100)	-	-	-	1(100)	
	기 타	5(6.0)	23(27.7)	20(24.1)	28(33.7)	7(8.4)	83(100)	
	계	16(4.2)	95(24.9)	147(38.6)	107(28.1)	16(4.2)	381(100)	

<표 4-12> 성산분기 송전선로에 대한 인지도 분석

항 목 (비율)		한전에서 추진중인 154kV 송전선로에 대하여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계 (비율%)	χ^2
		있 다	없 다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 별	남	381(77.1)	113(22.9)	494(100)	38.010 p<.001
	여	202(57.2)	151(42.8)	353(100)	
연 령	20세미만	24(43.6)	31(56.4)	55(100)	17.558 p<.01
	20세이상 30세미만	103(69.6)	45(30.4)	148(100)	
	30세이상 40세미만	93(71.0)	38(29.0)	131(100)	
	40세이상 50세미만	143(70.1)	61(29.9)	204(100)	
	50세이상	220(71.2)	89(28.8)	309(100)	
교 육	무학	91(58.0)	66(42.0)	157(100)	25.558 p<.001
	국졸	122(64.6)	67(35.4)	189(100)	
	중졸	125(72.7)	47(27.3)	172(100)	
	고졸	139(68.5)	64(31.5)	203(100)	
	대졸	103(83.7)	20(16.3)	123(100)	
	대학원이상	3(100)	-	3(100)	
소 득 특	소득 없음	46(56.8)	35(43.2)	81(100)	20.328 p<.01
	월 100만원 미만	251(65.5)	132(34.5)	383(100)	
	월 100만원~150만원 미만	187(70.8)	77(29.2)	264(100)	
	월 150만원~200만원 미만	78(82.1)	17(17.9)	95(100)	
	월 200만원~250만원 미만	7(100)	-	7(100)	
	월 250만원 이상	14(82.4)	3(17.6)	17(100)	
거 주 지	구좌읍 하도리	286(65.4)	151(34.6)	437(100)	6.792 p<.05
	성산읍 수산 2리	182(70.0)	78(30.0)	260(100)	
	구좌읍 송당리	115(76.7)	35(23.3)	150(100)	
거 주 기 간	5년 미만	19(86.4)	3(13.6)	22(100)	20.449 p<.001
	5년 이상 10년 미만	18(50.0)	18(50.0)	36(100)	
	10년 이상 15년 미만	35(61.4)	22(38.6)	57(100)	
	15년 이상 20년 미만	148(62.2)	90(37.8)	238(100)	
	20년 이상	363(73.5)	131(26.5)	494(100)	
직 업	농 업	388(69.3)	172(30.7)	560(100)	8.708 NS
	축 산 업	2(66.7)	1(33.3)	3(100)	
	자 영 업	33(58.9)	23(41.1)	56(100)	
	회 사 원	18(54.5)	15(45.5)	33(100)	
	공 무 원	8(88.9)	1(11.1)	9(100)	
	관 광 업	1(100)	-	1(100)	
	기 타	133(71.9)	52(28.1)	185(100)	
	계	583(68.8)	264(31.2)	847(100)	

<표 4-14> 성산분기 송전선로 사업정보를 접한 매체 분석

항 목 (비율)		154kV송전선로에 대하여 들어보신적이 있으 시다면 주로 어느 매체를 통해서 입니까 ?				계 (비율%)	χ^2
		신문, 잡지	TV 방송	라디오	기타(주민공 청회,설명회)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 별	남	85(22.1)	127(33.0)		173(44.9)	385(100)	11.420 p<.01
	여	51(24.1)	49(23.1)		109(51.4)	212(100)	
연 령	20세미만	4(13.3)	6(20.0)	1(3.3)	19(63.3)	30(100)	28.320 p<.01
	20세이상 30세미만	35(32.7)	39(36.4)	1(0.9)	32(29.9)	107(100)	
	30세이상 40세미만	24(26.1)	29(31.5)	-	39(42.4)	92(100)	
	40세이상 50세미만	27(18.5)	41(28.1)	-	78(53.4)	146(100)	
	50세이상	46(20.7)	61(27.5)	1(0.5)	114(51.4)	222(100)	
교 육	무학	23(25.0)	23(25.0)	1(1.1)	45(48.9)	92(100)	41.099 p<.001
	국졸	22(17.6)	30(24.0)	-	73(58.4)	125(100)	
	중졸	31(24.6)	33(26.2)	-	62(49.2)	126(100)	
	고졸	23(15.6)	49(33.3)	2(1.4)	73(49.7)	147(100)	
	대졸	37(35.6)	38(36.5)	-	29(27.9)	104(100)	
	대학원이상	-	3(100)	-	-	3(100)	
소 득 특	소득 없음	15(27.8)	12(22.2)	1(1.9)	26(48.1)	54(100)	15.589 NS
	월 100만원 미만	56(21.8)	88(34.2)	1(0.4)	112(43.6)	257(100)	
	월 100만원~150만원 미만	43(23.0)	49(26.2)	1(0.5)	94(50.3)	187(100)	
	월 150만원~200만원 미만	19(24.7)	21(27.3)	-	37(48.1)	77(100)	
	월 200만원~250만원 미만	3(42.9)	2(28.6)	-	2(28.6)	7(100)	
	월 250만원 이상	-	4(26.7)	-	11(73.3)	15(100)	
거 주 지	구좌읍 하도리	65(22.6)	115(39.9)	3(1.0)	105(36.5)	288(100)	37.759 p<.001
	성산읍 수산 2리	44(23.7)	35(18.8)	-	107(57.5)	186(100)	
	구좌읍 송당리	27(22.0)	26(21.1)	-	70(56.9)	123(100)	
거 주 기 간	5년 미만	3(15.8)	11(57.9)	-	5(26.3)	19(100)	12.100 NS
	5년 이상 10년 미만	5(27.8)	5(27.8)	-	8(44.4)	18(100)	
	10년 이상 15년 미만	9(26.5)	11(32.4)	-	14(41.2)	34(100)	
	15년 이상 20년 미만	34(22.4)	39(25.7)	2(1.3)	77(50.7)	152(100)	
	20년 이상	85(22.7)	110(29.4)	1(0.3)	178(47.6)	374(100)	
직 업	농 업	80(20.5)	110(28.1)	1(0.3)	200(51.2)	391(100)	29.081 p<.05
	축 산 업	-	-	-	2(100)	2(100)	
	자 영 업	6(18.2)	9(27.3)	-	18(54.5)	33(100)	
	회 사 원	6(31.6)	6(31.6)	1(5.3)	6(31.6)	19(100)	
	공 무 원	2(25.0)	5(62.5)	-	1(12.5)	8(100)	
	관 광 업	-	1(100)	-	-	1(100)	
	기 타	42(29.4)	45(31.5)	1(0.7)	55(38.5)	143(100)	
	계	136(22.8)	176(29.5)	3(0.5)	282(47.2)	597(100)	

<표 4-16> 성산분기 송전선로와 응답자의 토지와의 관련성 분석

항 목 (비율)		성산분기 송전선로와 귀하의 토지와는 어떤 상태입니까?				계 (비율%)	χ^2
		선로가 경 과 하 고 있 다	송 전 선 로 와 바로 인 접 하 고 있 다	선로 주변 지역이다	전혀 관계가 없다		
성 별	남	14(3.2)	62(14.2)	97(22.2)	264(60.4)	437(100)	9.505
	여	5(1.6)	27(8.9)	58(19.1)	214(70.4)	304(100)	p<.05
연 령	20세미만	-	2(4.7)	5(11.6)	36(83.7)	43(100)	36.581 p<.001
	20세이상 30세미만	1(0.7)	15(11.2)	21(15.7)	97(72.4)	134(100)	
	30세이상 40세미만	4(3.4)	7(5.9)	28(23.7)	79(66.9)	118(100)	
	40세이상 50세미만	7(3.8)	14(7.7)	42(23.0)	120(65.6)	183(100)	
	50세이상	7(2.7)	51(19.4)	59(22.4)	146(55.5)	263(100)	
교 육	무학	5(4.4)	19(16.8)	23(20.4)	66(58.4)	113(100)	22.462 NS
	국졸	5(3.0)	27(16.5)	32(19.5)	100(61.0)	164(100)	
	중졸	2(1.3)	16(10.5)	40(26.3)	94(61.8)	152(100)	
	고졸	6(3.2)	12(6.3)	34(18.0)	137(72.5)	189(100)	
	대졸	1(0.8)	14(11.7)	26(21.7)	79(65.8)	120(100)	
	대학원이상	-	1(33.3)	-	2(66.7)	3(100)	
소 득	소득 없음	1(1.3)	2(2.6)	7(9.1)	67(87.0)	77(100)	42.847 p<.001
	월 100만원 미만	5(1.5)	35(10.4)	68(20.2)	228(67.9)	336(100)	
	월 100만원~150만원 미만	11(4.9)	36(16.1)	53(23.8)	123(55.2)	223(100)	
	월 150만원~200만원 미만	2(2.5)	11(13.6)	21(25.9)	47(58.0)	81(100)	
	월 200만원~250만원 미만	-	1(14.3)	4(57.1)	2(28.6)	7(100)	
	월 250만원 이상	-	4(23.5)	2(11.8)	11(64.7)	17(100)	
거 주 지	구좌읍 하도리	2(0.5)	52(13.9)	75(20.0)	246(65.6)	375(100)	38.591 p<.001
	성산읍 수산 2리	16(7.4)	22(10.2)	56(25.9)	122(56.5)	216(100)	
	구좌읍 송당리	1(0.7)	15(10.0)	24(16.0)	110(73.3)	150(100)	
거 주 기 간	5년 미만	-	3(14.3)	3(14.3)	15(71.4)	21(100)	32.864 p<.01
	5년 이상 10년 미만	-	3(11.1)	3(11.1)	21(77.8)	27(100)	
	10년 이상 15년 미만	5(11.6)	5(11.6)	10(23.3)	23(53.5)	43(100)	
	15년 이상 20년 미만	7(3.3)	12(5.7)	43(20.5)	148(70.5)	210(100)	
	20년 이상	7(1.6)	66(15.0)	96(21.8)	271(61.6)	440(100)	
직 업	농 업	13(2.7)	69(14.3)	111(23.0)	290(60.0)	483(100)	99.324 p<.001
	축 산 업	2(100)-	-	-	-	2(100)	
	자 영 업	2(5.1)	3(7.7)	7(17.9)	27(69.2)	39(100)	
	회 사 원	-	2(6.5)	5(16.1)	24(77.4)	31(100)	
	공 무 원	-	1(12.5)	4(50.0)	3(37.5)	8(100)	
	관 광 업	-	-	-	1(100)	1(100)	
	기 타	2(1.1)	14(7.9)	28(15.8)	133(75.1)	177(100)	
	계	19(2.6)	89(12.0)	155(20.9)	478(64.5)	741(100)	

<표 4-18> 송전선로가 응답자 소유토지 경과시 대응자세 분석

항 목 (비율)		송전선로가 귀하의 토지를 경과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 (비율%)	χ^2
		보상이 충분하다면 응하겠다	어떠한 경우든 반대한다	사업자가 보상하는 대로 따른다	공익사업이므로 보상이 없어도 따르겠다		
성 별	남	209(42.4)	272(55.2)	6(1.2)	6(1.2)	493(100)	11.413 p<.01
	여	191(54.1)	155(43.9)	4(1.1)	3(0.8)	353(100)	
연 령	20세미만	38(69.1)	17(30.9)	-	-	55(100)	43.354 p<.001
	20세이상 30세미만	89(60.1)	54(36.5)	-	5(3.4)	148(100)	
	30세이상 40세미만	54(41.2)	76(58.0)	1(0.8)	-	131(100)	
	40세이상 50세미만	86(42.2)	115(56.4)	3(1.5)	-	204(100)	
	50세이상	133(43.2)	165(53.6)	6(1.9)	4(1.3)	308(100)	
교 육	무학	99(63.1)	54(34.4)	2(1.3)	2(1.3)	157(100)	41.625 p<.001
	국졸	80(42.3)	104(55.0)	3(1.6)	2(1.1)	189(100)	
	중졸	72(42.1)	99(57.9)	-	-	171(100)	
	고졸	100(49.3)	100(49.3)	3(1.5)	-	203(100)	
	대졸	47(38.2)	69(56.1)	2(1.6)	5(4.1)	123(100)	
	대학원이상	2(66.7)	1(33.3)	-	-	3(100)	
소 득	소득 없음	48(59.3)	31(38.3)	-	2(2.5)	81(100)	65.057 p<.001
	월 100만원 미만	173(45.3)	201(52.6)	3(0.8)	5(1.3)	382(100)	
	월 100만원~150만원 미만	131(49.6)	127(48.1)	5(1.9)	1(0.4)	264(100)	
	월 150만원~200만원 미만	43(45.3)	51(53.7)	-	1(1.1)	95(100)	
	월 200만원~250만원 미만	2(28.6)	3(42.9)	2(28.6)	-	7(100)	
	월 250만원 이상	3(17.6)	14(82.4)	-	-	17(100)	
거 주 지	구좌읍 하도리	236(38.0)	190(43.6)	5(1.1)	5(1.1)	436(100)	35.829 p<.001
	성산읍 수산 2리	124(47.7)	130(50.0)	4(1.5)	2(0.8)	260(100)	
	구좌읍 송당리	40(26.7)	107(71.3)	1(0.7)	2(1.3)	150(100)	
거 주 기 간	5년 미만	5(22.7)	14(63.6)	3(13.6)	-	22(100)	56.683 p<.001
	5년 이상 10년 미만	20(55.6)	16(44.4)	-	-	36(100)	
	10년 이상 15년 미만	37(64.9)	17(29.8)	3(5.3)	-	57(100)	
	15년 이상 20년 미만	119(50.0)	115(48.3)	1(0.4)	3(1.3)	238(100)	
	20년 이상	219(44.4)	265(53.8)	3(0.6)	6(1.2)	493(100)	
직 업	농업	251(44.9)	298(53.3)	7(1.3)	3(0.5)	559(100)	56.840 p<.001
	축산업	1(33.3)	2(66.7)	-	-	3(100)	
	자영업	31(55.4)	25(44.6)	-	-	56(100)	
	회사원	19(57.6)	13(39.4)	1(3.0)	-	33(100)	
	공무원	2(22.2)	5(55.6)	2(22.2)	-	9(100)	
	관광업	1(100)	-	-	-	1(100)	
	기타	95(51.4)	84(45.4)	-	6(3.2)	185(100)	
	계	400(47.3)	427(50.5)	10(1.2)	9(1.1)	846(100)	

<표 4-20> 송전선로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분석

항 목 (비율)		귀하께서는 공공시설로서 송전선로를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계 (비율%)	χ^2
		꼭 필요하다	필요하기는 하지만 내 소유의 지에는 안 된다	필요하기는 하지만 내 소유 및 타 인 소유 의 토 지 에 도 안 된다	필요없는 시설이다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 별	남	148(30.0)	173(35.0)	162(32.8)	11(2.2)	494(100)	22.928
	여	153(43.6)	104(29.6)	79(22.5)	15(4.3)	351(100)	p<.001
연 령	20세미만	28(51.9)	13(24.1)	12((22.2)	1(1.9)	54(100)	37.470 p<.001
	20세이상 30세미만	71(48.0)	28(18.9)	48(32.4)	1(0.7)	148(100)	
	30세이상 40세미만	34(26.0)	47(35.9)	43(32.8)	7(5.3)	131(100)	
	40세이상 50세미만	67(32.8)	70(34.3)	60(29.4)	7(3.4)	204(100)	
	50세이상	101(32.8)	119(38.6)	78(25.3)	10(3.2)	308(100)	
교 육	무학	86(55.1)	42(26.9)	23(14.7)	5(3.2)	156(100)	73.723 p<.001
	국졸	61(32.3)	75(39.7)	42(22.2)	11(5.8)	189(100)	
	중졸	54(31.4)	58(33.7)	57(33.1)	3(1.7)	172(100)	
	고졸	70(34.7)	70(34.7)	57(28.2)	5(2.5)	202(100)	
	대졸	30(24.4)	32(26.0)	59(48.0)	2(1.6)	123(100)	
	대학원이상	-	-	3(100)	-	3(100)	
소 득 특	소득 없음	39(48.8)	20(25.0)	18(22.5)	3(3.8)	80(100)	16.410 NS
	월 100만원 미만	128(33.5)	136(35.6)	106(27.7)	12(3.1)	382(100)	
	월 100만원~150만원 미만	98(37.1)	81(30.7)	76(28.8)	9(3.4)	264(100)	
	월 150만원~200만원 미만	29(30.5)	29(30.5)	35(36.8)	2(2.1)	95(100)	
	월 200만원~250만원 미만	2(28.6)	2(28.6)	3(42.9)	-	7(100)	
	월 250만원 이상	5(29.4)	9(52.9)	3(17.6)	-	17(100)	
거 주 지	구좌읍 하도리	166(38.0)	110(25.2)	142(32.5)	19(4.3)	437(100)	46.252 p<.001
	성산읍 수산 2리	101(39.0)	87(33.6)	66(25.5)	5(1.9)	259(100)	
	구좌읍 송당리	34(22.8)	80(53.7)	33(22.1)	2(1.3)	149(100)	
거 주 기 간	5년 미만	9(40.9)	6(27.3)	7(31.8)	-	22(100)	31.853 p<.01
	5년 이상 10년 미만	15(41.7)	9(25.0)	8(22.2)	4(11.1)	36(100)	
	10년 이상 15년 미만	30(52.6)	10(17.5)	14(24.6)	3(5.3)	57(100)	
	15년 이상 20년 미만	95(40.1)	67(28.3)	66(27.8)	9(3.8)	237(100)	
	20년 이상	152(30.8)	185(37.5)	146(29.6)	10(2.0)	493(100)	
직 업	농업	184(32.9)	196(35.0)	164(29.3)	16(2.9)	560(100)	19.462 NS
	축산업	1(33.3)	1(33.3)	1(33.3)	-	3(100)	
	자영업	23(41.1)	18(32.1)	11(19.6)	4(7.1)	56(100)	
	회사원	17(51.5)	9(27.3)	5(15.2)	2(6.1)	33(100)	
	공무원	4(44.4)	3(33.3)	2(22.2)	-	9(100)	
	관광업	-	-	1(100)	-	1(100)	
	기타	72(39.3)	50(27.3)	57(31.1)	4(2.2)	183(100)	
	계	301(35.6)	277(32.8)	241(28.5)	26(3.1)	845(100)	

<표 4-22> 성산분기 송전선로 사업에 대한 주민 찬·반대 여부 분석

항 목 (비율)		154kV 성산분기 송전선로 사업에 대해 귀하는 찬성, 반대 어느 쪽입니까?					계 (비율%)	χ^2
		찬성	전면지중 화 조건 부 찬성	일 부 구 간(오름 주 면 지 역)지중 화 조 건 부 찬성	마 을 주 변 지 역 우 회 조 건부 찬성	반대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 별	남	53(10.7)	110(22.3)	62(12.6)	97(19.6)	172(34.8)	494(100)	16.125 p<.01
	여	71(20.1)	80(22.7)	34(9.6)	65(18.4)	103(29.2)	353(100)	
연 령	20세미만	11(20.0)	13(23.6)	6(10.9)	11(20.0)	14(25.5)	55(100)	27.231 p<.05
	20세이상 30세미만	25(16.9)	37(25.0)	22(14.9)	36(24.3)	28(18.9)	148(100)	
	30세이상 40세미만	16(12.2)	28(21.4)	15(11.5)	26(19.8)	46(35.1)	131(100)	
	40세이상 50세미만	30(14.7)	40(19.6)	17(8.3)	30(14.7)	87(42.6)	204(100)	
	50세이상	42(13.6)	72(23.3)	36(11.7)	59(19.1)	100(32.4)	309(100)	
교 육	무학	47(29.9)	38(24.2)	17(10.8)	19(12.1)	36(22.9)	157(100)	72.859 p<.001
	국졸	30(15.9)	35(18.5)	20(10.6)	28(14.8)	76(40.2)	189(100)	
	중졸	21(12.2)	42(24.4)	15(8.7)	33(19.2)	61(35.5)	172(100)	
	고졸	23(11.3)	49(24.1)	21(10.3)	51(25.1)	59(29.1)	203(100)	
	대졸	3(2.4)	26(21.1)	23(18.7)	30(24.4)	41(33.3)	123(100)	
	대학원이상	-	-	-	1(33.3)	2(66.7)	3(100)	
소 득 특	소득 없음	13(16.0)	23(28.4)	9(11.1)	16(19.8)	20(24.7)	81(100)	36.088 p<.02
	월 100만원 미만	56(14.6)	91(23.8)	34(8.9)	77(20.1)	125(32.6)	383(100)	
	월 100만원~150만원 미만	42(15.9)	55(20.8)	28(10.6)	47(17.8)	92(34.8)	264(100)	
	월 150만원~200만원 미만	12(12.6)	20(21.1)	16(16.8)	18(18.9)	29(30.5)	95(100)	
	월 200만원~250만원 미만	-	1(14.3)	1(14.3)	2(28.6)	3(42.9)	7(100)	
	월 250만원 이상	1(5.9)	-	8(47.1)	2(11.8)	6(35.3)	17(100)	
거 주 지	구좌읍 하도리	66(15.1)	100(22.9)	52(11.9)	82(18.8)	137(31.4)	437(100)	13.797 NS
	성산읍 수산 2리	46(17.7)	60(23.1)	27(10.4)	40(15.4)	87(33.5)	260(100)	
	구좌읍 송당리	12(8.0)	30(20.0)	17(11.3)	40(26.7)	51(34.0)	150(100)	
거 주 기 간	5년 미만	1(4.5)	3(13.6)	5(22.7)	3(13.6)	10(45.5)	22(100)	30.228 p<.02
	5년 이상 10년 미만	9(25.0)	8(22.2)	4(11.1)	5(13.9)	10(27.8)	36(100)	
	10년 이상 15년 미만	18(31.6)	11(19.3)	4(7.0)	9(15.8)	15(26.3)	57(100)	
	15년 이상 20년 미만	32(13.4)	66(27.7)	22(9.2)	43(18.1)	75(31.5)	238(100)	
	20년 이상	64(13.0)	102(20.6)	61(12.3)	102(20.6)	165(33.4)	494(100)	
직 업	농 업	80(14.3)	124(22.1)	51(9.1)	104(18.6)	201(35.9)	560(100)	48.047 p<.01
	축 산 업	1(33.3)	-	-	-	2(66.7)	3(100)	
	자 영 업	14(25.0)	17(30.4)	9(16.1)	1(1.8)	15(26.8)	56(100)	
	회 사 원	3(9.1)	9(27.3)	7(21.2)	10(30.3)	4(12.1)	33(100)	
	공 무 원	1(11.1)	2(22.2)	2(22.2)	-	4(44.4)	9(100)	
	관 광 업	-	-	-	-	1(100)	1(100)	
	기 타	25(13.5)	38(20.5)	27(14.6)	47(25.4)	48(25.9)	185(100)	
	계	124(14.6)	190(22.4)	96(11.3)	162(19.1)	275(32.5)	847(100)	

<표 4-24> 성산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반대이유 분석

항 목 (비율)		성산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 반대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십니까 ?					계 (비율%)	χ^2
		오름 환경 파괴	손실보상 제도에 대한불신	주민참여 미흡	위험성(전 자 파) 에 대한우려	지가하락 및 손실 보상등 경제적인 이유로		
성 별	남	31(17.9)	18(10.4)	-	45(26.0)	79(45.7)	173(100)	6.202 NS
	여	16(14.7)	13(11.9)	2(1.8)	37(33.9)	41(37.6)	109(100)	
연 령	20세미만	3(18.8)	4(25.0)	2(12.5)	2(12.5)	5(31.3)	16(100)	46.237 p<.001
	20세이상 30세미만	4(13.3)	1(3.3)	-	12(40.0)	13(43.3)	30(100)	
	30세이상 40세미만	9(18.4)	3(6.1)	-	13(26.5)	24(49.0)	49(100)	
	40세이상 50세미만	17(19.8)	13(15.1)	-	24(27.9)	32(37.2)	86(100)	
	50세이상	14(13.9)	10(9.9)	-	31(30.7)	46(45.5)	101(100)	
교 육	무학	9(24.3)	2(5.4)	-	6(16.2)	20(54.1)	37(100)	31.744 p<.05
	국졸	11(14.1)	11(14.1)	-	24(30.8)	32(41.0)	78(100)	
	중졸	7(11.7)	13(21.7)	-	20(33.3)	20(33.3)	60(100)	
	고졸	11(17.2)	5(7.8)	2(3.1)	16(25.0)	30(46.9)	64(100)	
	대졸	8(19.5)	-	-	16(39.0)	17(41.5)	41(100)	
	대학원이상	1(50.0)	-	-	-	1(50.0)	2(100)	
소 득	소득 없음	6(24.0)	4(16.0)	2(8.0)	3(12.0)	10(40.0)	25(100)	50.226 p<.001
	월 100만원 미만	16(12.7)	18(14.3)	-	37(29.4)	55(43.7)	126(100)	
	월 100만원~150만원 미만	18(19.4)	9(9.7)	-	30(32.3)	36(38.7)	93(100)	
	월 150만원~200만원 미만	4(13.8)	-	-	9(31.0)	16(55.2)	29(100)	
	월 200만원~250만원 미만	3(100)	-	-	-	-	3(100)	
월 250만원 이상	-	-	-	3(50.0)	3(50.0)	6(100)		
거 주 지	구좌읍 하도리	23(16.7)	21(15.2)	-	28(20.3)	66(47.8)	138(100)	21.867 p<.01
	성산읍 수산 2리	20(22.5)	4(4.5)	1(1.1)	33(37.1)	31(34.8)	89(100)	
	구좌읍 송당리	4(7.3)	6(10.9)	1(1.8)	21(38.2)	23(41.8)	55(100)	
거 주 기 간	5년 미만	4(36.4)	1(9.1)	-	-	6(54.5)	11(100)	21.240 NS
	5년 이상 10년 미만	1(10.0)	1(10.0)	-	3(30.0)	5(50.0)	10(100)	
	10년 이상 15년 미만	7(46.7)	1(6.7)	-	3(20.0)	4(26.7)	15(100)	
	15년 이상 20년 미만	15(19.5)	7(9.1)	-	23(29.9)	32(41.6)	77(100)	
20년 이상	20(11.8)	21(12.4)	2(1.2)	53(31.4)	73(43.2)	169(100)		
직 업	농 업	31(15.3)	21(10.4)	-	65(32.2)	85(42.1)	202(100)	30.905 NS
	축 산 업	1(50.0)	-	-	1(50.0)	-	2(100)	
	자 영 업	2(13.3)	2(13.3)	-	4(26.7)	7(46.7)	15(100)	
	회 사 원	1(20.0)	1(20.0)	-	-	3(60.0)	5(100)	
	공 무 원	3(75.0)	-	-	-	1(25.0)	4(100)	
	관 광 업	1(100)	-	-	-	-	1(100)	
	기 타	8(15.1)	7(13.2)	2(3.8)	12(22.6)	24(45.3)	53(100)	
계		47(16.7)	31(11.0)	2(0.7)	82(29.1)	120(42.6)	282(100)	

<표 4-26> 현재의 손실보상제도에 대한 견해 분석

항 목 (비율)		현재의 실물자산만을 보상의 대상으로 보는 재물 보상의원칙에 의한 손실보상제도를 귀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계 (비율%)	χ^2
		적정한 수준이다	다소미흡 하다	매우 미흡하다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 별	남	22(4.5)	271(54.9)	201(10.7)	494(100)	11.415
	여	31(8.8)	210(59.5)	112(31.7)	353(100)	p<.01
연 령	20세미만	6(10.9)	37(67.3)	12(21.8)	55(100)	14.772 NS
	20세이상 30세미만	13(8.8)	91(61.5)	44(29.7)	148(100)	
	30세이상 40세미만	5(3.8)	75(57.3)	51(38.9)	131(100)	
	40세이상 50세미만	13(6.4)	112(54.9)	79(38.7)	204(100)	
	50세이상	16(5.2)	166(53.7)	127(41.1)	309(100)	
교 육	무학	14(8.9)	91(58.0)	52(33.1)	157(100)	22.620 p<.02
	국졸	18(9.5)	106(56.1)	65(34.4)	189(100)	
	중졸	5(2.9)	91(52.9)	76(44.2)	172(100)	
	고졸	16(7.9)	117(57.6)	70(34.5)	203(100)	
	대졸	-	75(61.0)	48(39.0)	123(100)	
	대학원이상	-	1(33.3)	2(66.7)	3(100)	
소 득 단 위	소득 없음	18(22.2)	47(58.0)	16(19.8)	81(100)	50.842 p<.001
	월 100만원 미만	22(5.7)	221(57.7)	140(36.6)	383(100)	
	월 100만원~150만원 미만	11(4.2)	143(54.2)	110(41.7)	264(100)	
	월 150만원~200만원 미만	1(1.1)	53(55.8)	41(43.2)	95(100)	
	월 200만원~250만원 미만	-	5(71.4)	2(28.6)	7(100)	
	월 250만원 이상	1(5.9)	12(70.6)	4(23.5)	17(100)	
거 주 지	구좌읍 하도리	30(6.9)	238(54.5)	169(38.7)	437(100)	4.494 NS
	성산읍 수산 2리	11(4.2)	155(59.6)	94(36.2)	260(100)	
	구좌읍 송당리	12(8.0)	88(58.7)	50(33.3)	150(100)	
거 주 기 간	5년 미만	3(13.6)	14(63.6)	5(22.7)	22(100)	9.109 NS
	5년 이상 10년 미만	2(5.6)	21(58.3)	13(36.1)	36(100)	
	10년 이상 15년 미만	2(3.5)	35(61.4)	20(35.1)	57(100)	
	15년 이상 20년 미만	20(8.4)	139(58.4)	79(33.2)	238(100)	
	20년 이상	26(5.3)	272(55.1)	196(39.7)	494(100)	
직 업	농업	27(4.8)	307(54.8)	226(40.4)	560(100)	21.023 NS
	축산업	-	1(33.3)	2(66.7)	3(100)	
	자영업	4(7.1)	36(64.3)	16(28.6)	56(100)	
	회사원	1(3.0)	23(69.7)	9(27.3)	33(100)	
	공무원	-	7(77.8)	2(22.2)	9(100)	
	관광업	-	1(100)	-	1(100)	
	기타	21(11.4)	106(57.3)	58(31.4)	185(100)	
	계	53(6.3)	481(56.8)	313(37.0)	847(100)	

<표 4-30> 성산분기 송전선로 건설사업의 부의 외부효과여부 분석

항 목 (비율)		귀하께서는 혐오시설의 입지로 인한 경제적, 환경적 피해에 비해 그 시설로 얻는 편익은 시설이 입지하지 않은 타 지역에 비해서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계 (비율%)	χ^2
		매우 크다	대체로 크다	그저 그렇다	별로 없다	전혀없다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 별	남	4(0.8)	19(3.9)	132(26.8)	201(40.8)	137(27.8)	493(100)	9.117
	여	7(2.0)	17(4.8)	113(32.0)	144(40.8)	72(20.4)	353(100)	NS
연 령	20세미만	3(5.5)	3(5.5)	14(25.5)	28(50.9)	7(12.7)	55(100)	63.009 p<.001
	20세이상 30세미만	1(0.7)	19(12.8)	43(29.1)	54(36.5)	31(20.9)	148(100)	
	30세이상 40세미만	3(2.3)	3(2.3)	35(26.7)	58(44.3)	32(24.4)	131(100)	
	40세이상 50세미만	2(1.0)	7(3.4)	63(31.0)	92(45.3)	39(19.2)	203(100)	
	50세이상	2(0.6)	4(1.3)	90(29.1)	113(36.6)	100(32.4)	309(100)	
교 육	무학	-	5(3.2)	54(34.4)	64(40.8)	34(21.7)	157(100)	22.795 NS
	국졸	4(2.1)	5(2.6)	60(31.7)	76(40.2)	44(23.3)	189(100)	
	중졸	3(1.8)	5(2.9)	52(30.4)	69(40.4)	42(24.6)	171(100)	
	고졸	3(1.5)	14(6.9)	56(27.6)	81(39.9)	49(24.1)	203(100)	
	대졸	1(0.8)	7(5.7)	22(17.9)	53(43.1)	40(32.5)	123(100)	
	대학원이상	-	-	1(33.3)	2(66.7)	-	3(100)	
소 득	소득 없음	2(2.5)	12(14.8)	30(37.0)	31(38.3)	6(7.4)	81(100)	57.802 p<.001
	월 100만원 미만	3(0.8)	20(5.2)	109(28.5)	145(37.9)	106(27.7)	383(100)	
	월 100만원~150만원 미만	5(1.9)	3(1.1)	78(29.7)	108(41.1)	69(26.2)	263(100)	
	월 150만원~200만원 미만	1(1.1)	1(1.1)	22(23.2)	45(47.4)	26(27.4)	95(100)	
	월 200만원~250만원 미만	-	-	2(28.6)	5(71.4)	-	7(100)	
	월 250만원 이상	-	-	4(23.5)	11(64.7)	2(11.8)	17(100)	
거 주 지	구좌읍 하도리	3(0.7)	13(3.0)	148(33.9)	170(38.9)	103(23.6)	437(100)	27.845 p<.001
	성산읍 수산 2리	5(1.9)	8(3.1)	60(23.1)	120(46.2)	67(25.8)	260(100)	
	구좌읍 송당리	3(2.0)	15(10.1)	37(24.8)	55(36.9)	39(26.2)	149(100)	
거 주 기 간	5년 미만	1(4.5)	7(31.8)	6(27.3)	3(13.6)	5(22.7)	22(100)	65.576 p<.001
	5년 이상 10년 미만	-	1(2.8)	13(36.1)	15(41.7)	7(19.4)	36(100)	
	10년 이상 15년 미만	3(5.3)	-	21(36.8)	24(42.1)	9(15.8)	57(100)	
	15년 이상 20년 미만	2(0.8)	13(5.5)	73(30.7)	97(40.8)	53(22.3)	238(100)	
	20년 이상	5(1.0)	15(3.0)	132(26.8)	206(41.8)	135(27.4)	493(100)	
직 업	농업	6(1.1)	10(1.8)	156(27.9)	233(41.7)	154(27.5)	359(100)	77.115 p<.001
	축산업	1(33.3)	-	1(33.3)	-	1(33.3)	3(100)	
	자영업	-	5(8.9)	23(41.1)	22(39.3)	6(10.7)	56(100)	
	회사원	-	-	15(45.5)	12(36.4)	6(18.2)	33(100)	
	공무원	-	1(11.1)	2(22.2)	4(44.4)	2(22.2)	9(100)	
	관광업	-	-	1(100)	-	-	1(100)	
	기타	4(2.2)	20(10.8)	47(25.4)	74(40.0)	40(21.6)	185(100)	
	계	11(1.3)	36(4.3)	245(29.0)	345(40.8)	209(24.7)	846(100)	

<표 4-32> 사업시행자측과 지역주민간에 대화(협상)의 원활정도 분석

인구통계학적 특성		항 목 (비율)	귀하께서는 사업시행자측과 지역주민간에 대화(협상)가 원활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십 니까?				계 (비율%)	χ^2
		잘 이 뤄진 편 이 다	보통이다	대체로 안 이뤄진 편	전혀 안 이 뤄진 편			
성 별	남		3(0.6)	123(24.9)	229(46.5)	138(28.0)	493(100)	13.473 p<.01
	여		13(3.7)	101(28.6)	158(44.8)	81(22.9)	353(100)	
연 령	20세미만		4(7.3)	24(43.6)	20(36.4)	7(12.7)	55(100)	32.057 p<.01
	20세이상 30세미만		5(3.4)	46(31.1)	63(42.6)	34(23.0)	148(100)	
	30세이상 40세미만		1(0.8)	29(22.1)	65(49.6)	36(27.5)	131(100)	
	40세이상 50세미만		4(2.0)	56(27.5)	94(46.1)	50(24.5)	204(100)	
	50세이상		2(0.6)	69(22.4)	145(47.1)	92(29.9)	308(100)	
교 육	무학		2(1.3)	33(21.0)	80(51.0)	42(26.8)	157(100)	35.696 p<.01
	국졸		4(2.1)	56(29.8)	81(43.1)	47(25.0)	188(100)	
	중졸		4(2.3)	36(20.9)	81(47.1)	51(29.7)	172(100)	
	고졸		3(1.5)	77(37.9)	88(43.3)	35(17.2)	203(100)	
	대졸		3(2.4)	22(17.9)	54(43.9)	44(35.8)	123(100)	
	대학원이상		-	-	3(100)	-	3(100)	
소 득	소득 없음		5(6.2)	32(39.5)	35(43.2)	9(11.1)	81(100)	40.830 p<.001
	월 100만원 미만		4(1.0)	102(26.7)	178(46.6)	98(25.7)	382(100)	
	월 100만원~150만원 미만		6(2.3)	57(21.6)	124(47.0)	77(29.2)	264(100)	
	월 150만원~200만원 미만		-	24(25.3)	42(44.2)	29(30.5)	95(100)	
	월 200만원~250만원 미만		-	-	3(42.9)	4(57.1)	7(100)	
	월 250만원 이상		-	9(52.9)	5(29.4)	2(11.8)	17(100)	
거 주 지	구좌읍 하도리		10(2.3)	108(24.8)	206(47.2)	112(25.7)	436(100)	16.415 p<.02
	성산읍 수산 2리		2(0.8)	59(22.7)	126(48.5)	73(28.1)	260(100)	
	구좌읍 송당리		4(2.7)	57(38.0)	55(36.7)	34(22.7)	150(100)	
거 주 기 간	5년 미만		-	10(45.5)	5(22.7)	7(31.8)	22(100)	16.005 NS
	5년 이상 10년 미만		1(2.8)	8(22.2)	20(55.6)	7(19.4)	36(100)	
	10년 이상 15년 미만		1(1.8)	13(22.8)	29(50.9)	14(24.6)	57(100)	
	15년 이상 20년 미만		8(3.4)	72(30.3)	99(41.6)	59(24.8)	238(100)	
	20년 이상		6(1.2)	121(24.5)	234(47.5)	132(26.8)	493(100)	
직 업	농 업		5(0.9)	136(24.3)	257(45.9)	162(28.9)	560(100)	46.988 p<.001
	축 산 업		-	-	1(33.3)	2(66.7)	3(100)	
	자 영 업		-	14(25.0)	36(64.3)	6(10.7)	56(100)	
	회 사 원		1(3.0)	13(39.4)	15(45.5)	4(12.1)	33(100)	
	공 무 원		-	-	5(55.6)	4(44.4)	9(100)	
	관 광 업		-	-	1(100)	-	1(100)	
	기 타		10(5.4)	61(33.2)	72(39.1)	41(22.3)	184(100)	
계		16(1.9)	224(26.5)	387(45.7)	219(25.9)	846(100)		

<표 4-34> 대화 및 협상을 가로 막는 장애요인 분석

항 목 (비율)		대화 및 협상을 가로 막는 장애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계 (비율%)	χ^2
		서로 상대 방을 인정 하지 않는 권위주의	사업시행자 측의 대화 및 협상노 력부재	상호간의 불신감	모르겠다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 별	남	53(14.5)	169(46.2)	94(25.7)	50(13.7)	366(100)	11.041 p<.02
	여	35(14.3)	102(41.8)	49(20.1)	58(23.8)	244(100)	
연 령	20세미만	2(7.4)	9(33.3)	15(55.6)	1(3.7)	27(100)	40.003 p<.001
	20세이상 30세미만	8(8.3)	56(58.3)	20(20.8)	12(12.5)	96(100)	
	30세이상 40세미만	17(16.8)	49(48.5)	24(23.8)	11(10.9)	101(100)	
	40세이상 50세미만	22(14.9)	56(37.8)	29(19.6)	41(27.7)	148(100)	
	50세이상	39(16.4)	101(42.4)	55(23.1)	43(18.1)	238(100)	
교 육	무학	25(20.0)	54(43.2)	22(17.6)	24(19.2)	125(100)	45.341 p<.001
	국졸	26(20.0)	52(40.0)	28(21.5)	24(18.5)	130(100)	
	중졸	10(7.5)	60(45.1)	28(21.1)	35(26.3)	133(100)	
	고졸	22(18.0)	46(37.7)	41(33.6)	13(10.7)	122(100)	
	대졸	4(4.1)	57(58.8)	24(24.7)	12(12.4)	97(100)	
	대학원이상	1(33.3)	2(66.7)	-	-	3(100)	
소 득	소득 없음	5(11.4)	17(38.6)	21(47.7)	1(2.3)	44(100)	36.724 p<.01
	월 100만원 미만	35(12.6)	119(42.8)	67(24.1)	57(20.5)	278(100)	
	월 100만원~150만원 미만	33(16.3)	96(47.5)	37(18.3)	36(17.8)	202(100)	
	월 150만원~200만원 미만	10(14.1)	33(46.5)	17(23.9)	11(15.5)	71(100)	
	월 200만원~250만원 미만	4(57.1)	1(14.3)	-	2(28.6)	7(100)	
	월 250만원 이상	1(12.5)	5(62.5)	1(12.5)	1(12.5)	8(100)	
거 주 지	구좌읍 하도리	40(12.6)	134(42.1)	76(23.9)	68(21.4)	318(100)	10.152 NS
	성산읍 수산 2리	33(16.2)	101(49.5)	42(20.6)	28(13.7)	204(100)	
	구좌읍 송당리	15(17.0)	36(40.9)	25(28.4)	12(13.6)	88(100)	
거 주 기 간	5년 미만	1(9.1)	6(54.5)	4(36.4)	-	11(100)	22.243 p<.05
	5년 이상 10년 미만	5(18.5)	11(40.7)	5(18.5)	6(22.2)	27(100)	
	10년 이상 15년 미만	8(18.6)	29(67.4)	1(2.3)	5(11.6)	43(100)	
	15년 이상 20년 미만	21(13.0)	71(43.8)	45(27.8)	25(15.4)	162(100)	
	20년 이상	53(14.4)	154(42.0)	88(24.0)	72(19.6)	367(100)	
직 업	농업	69(16.3)	173(40.9)	91(21.5)	90(21.3)	423(100)	34.201 p<.02
	축산업	1(33.3)	2(66.7)	-	-	3(100)	
	자영업	5(11.6)	26(60.5)	8(18.6)	4(9.3)	43(100)	
	회사원	2(10.5)	8(42.1)	5(26.3)	4(21.1)	19(100)	
	공무원	1(11.1)	4(44.4)	3(33.3)	1(11.1)	9(100)	
	관광업	1(100)	-	-	-	1(100)	
	기타	9(8.0)	58(51.8)	36(32.1)	9(8.0)	112(100)	
계		88(14.4)	271(44.4)	143(23.4)	108(17.7)	610(100)	

<표 4-36> 당사자간에 원활한 의사소통방안 분석

항 목 (비율)		양당사자간에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방안은?				계 (비율%)	χ^2
		서로를 진정 한 협상의 파트너 로서 인정 하는자세	사업시행 자측의 권 위주의 타 파	상호간의 편견을 버림	양당사자 간의 대화 의 통로 확대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 별	남	158(32.1)	116(23.6)	62(12.6)	156(31.7)	492(100)	6.049
	여	91(26.1)	74(21.2)	52(14.9)	132(37.8)	349(100)	NS
연 령	20세미만	14(25.9)	12(22.2)	3(5.6)	25(46.3)	54(100)	19.213 NS
	20세이상 30세미만	44(29.7)	29(19.6)	25(16.9)	50(33.8)	148(100)	
	30세이상 40세미만	42(32.1)	21(16.0)	20(15.3)	48(36.6)	131(100)	
	40세이상 50세미만	59(29.1)	43(21.2)	35(17.2)	66(32.5)	203(100)	
	50세이상	90(29.5)	85(27.9)	31(10.2)	99(32.5)	305(100)	
교 육	무학	39(25.3)	35(22.7)	16(10.4)	64(41.6)	154(100)	25.500 p<.05
	국졸	46(24.6)	49(26.2)	21(11.2)	71(38.0)	187(100)	
	중졸	61(35.5)	32(18.6)	26(15.1)	53(30.8)	172(100)	
	고졸	67(33.2)	49(24.3)	24(11.9)	62(30.7)	202(100)	
	대졸	34(27.6)	24(19.5)	27(22.0)	38(30.9)	123(100)	
	대학원이상	2(66.7)	1(33.3)	-	-	3(100)	
소 득	소득 없음	31(38.3)	10(12.3)	8(9.9)	32(39.5)	81(100)	25.181 p<.05
	월 100만원 미만	98(25.7)	88(23.1)	65(17.1)	130(34.1)	381(100)	
	월 100만원~150만원 미만	83(31.8)	60(23.0)	25(9.6)	93(35.6)	261(100)	
	월 150만원~200만원 미만	25(26.6)	26(27.7)	14(14.9)	29(30.9)	94(100)	
	월 200만원~250만원 미만	4(57.1)	1(14.3)	1(14.3)	1(14.3)	7(100)	
월 250만원 이상	8(47.1)	5(29.4)	1(5.9)	3(17.6)	17(100)		
거 주 지	구좌읍 하도리	120(27.5)	101(23.1)	68(15.6)	148(33.9)	437(100)	23.850 p<.001
	성산읍 수산 2리	65(25.6)	56(22.0)	27(10.6)	106(41.7)	254(100)	
	구좌읍 송당리	64(42.7)	33(22.0)	19(12.7)	34(22.7)	150(100)	
거 주 기 간	5년 미만	9(40.9)	3(13.6)	4(18.2)	6(27.3)	22(100)	17.532 NS
	5년 이상 10년 미만	7(19.4)	5(13.9)	4(11.1)	20(55.6)	36(100)	
	10년 이상 15년 미만	9(15.8)	13(22.8)	10(17.5)	25(43.9)	57(100)	
	15년 이상 20년 미만	74(31.6)	50(21.4)	32(13.7)	78(33.3)	234(100)	
	20년 이상	150(30.5)	119(24.2)	64(13.0)	159(32.3)	492(100)	
직 업	농업	162(29.1)	136(24.5)	67(12.1)	191(34.4)	556(100)	19.864 NS
	축산업	-	-	-	3(100)	3(100)	
	자영업	19(33.9)	11(19.6)	6(10.7)	20(35.7)	56(100)	
	회사원	9(27.3)	7(21.2)	8(24.2)	9(27.3)	33(100)	
	공무원	3(33.3)	1(11.1)	3(33.3)	2(22.2)	9(100)	
	관광업	1(100)	-	-	-	1(100)	
	기타	55(30.1)	35(19.1)	30(16.4)	63(34.4)	183(100)	
	계	249(29.6)	190(22.6)	114(13.6)	288(34.2)	841(100)	

<표 4-39> 공공사업 정보의 공개가 필요한 이유 분석

항 목 (비율)		귀하께서는 공공사업 정보의 공개가 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계 (비율%)	χ^2
		국민의 알권리보장을 위하여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주민과 사업시행자간에 신뢰관계 구축을 위하여	공공사업 홍보를 위하여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 별	남	194(39.3)	139(28.1)	136(27.5)	25(5.1)	494(100)	3.002
	여	122(34.6)	117(33.1)	95(26.9)	19(5.4)	353(100)	NS
연 령	20세미만	19(34.5)	12(21.8)	17(30.9)	7(12.7)	55(100)	25.636 p<.02
	20세이상 30세미만	69(46.6)	40(27.0)	32(21.6)	7(4.7)	148(100)	
	30세이상 40세미만	36(27.5)	42(32.1)	49(37.4)	4(3.1)	131(100)	
	40세이상 50세미만	78(38.2)	69(33.8)	49(24.0)	8(3.9)	204(100)	
	50세이상	114(36.9)	93(30.1)	84(27.2)	18(5.8)	309(100)	
교 육	무학	35(22.3)	72(45.9)	36(22.9)	14(8.9)	157(100)	73.288 p<.001
	국졸	70(37.0)	72(38.1)	36(19.0)	11(5.8)	189(100)	
	중졸	75(43.6)	40(23.3)	47(27.3)	10(5.8)	172(100)	
	고졸	78(38.4)	58(28.6)	60(29.6)	7(3.4)	203(100)	
	대졸	56(45.5)	14(11.4)	51(41.5)	2(1.6)	123(100)	
	대학원이상	2(66.7)	-	1(33.3)	-	3(100)	
소 득 특	소득 없음	42(51.9)	15(18.5)	17(21.0)	7(8.6)	81(100)	47.674 p<.001
	월 100만원 미만	144(37.6)	112(29.2)	99(25.8)	28(7.3)	383(100)	
	월 100만원~150만원 미만	86(32.6)	103(39.0)	69(26.1)	6(2.3)	264(100)	
	월 150만원~200만원 미만	32(33.7)	20(21.1)	40(42.1)	3(3.2)	95(100)	
	월 200만원~250만원 미만	3(42.9)	-	4(57.1)	-	7(100)	
	월 250만원 이상	9(52.9)	6(35.3)	2(11.8)	-	17(100)	
거 주 지	구좌읍 하도리	158(36.2)	131(30.0)	120(27.5)	28(6.4)	437(100)	27.995 p<.001
	성산읍 수산 2리	77(29.6)	94(36.2)	77(29.6)	12(4.6)	260(100)	
	구좌읍 송당리	81(54.0)	31(20.7)	34(22.7)	4(2.7)	150(100)	
거 주 기 간	5년 미만	7(31.8)	5(22.7)	10(45.5)	-	22(100)	26.638 p<.05
	5년 이상 10년 미만	10(27.8)	15(41.7)	9(25.0)	2(5.6)	36(100)	
	10년 이상 15년 미만	10(17.5)	27(47.4)	14(24.6)	6(10.5)	57(100)	
	15년 이상 20년 미만	83(34.9)	73(30.7)	69(29.0)	13(5.5)	238(100)	
	20년 이상	206(41.7)	136(27.5)	129(26.1)	23(4.7)	494(100)	
직 업	농업	209(37.3)	180(32.1)	146(26.1)	25(4.5)	560(100)	42.026 p<.01
	축산업	-	2(66.7)	-	1(33.3)	3(100)	
	자영업	17(30.4)	22(39.3)	10(17.9)	7(12.5)	56(100)	
	회사원	11(33.3)	8(24.2)	11(33.3)	3(9.1)	33(100)	
	공무원	-	2(22.2)	7(77.8)	-	9(100)	
	관광업	-	-	1(100)	-	1(100)	
	기타	79(42.7)	42(22.7)	56(30.3)	8(4.3)	185(100)	
계		316(37.3)	256(30.2)	231(27.3)	44(5.2)	847(100)	

<표 4-41> 송전선로 사업정보 공개의 적절한 시기 분석

항 목 (비율)		귀하께서는 성산분기 송전선로 사업정보의 공개가 어느시기부터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계 (비율%)	χ^2
		사업 계획 수립 단계 부터	경과지 검 토 단계 부 터	예 비 답 사 단계부터	본답사 단계부터	현행 대로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 별	남	350(70.9)	79(16.0)	39(7.9)	8(1.6)	18(3.6)	494(100)	4.730 NS
	여	229(64.9)	65(18.4)	30(8.5)	10(2.8)	19(5.4)	353(100)	
연 령	20세미만	38(69.1)	5(9.1)	10(18.2)	-	2(3.6)	55(100)	56.777 p<.001
	20세이상 30세미만	102(68.9)	29(19.6)	11(7.4)	-	6(4.1)	148(100)	
	30세이상 40세미만	96(73.3)	19(14.5)	11(8.4)	-	5(3.8)	131(100)	
	40세이상 50세미만	132(64.7)	38(18.6)	12(5.9)	16(7.8)	6(2.9)	204(100)	
	50세이상	211(68.3)	53(17.2)	25(8.1)	2(0.6)	18(5.8)	309(100)	
교 육	무학	109(69.4)	31(19.7)	10(6.4)	-	7(4.5)	157(100)	63.520 p<.001
	국졸	117(61.9)	35(18.5)	16(8.5)	4(2.1)	17(9.0)	189(100)	
	중졸	114(66.3)	26(15.1)	13(7.6)	14(8.1)	5(2.9)	172(100)	
	고졸	142(70.0)	32(15.8)	24(11.8)	-	5(2.5)	203(100)	
	대졸	94(76.4)	20(16.3)	6(4.9)	-	3(2.4)	123(100)	
	대학원이상	3(100)	-	-	-	-	3(100)	
소 득	소득 없음	43(53.1)	12(14.8)	15(18.5)	-	11(13.6)	81(100)	73.448 p<.001
	월 100만원 미만	255(66.6)	66(17.2)	37(9.7)	5(1.3)	20(5.2)	383(100)	
	월 100만원~150만원 미만	192(72.7)	41(15.5)	13(4.9)	13(4.9)	5(1.9)	264(100)	
	월 150만원~200만원 미만	74(77.9)	18(18.9)	3(3.2)	-	-	95(100)	
	월 200만원~250만원 미만	7(100)	-	-	-	-	7(100)	
	월 250만원 이상	8(47.1)	7(41.2)	1(5.9)	-	-	17(100)	
거 주 지	구좌읍 하도리	291(66.6)	83(19.0)	33(7.6)	8(1.8)	22(5.0)	437(100)	20.294 p<.01
	성산읍 수산 2리	199(76.5)	34(13.1)	18(6.9)	4(1.5)	5(1.9)	260(100)	
	구좌읍 송당리	89(59.3)	27(18.0)	18(12.0)	6(4.0)	10(6.7)	150(100)	
거 주 기 간	5년 미만	18(81.8)	2(9.1)	2(9.1)	-	-	22(100)	18.756 NS
	5년 이상 10년 미만	22(61.1)	9(25.0)	2(5.6)	-	3(8.3)	36(100)	
	10년 이상 15년 미만	42(73.7)	10(17.5)	2(3.5)	-	3(5.3)	57(100)	
	15년 이상 20년 미만	173(72.7)	38(16.0)	11(4.6)	6(2.5)	10(4.2)	238(100)	
	20년 이상	324(65.6)	85(17.2)	52(10.5)	12(2.4)	21(4.3)	494(100)	
직 업	농 업	391(69.8)	91(100)	41(7.3)	12(2.1)	25(4.5)	560(100)	38.369 p<.05
	축 산 업	2(66.7)	1(100)	-	-	-	3(100)	
	자 영 업	34(60.7)	10(17.9)	6(10.7)	6(10.7)	-	56(100)	
	회 사 원	19(57.6)	9(27.3)	3(9.1)	-	2(6.1)	33(100)	
	공 무 원	9(100)	-	-	-	-	9(100)	
	관 광 업	1(100)	-	-	-	-	1(100)	
	기 타	123(100)	33(17.8)	19(10.3)	-	10(5.4)	185(100)	
	계	579(68.4)	144(17.0)	69(8.1)	18(2.1)	37(4.4)	847(100)	

<표 4-43> 사업정보 공개가 입지반대 여론감소 기여도 분석

인구통계학적 특성		항 목 (비율)	귀하께서는 송전선로 사업정보가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히 그리고 적시에 제공된다면 지역주민의 입지반대 여론을 줄이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계 (비율%)	χ^2
		매우 크게 도움	대체로 도움	별로 도움 이 안됨	전혀 도움 안됨			
성 별	남		6(1.2)	132(26.7)	238(48.2)	118(23.9)	494(100)	4.263
	여		9(2.5)	109(30.9)	155(43.9)	80(22.7)	353(100)	NS
연 령	20세미만		-	20(36.4)	30(54.5)	5(9.1)	55(100)	43.228 p<.001
	20세이상 30세미만		8(5.4)	57(38.5)	61(41.2)	22(14.9)	148(100)	
	30세이상 40세미만		3(2.3)	31(23.7)	63(48.1)	34(26.0)	131(100)	
	40세이상 50세미만		2(1.0)	60(29.4)	82(40.2)	60(29.4)	204(100)	
	50세이상		2(0.6)	73(23.6)	157(50.8)	77(24.9)	309(100)	
교 육	무학		3(1.9)	47(29.9)	77(49.0)	30(19.1)	157(100)	47.856 p<.001
	국졸		1(0.5)	56(29.6)	97(51.3)	35(18.5)	189(100)	
	중졸		-	45(26.2)	72(41.9)	55(32.0)	172(100)	
	고졸		1(0.5)	63(31.0)	90(44.3)	49(24.1)	203(100)	
	대졸		10(8.1)	29(23.6)	56(45.5)	28(22.8)	123(100)	
	대학원이상		-	1(33.3)	1(33.3)	1(33.3)	3(100)	
소 득	소득 없음		2(2.5)	40(49.4)	33(40.7)	6(7.4)	81(100)	60.396 p<.001
	월 100만원 미만		11(2.9)	117(30.5)	181(47.3)	74(19.3)	383(100)	
	월 100만원~150만원 미만		1(0.4)	58(22.0)	123(46.6)	82(31.1)	264(100)	
	월 150만원~200만원 미만		-	15(15.8)	50(52.6)	30(31.6)	95(100)	
	월 200만원~250만원 미만		-	3(42.9)	1(14.3)	3(42.9)	7(100)	
	월 250만원 이상		1(5.9)	8(47.1)	5(29.4)	3(17.6)	17(100)	
거 주 지	구좌읍 하도리		5(1.1)	115(26.3)	222(50.8)	95(21.7)	437(100)	21.332 p<.01
	성산읍 수산 2리		4(1.5)	67(25.8)	117(45.0)	72(27.7)	260(100)	
	구좌읍 송당리		6(4.0)	59(39.3)	54(36.0)	31(20.7)	150(100)	
거 주 기 간	5년 미만		5(22.7)	8(36.4)	5(2.7)	4(18.2)	22(100)	68.488 p<.001
	5년 이상 10년 미만		2(5.6)	11(30.6)	18(50.0)	5(13.9)	36(100)	
	10년 이상 15년 미만		1(1.8)	15(26.3)	30(52.6)	11(19.3)	57(100)	
	15년 이상 20년 미만		3(1.3)	60(25.2)	112(47.1)	63(26.5)	238(100)	
	20년 이상		4(0.8)	147(29.8)	228(46.2)	115(23.3)	494(100)	
직 업	농 업		5(0.9)	126(22.5)	274(48.9)	155(27.7)	560(100)	63.552 p<.001
	축 산 업		-	-	1(33.3)	2(66.7)	3(100)	
	자 영 업		2(3.6)	27(48.2)	21(37.5)	6(10.7)	56(100)	
	회 사 원		-	18(54.5)	13(39.4)	2(6.1)	33(100)	
	공 무 원		-	4(44.4)	2(22.2)	3(33.3)	9(100)	
	관 광 업		-	1(100)	-	-	1(100)	
	기 타		8(4.3)	65(35.1)	82(44.3)	30(16.2)	185(100)	
	계		15(1.8)	241(28.5)	393(46.4)	198(23.4)	847(100)	

<표 4-45> 성산분기 송전선로 사업추진과정 중 주민참여수준 만족도분석

인구통계학적 특성		항 목 (비율)	성산분기 송전선로 사업추진에 있어 주민참여수준 만족도는?				계 (비율%)	χ^2
			대체로 만족할수준	그저 그렇다	별로 만족치못함	전혀 불만족		
성 별	남		6(1.2)	191(38.7)	166(33.6)	131(26.5)	494(100)	16.994 p<.001
	여		14(4.0)	139(39.4)	140(39.7)	60(17.0)	353(100)	
연 령	20세미만		4(7.3)	34(61.8)	10(18.2)	7(12.7)	55(100)	45.682 p<.001
	20세이상 30세미만		5(3.4)	71(48.0)	52(35.1)	20(13.5)	148(100)	
	30세이상 40세미만		-	35(26.7)	56(42.7)	40(30.5)	131(100)	
	40세이상 50세미만		4(2.0)	74(36.3)	81(39.7)	45(22.1)	204(100)	
	50세이상		7(2.3)	116(37.5)	107(34.6)	79(25.6)	309(100)	
교 육	무학		3(1.9)	63(40.1)	60(38.2)	31(19.7)	157(100)	19.174 NS
	국졸		6(3.2)	86(45.5)	63(33.3)	34(18.0)	189(100)	
	중졸		6(3.5)	56(32.6)	70(40.7)	40(23.3)	172(100)	
	고졸		2(1.0)	71(35.0)	74(36.5)	56(27.6)	203(100)	
	대졸		3(2.4)	53(43.1)	39(31.7)	28(22.8)	123(100)	
	대학원이상		-	1(33.3)	-	2(66.7)	3(100)	
소 득	소득 없음		7(8.6)	43(53.1)	20(24.7)	11(13.6)	81(100)	59.813 p<.001
	월 100만원 미만		7(1.8)	164(42.8)	135(35.2)	77(20.1)	383(100)	
	월 100만원~150만원 미만		5(1.9)	87(33.0)	96(36.4)	76(28.8)	264(100)	
	월 150만원~200만원 미만		-	21(22.1)	48(50.5)	26(27.4)	95(100)	
	월 200만원~250만원 미만		-	6(85.7)	1(14.3)	-	7(100)	
월 250만원 이상		1(5.9)	9(52.9)	6(35.3)	1(5.9)	17(100)		
거 주 지	구좌읍 하도리		15(3.4)	158(36.2)	164(37.5)	100(22.9)	437(100)	16.888 p<.01
	성산읍 수산 2리		2(0.8)	95(36.5)	100(38.5)	63(24.2)	260(100)	
	구좌읍 송당리		3(2.0)	77(51.3)	42(28.0)	28(18.7)	150(100)	
거 주 기 간	5년 미만		-	11(50.0)	4(18.2)	7(31.8)	22(100)	12.348 NS
	5년 이상 10년 미만		-	14(38.9)	15(41.7)	7(19.4)	36(100)	
	10년 이상 15년 미만		2(3.5)	18(31.6)	26(45.6)	11(19.3)	57(100)	
	15년 이상 20년 미만		9(3.8)	91(38.2)	90(37.8)	48(20.2)	238(100)	
	20년 이상		9(1.8)	196(39.7)	171(34.6)	118(23.9)	494(100)	
직 업	농 업		7(1.3)	202(36.1)	204(36.4)	147(26.3)	560(100)	39.196 p<.001
	축 산 업		-	1(33.3)	1(33.3)	1(33.3)	3(100)	
	자 영 업		1(1.8)	29(51.8)	23(41.1)	3(5.4)	56(100)	
	회 사 원		2(6.1)	16(48.5)	14(42.4)	1(3.0)	33(100)	
	공 무 원		-	6(66.7)	2(22.2)	1(11.1)	9(100)	
	관 광 업		-	1(100)	-	-	1(100)	
	기 타		10(5.4)	75(40.5)	62(33.5)	38(20.5)	185(100)	
	계		20(2.4)	330(39.0)	306(36.1)	191(22.6)	847(100)	

<표 4-47> 주민참여 수준의 불만족 원인분석

항 목 (비율)		만약 주민참여 수준에 불만족 하신다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계 (비율%)	χ^2
		사업시행 자측의주 민참여에 대한부정 적인식	지역주 민들의 무관심	제공된 사업정보 의 난해성	공람 및 공청회, 주민설명 회등의 개최에 대한홍보 부족	주민참여 시기의 부적절		
성 별	남	45(15.0)	12(4.0)	26(8.7)	106(35.3)	111(37.0)	300(100)	4.658
	여	28(13.9)	16(8.0)	22(10.9)	68(33.8)	67(33.3)	201(100)	NS
연 령	20세미만	1(5.3)	3(15.8)	1(5.3)	7(36.8)	7(36.8)	19(100)	24.337 NS
	20세이상 30세미만	10(13.7)	5(6.8)	7(9.6)	33(45.2)	18(24.7)	73(100)	
	30세이상 40세미만	12(12.1)	2(2.0)	6(6.1)	40(40.4)	39(39.4)	99(100)	
	40세이상 50세미만	20(16.1)	7(5.6)	12(9.7)	47(37.9)	38(30.6)	124(100)	
	50세이상	30(16.1)	11(5.9)	22(11.8)	47(25.3)	76(40.9)	186(100)	
교 육	무학	15(16.7)	2(2.2)	7(7.8)	28(31.1)	38(42.2)	90(100)	45.399 p<.001
	국졸	10(10.3)	10(10.3)	19(19.6)	28(28.9)	30(30.9)	97(100)	
	중졸	15(13.9)	7(6.5)	9(8.3)	30(27.8)	47(43.5)	108(100)	
	고졸	22(16.1)	9(6.6)	11(8.0)	61(44.5)	34(24.8)	137(100)	
	대졸	11(16.4)	-	2(3.0)	25(37.3)	29(43.3)	67(100)	
	대학원이상	-	-	-	2(100)	-	2(100)	
소 득	소득 없음	2(6.1)	5(15.2)	3(9.1)	17(51.5)	6(18.2)	33(100)	49.627 p<.001
	월 100만원 미만	30(13.9)	15(6.9)	24(11.1)	76(35.2)	71(32.9)	216(100)	
	월 100만원~150만원 미만	25(14.7)	3(1.8)	17(10.0)	59(34.7)	66(38.8)	170(100)	
	월 150만원~200만원 미만	16(21.6)	2(2.7)	4(5.4)	19(25.7)	33(44.6)	74(100)	
	월 200만원~250만원 미만	-	-	-	-	1(100)	1(100)	
월 250만원 이상	-	3(42.9)	-	3(42.9)	1(14.3)	7(100)		
거 주 지	구좌읍 하도리	47(17.6)	8(3.0)	29(10.9)	97(36.3)	86(32.2)	267(100)	43.507 p<.001
	성산읍 수산 2리	23(14.1)	8(4.9)	12(7.4)	44(27.0)	76(46.6)	163(100)	
	구좌읍 송당리	3(4.2)	12(16.9)	7(9.9)	33(46.5)	16(22.5)	71(100)	
거 주 기 간	5년 미만	2(16.7)	-	-	4(33.3)	6(50.0)	12(100)	22.322 NS
	5년 이상 10년 미만	4(18.2)	1(4.5)	1(4.5)	7(31.8)	9(40.9)	22(100)	
	10년 이상 15년 미만	1(2.7)	1(2.7)	6(16.2)	9(24.3)	20(54.1)	37(100)	
	15년 이상 20년 미만	17(12.4)	10(7.3)	9(6.6)	59(43.1)	42(30.7)	137(100)	
	20년 이상	49(16.7)	16(5.5)	32(10.9)	95(32.4)	101(34.5)	293(100)	
직 업	농업	56(16.0)	19(5.4)	31(8.9)	112(32.0)	132(37.7)	350(100)	48.295 p<.001
	축산업	-	-	-	-	2(100)	2(100)	
	자영업	2(7.1)	2(7.1)	9(32.1)	1(3.6)	14(50.0)	28(100)	
	회사원	1(6.3)	1(6.3)	-	10(62.5)	4(25.0)	16(100)	
	공무원	-	-	-	2(66.7)	1(33.3)	3(100)	
	관광업	-	-	-	-	-	-	
	기타	14(13.7)	6(5.9)	8(7.8)	49(48.0)	25(24.5)	102(100)	
계	73(14.6)	28(5.6)	48(9.6)	174(34.7)	178(35.5)	501(100)		

<표 4-49> 바람직한 주민참여 방안 분석

항 목 (비율)		바람직한 주민참여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계 (비율 %)	χ^2
		공청회	주민 설명회	주 민 협 의회 및 자문단	주 민 감 시반 (지역 주 민 과 환 경 단 체 참여)	주민 투표 제	여론 수렴반 (여론모 니터,간 담회)	반사회		
성 별	남	152(30.9)	165(33.5)	58(11.8)	61(12.4)	47(9.6)	7(1.4)	2(0.4)	492(100)	4.349 NS
	여	112(31.7)	135(38.2)	40(11.3)	32(9.1)	30(8.5)	3(0.8)	1(0.3)	353(100)	
연 령	20세미만	22(40.0)	18(32.7)	6(10.9)	4(7.3)	5(9.1)	-	-	55(100)	40.238 p<0.05
	20세이상 30세미만	53(35.8)	53(35.8)	14(9.5)	19(12.8)	5(3.4)	4(2.7)	-	148(100)	
	30세이상 40세미만	39(29.8)	40(30.5)	20(15.3)	20(15.3)	10(7.6)	1(0.8)	1(0.8)	131(100)	
	40세이상 50세미만	69(34.0)	61(30.0)	30(14.8)	19(9.4)	22(10.8)	-	2(1.0)	203(100)	
	50세이상	81(26.3)	128(41.6)	28(9.1)	31(10.1)	35(11.4)	5(1.6)	-	308(100)	
교 육	무학	29(18.5)	71(45.2)	12(7.6)	16(10.2)	27(17.2)	2(1.3)	-	157(100)	59.522 p<0.01
	국졸	60(31.9)	68(36.2)	20(10.6)	15(8.0)	24(12.8)	1(0.5)	-	188(100)	
	중졸	51(29.8)	59(34.5)	21(12.3)	24(14.0)	12(7.0)	3(1.8)	1(0.6)	171(100)	
	고졸	73(36.0)	62(30.5)	30(14.8)	25(12.3)	8(3.9)	3(1.5)	2(1.0)	203(100)	
	대졸	49(39.8)	40(32.5)	15(12.2)	12(9.8)	6(4.9)	1(0.8)	-	123(100)	
	대학원이상	2(66.7)	-	-	1(33.3)	-	-	-	3(100)	
소 득	소득 없음	28(34.6)	35(43.2)	6(7.4)	10(12.3)	1(1.2)	1(1.2)	-	383(100)	60.668 p<0.001
	월 100만원 미만	133(34.7)	139(36.3)	33(8.6)	36(9.4)	36(9.4)	6(1.6)	-	263(100)	
	월 100만원~150만원 미만	73(27.8)	84(31.9)	40(15.2)	34(12.9)	28(10.6)	1(0.4)	3(1.1)	94(100)	
	월 150만원~200만원 미만	24(25.5)	31(33.0)	15(16.0)	11(11.7)	12(12.8)	1(1.1)	-	7(100)	
	월 200만원~250만원 미만	3(42.9)	-	3(42.9)	-	-	1(14.3)	-	17(100)	
	월 250만원 이상	3(17.6)	11(64.7)	1(5.9)	2(12.3)	-	-	-	81(100)	
거 주 지	구좌읍 하도리	136(31.2)	145(33.3)	52(11.9)	56(12.8)	43(9.9)	2(0.5)	2(0.5)	436(100)	33.585 p<0.001
	성산읍 수산 2리	79(30.4)	86(33.1)	27(10.4)	31(11.9)	32(12.3)	4(1.5)	1(0.4)	260(100)	
	구좌읍 송당리	49(32.9)	69(46.3)	19(12.8)	6(4.0)	2(1.3)	4(2.7)	-	149(100)	
거 주 기 간	5년 미만	12(54.5)	10(45.5)	-	-	-	-	-	22(100)	45.121 p<0.01
	5년 이상 10년 미만	15(41.7)	9(25.0)	3(8.3)	4(11.1)	4(11.1)	-	1(2.8)	36(100)	
	10년 이상 15년 미만	9(15.8)	21(36.8)	4(7.0)	13(22.8)	9(15.8)	1(1.8)	-	57(100)	
	15년 이상 20년 미만	82(34.5)	70(29.4)	32(13.4)	26(10.9)	24(10.1)	4(1.7)	-	238(100)	
	20년 이상	146(29.7)	190(38.6)	59(12.0)	50(10.2)	40(8.1)	5(1.0)	2(0.4)	492(100)	
직 업	농업	155(27.7)	208(37.2)	67(12.0)	63(11.3)	58(10.4)	6(1.1)	2(0.4)	559(100)	60.119 p<0.001
	축산업	-	1(33.3)	-	1(33.3)	1(33.3)	-	-	3(100)	
	자영업	17(30.9)	15(27.3)	3(5.5)	13(23.6)	7(12.7)	-	-	55(100)	
	회사원	14(42.4)	10(30.3)	1(3.0)	4(12.1)	1(3.0)	2(6.1)	1(3.0)	33(100)	
	공무원	4(44.4)	1(11.1)	3(33.3)	1(12.1)	-	-	-	9(100)	
	관광업	1(100)	-	-	-	-	-	-	1(100)	
	기타	73(39.5)	65(35.1)	24(13.0)	11(5.9)	10(5.4)	2(1.1)	-	185(100)	
계		264(31.2)	300(35.5)	98(11.6)	93(11.0)	77(9.1)	10(1.2)	3(0.4)	845(100)	

<표 4-51> 환경(경관)영향평가제도의 사전적 예방기능 수행정도 분석

인구통계학적 특성		항 목 (비율)	귀하께서는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자연환경 훼손의 사전적 예방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계 (비율%)	χ^2
		매우 크게기여	대체로 다여	그저 그렇다	대체로 기여못함	전혀 기여못함			
성 별	남		4(0.8)	75(15.2)	187(37.9)	147(29.8)	81(16.4)	494(100)	1.191
	여		4(1.1)	47(13.3)	143(40.5)	104(29.5)	55(15.6)	353(100)	NS
연 령	20세미만		-	17(30.9)	22(40.0)	12(21.8)	4(7.3)	55(100)	62.762 p<.001
	20세이상 30세미만		6(4.1)	36(24.3)	56(37.8)	32(21.6)	18(12.2)	148(100)	
	30세이상 40세미만		-	12(9.2)	52(39.7)	36(27.5)	31(23.7)	131(100)	
	40세이상 50세미만		-	21(10.3)	79(38.7)	67(32.8)	37(18.1)	204(100)	
	50세이상		2(0.6)	36(11.7)	121(39.2)	104(33.7)	46(14.9)	309(100)	
교 육	무학		-	4(2.5)	72(45.9)	62(39.5)	19(12.1)	157(100)	91.020 p<.001
	국졸		-	29(15.3)	86(45.5)	52(27.5)	22(11.6)	189(100)	
	중졸		-	20(11.6)	75(43.6)	46(26.7)	31(18.0)	172(100)	
	고졸		2(1.0)	52(25.6)	59(29.1)	57(28.1)	33(16.3)	203(100)	
	대졸		6(4.9)	17(13.8)	38(30.9)	32(26.0)	30(24.4)	123(100)	
	대학원이상		-	-	-	2(66.7)	1(33.3)	3(100)	
소 득	소득 없음		-	32(39.5)	26(32.1)	17(21.0)	6(7.4)	81(100)	126.488 p<.001
	월 100만원 미만		6(1.6)	62(16.2)	144(37.6)	107(27.9)	64(16.7)	383(100)	
	월 100만원~150만원 미만		-	17(6.4)	120(45.5)	91(34.5)	36(13.6)	264(100)	
	월 150만원~200만원 미만		-	6(6.3)	31(32.6)	29(30.5)	29(30.5)	95(100)	
	월 200만원~250만원 미만		-	-	-	6(85.7)	1(14.3)	7(100)	
월 250만원 이상		2(11.8)	5(29.4)	9(52.9)	1(5.9)	-	17(100)		
거 주 지	구좌읍 하도리		2(0.5)	58(13.3)	160(36.6)	133(30.4)	84(19.2)	437(100)	32.594 p<.001
	성산읍 수산 2리		2(0.8)	27(10.4)	108(41.5)	85(32.7)	38(14.6)	260(100)	
	구좌읍 송당리		4(2.7)	37(24.7)	62(41.3)	33(22.0)	14(9.3)	150(100)	
거 주 기 간	5년 미만		5(22.7)	2(9.1)	5(22.7)	5(22.7)	5(22.7)	22(100)	127.339 p<.001
	5년 이상 10년 미만		1(2.8)	2(5.6)	17(47.2)	12(33.3)	4(11.1)	36(100)	
	10년 이상 15년 미만		-	5(8.8)	24(42.1)	19(33.3)	9(15.8)	57(100)	
	15년 이상 20년 미만		-	42(17.6)	94(39.5)	70(29.4)	32(13.4)	238(100)	
	20년 이상		2(0.4)	71(14.4)	190(38.5)	145(29.4)	86(17.4)	494(100)	
직 업	농 업		-	46(8.2)	230(41.1)	185(33.0)	99(17.7)	560(100)	137.928 p<.01
	축 산 업		-	-	2(66.7)	-	1(33.3)	3(100)	
	자 영 업		1(1.8)	14(25.0)	25(44.6)	13(23.2)	3(5.4)	56(100)	
	회 사 원		-	13(39.4)	13(39.4)	7(21.2)	-	33(100)	
	공 무 원		2(22.2)	1(11.1)	1(11.1)	5(55.6)	-	9(100)	
	관 광 업		-	-	-	1(100)	-	1(100)	
	기 타		5(2.7)	48(25.9)	59(31.9)	40(21.6)	33(17.8)	185(100)	
	계		8(0.9)	122(14.4)	330(39.0)	251(29.6)	136(16.1)	847(100)	

<표 4-54> 환경(경관)영향평가가 환경파괴의 합리적 수단이라는 데에 대한 견해 분석

인구통계학적 특성		항 목 (비율) 환경영향평가가 제구실을 하지 못하고 환경파괴의 합리적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데에 대한 귀하의 견해는?					계 (비율%)	χ^2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결코 그렇지 않다	모르겠다		
성 별	남 여	136(27.6) 74(21.0)	232(47.1) 170(48.2)	37(7.5) 41(11.6)	4(0.8) 2(0.6)	84(17.0) 66(18.7)	493(100) 353(100)	7.949 NS
연 령	20세미만	8(14.5)	28(50.9)	5(9.1)	2(3.6)	12(21.8)	55(100)	26.072 NS
	20세이상 30세미만	29(19.6)	84(56.8)	10(6.8)	1(0.7)	24(16.2)	148(100)	
	30세이상 40세미만	33(25.2)	66(50.4)	11(8.4)	-	21(16.0)	131(100)	
	40세이상 50세미만	62(30.4)	85(41.7)	25(12.3)	-	32(15.7)	204(100)	
	50세이상	78(25.3)	139(45.1)	27(8.8)	3(1.0)	61(19.8)	308(100)	
교 육	무학	38(24.2)	72(42.9)	24(15.3)	-	23(14.6)	157(100)	51.066 p<.001
	국졸	38(20.1)	84(44.4)	19(10.1)	-	48(25.4)	189(100)	
	중졸	44(25.7)	79(46.2)	18(10.5)	-	30(17.5)	171(100)	
	고졸	50(24.6)	100(49.3)	15(7.4)	6(3.0)	32(15.8)	203(100)	
	대졸	38(30.9)	66(53.7)	2(1.6)	-	17(13.8)	123(100)	
	대학원이상	2(66.7)	1(33.3)	-	-	-	3(100)	
소 득	소득 없음	16(19.8)	43(53.1)	11(13.6)	-	11(13.6)	81(100)	18.144 NS
	월 100만원 미만	91(23.8)	168(44.0)	38(9.9)	3(0.8)	82(21.5)	382(100)	
	월 100만원~150만원 미만	72(27.3)	128(48.5)	24(9.1)	2(0.8)	38(14.4)	264(100)	
	월 150만원~200만원 미만	26(27.4)	51(53.7)	4(4.2)	1(1.1)	13(13.7)	95(100)	
	월 200만원~250만원 미만	2(28.6)	3(42.9)	-	-	2(28.6)	7(100)	
	월 250만원 이상	3(17.6)	9(52.9)	1(5.9)	-	4(23.5)	17(100)	
거 주 지	구좌읍 하도리	122(28.0)	219(50.2)	34(7.8)	1(0.2)	60(13.8)	436(100)	21.343 p<.01
	성산읍 수산 2리	61(23.5)	109(41.9)	31(11.9)	3(1.2)	56(21.5)	260(100)	
	구좌읍 송당리	27(18.0)	74(49.3)	13(8.7)	2(1.3)	34(22.7)	150(100)	
거 주 기 간	5년 미만	5(22.7)	15(68.2)	1(4.5)	1(4.5)	-	22(100)	33.360 p<.01
	5년 이상 10년 미만	6(16.7)	16(44.4)	3(8.3)	-	11(30.6)	36(100)	
	10년 이상 15년 미만	5(8.8)	35(61.4)	9(15.8)	-	8(14.0)	57(100)	
	15년 이상 20년 미만	55(23.2)	120(50.6)	23(9.7)	2(0.8)	37(15.6)	237(100)	
	20년 이상	139(28.1)	216(43.7)	42(8.5)	3(0.6)	94(19.0)	494(100)	
직 업	농 업	154(27.5)	247(44.2)	52(9.3)	4(0.7)	102(18.2)	559(100)	23.128 NS
	축 산 업	1(33.3)	1(33.3)	1(33.3)	-	-	3(100)	
	자 영 업	9(16.1)	34(60.7)	4(7.1)	-	9(16.1)	56(100)	
	회 사 원	3(9.1)	22(66.7)	4(12.1)	-	4(12.1)	33(100)	
	공 무 원	3(33.3)	3(33.3)	1(11.1)	-	2(22.2)	9(100)	
	관 광 업	1(100)	-	-	-	-	1(100)	
	기 타	39(21.1)	95(51.4)	16(8.6)	2(1.1)	33(17.8)	185(100)	
	계	210(24.8)	402(47.5)	78(9.2)	6(0.7)	150(17.7)	846(100)	

<표 4-56> 기존의 송전선로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의 이행정도 분석

인구통계학적 특성		항 목 (비율) 귀하께서는 기존의 한전측의 송전선로사업에서 한전측이 환경영향평가서의 환경복구 이행약속을 어느 정도 이행하였다고 보십니까?					계 (비율%)	χ^2
		매우 잘이행	대체로 이행	그저 그렇다	별로 이행되지 않음	전혀 이행되지 않음		
성 별	남	1(0.2)	23(4.7)	159(32.2)	172(34.8)	139(28.1)	494(100)	15.395 p<.01
	여	-	29(8.2)	113(32.0)	146(41.4)	65(18.4)	353(100)	
연 령	20세미만	-	5(9.1)	24(43.6)	20(36.4)	6(10.9)	55(100)	34.263 p<.01
	20세이상 30세미만	1(0.7)	12(8.1)	59(39.9)	47(31.8)	29(19.6)	148(100)	
	30세이상 40세미만	-	4(3.1)	27(20.6)	66(50.4)	34(26.0)	131(100)	
	40세이상 50세미만	-	15(7.4)	64(31.4)	75(36.8)	50(24.5)	204(100)	
	50세이상	-	16(5.2)	98(31.7)	110(35.6)	85(27.5)	309(100)	
교 육	무학	-	4(2.5)	46(29.3)	80(51.0)	27(17.2)	157(100)	52.465 p<.001
	국졸	-	21(11.1)	69(36.5)	62(32.8)	37(19.6)	189(100)	
	중졸	-	14(8.1)	51(29.7)	57(33.1)	50(29.1)	172(100)	
	고졸	1(0.5)	10(4.9)	71(35.0)	76(37.4)	45(22.2)	203(100)	
	대졸	-	3(2.4)	35(28.5)	43(35.0)	42(34.1)	123(100)	
	대학원이상	-	-	-	-	3(100)	3(100)	
소 득	소득 없음	-	13(16.0)	35(43.2)	26(32.1)	7(8.6)	81(100)	81.698 p<.001
	월 100만원 미만	-	31(8.1)	126(32.9)	141(36.8)	85(22.2)	383(100)	
	월 100만원~150만원 미만	1(0.4)	3(1.1)	79(29.9)	115(43.6)	66(25.0)	264(100)	
	월 150만원~200만원 미만	-	1(1.1)	20(21.1)	33(34.7)	41(43.2)	95(100)	
	월 200만원~250만원 미만	-	-	4(57.1)	1(14.3)	2(28.6)	7(100)	
	월 250만원 이상	-	4(23.5)	8(47.1)	2(11.8)	3(17.6)	17(100)	
거 주 지	구좌읍 하도리	1(0.2)	19(4.3)	131(30.0)	184(42.1)	102(23.3)	437(100)	51.714 p<.001
	성산읍 수산 2리	-	11(4.2)	72(27.7)	102(39.2)	75(28.8)	260(100)	
	구좌읍 송당리	-	22(14.7)	69(46.0)	32(21.3)	27(18.0)	150(100)	
거 주 기 간	5년 미만	-	1(4.5)	7(31.8)	9(40.9)	5(22.7)	22(100)	35.966 p<.01
	5년 이상 10년 미만	1(2.8)	2(5.6)	9(25.0)	13(36.1)	11(30.6)	36(100)	
	10년 이상 15년 미만	-	2(3.5)	14(24.6)	30(52.6)	11(19.3)	57(100)	
	15년 이상 20년 미만	-	15(6.3)	82(34.5)	96(40.3)	45(18.9)	238(100)	
	20년 이상	-	32(6.5)	160(32.4)	170(34.4)	132(26.7)	494(100)	
직 업	농업	-	23(4.1)	164(29.3)	215(38.4)	158(28.2)	560(100)	53.294 p<.001
	축산업	-	-	-	2(66.7)	1(33.3)	3(100)	
	자영업	-	7(12.5)	26(46.4)	20(35.7)	3(5.4)	56(100)	
	회사원	-	3(9.1)	10(30.3)	16(48.5)	4(12.1)	33(100)	
	공무원	-	-	5(55.6)	-	4(44.4)	9(100)	
	관광업	-	-	-	-	1(100)	1(100)	
	기타	1(0.5)	19(10.3)	67(36.2)	65(35.1)	33(17.8)	185(100)	
계	1(0.1)	52(6.1)	272(32.1)	318(37.5)	204(24.1)	847(100)		

제 5 절 님비현상의 문제해결에 대한 분석틀

<그림 2-1> 연구분석의 모델

